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Ⅰ. 개 요 ····· 1

1. 세입·세출예산안 ····· 1

가. 세입예산안 ····· 1

나. 세출예산안 ····· 3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 26

가. 2026년도 신규사업 ····· 26

나. 2025년도 종료사업 ····· 27

3. 주요 유형별 예산안 ····· 28

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 28

나. 민간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 31

다. 연구용역비 예산안 현황 ····· 33

라. 정보화사업 예산안 현황 ····· 37

마. 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 예산안 ····· 40

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 현황 ····· 45

Ⅱ. 검토의견 ····· 48

Ⅱ-1. 총괄 분석 ····· 48

【총 괄】 ····· 48

1. 지방소멸대응 예산 관리 ····· 48

가. 개 요 ····· 48

나. 지방소멸대응 예산의 구체적인 선정 및 성과관리 필요 ····· 57

Ⅱ-2. 부서별·사업별 분석 ····· 62

【디지털정부혁신실】

1.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2041-502) ····· 62

가. 개 요 ····· 62

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국가핵심기반으로 미지정하여 재난안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 63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2046-502) ···· 66

가. 개 요 ····· 66

나.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과 통합·추진할 필요 ····· 67

3.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74

가. 개 요 ····· 74

나. 시도·새올시스템 노후화 해소 및 기능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예산안 편성 검토 필요 ····· 75

4.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2039-508) ····· 81
가. 개 요 ····· 81
나.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사업이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참여 유인 방안 마련 등 ····· 82
다.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출연금 편성 법적 근거 마련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88
라.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의 개별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방지 필요 … 91

【지방행정국】

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 94
가. 개 요 ····· 94
나. 위원회 활동실적을 반영한 회의참석수당 예산의 적정화 필요 … 95
다. 경쟁입찰 원칙 준수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02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140-300) ····· 109
가. 개 요 ····· 109
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환류체계 강화 필요 ····· 110

【자치분권국】

7.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1131-304) ····· 113
가. 개 요 ····· 113
나. 지방시대위원회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희 및 지원단 간 유기적·체계적 연계성 확보 필요 ····· 114

8.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1131-315) ····· 120
가. 개 요 ····· 120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홍보전략 및 예산 배분 검토 필요 ···· 121
9.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1137-500) ····· 127
가. 개 요 ····· 127
나. 모바일주민등록증 시스템 SW 유지관리 요율의 합리화 필요 ···· 128
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고려한 SW
유지관리비 대가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132
라. 시스템 SW 예산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 편성 필요성 ····· 135

【균형발전지원국】

10.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138
가. 개 요 ····· 138
나.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재검토 필요 ····· 140
11.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 151
가. 개 요 ····· 151
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연차별 출연 계획 재점검 필요 ····· 152
12.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 ····· 158
가. 개 요 ····· 158
나.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160
13.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 167
가. 개 요 ····· 167

나. 마을기업 지정단계 별 지정 건수 조정 필요 ····· 168
다. 마을기업 지원 방안 다양화 노력 필요 ····· 172
14.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1236-300),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1241-300) ····· 175
가. 개 요 ····· 175
나.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필요 ··· 177

【지방재정경제실】
15. 지역금융활성화 (1349-300) ····· 184
가. 개 요 ····· 184
나. 충분한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행정쟁송 대응 예산 확보 필요 ··· 185
16.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1331-300) ····· 191
가. 개 요 ····· 191
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192
17.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1335-300) ····· 200
가. 개 요 ····· 200
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비율의 조속한 확정 필요 ····· 201
18.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49-301) ····· 207
가. 개 요 ····· 207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고려한 적정 예산 계상 필요 ···· 210

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필요 … 215

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349-306) … 222

가. 개 요 …… 222

나.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비부담률 차등화 필요 …… 224

【정부청사관리본부】

20.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2231-301) …… 228

가. 개 요 …… 228

나.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필요 …… 2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2036-508) … 237

가. 개 요 …… 237

나. 국가재해복구센터로서 기능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칭 변경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의 일원화 편성 필요 …… 238

2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사업(2036-503) …… 242

가. 개 요 …… 242

나. Active-Active 방식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투입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추진 필요 …… 243

23.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 255
가. 개 요 ····· 255
나.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재난 대비 보험제도 개선 필요 ···· 257
24.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2036-508) ··· 264
가. 개 요 ····· 264
나. 국가핵심기반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소속 국정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관리 미흡 문제 등 ····· 266

【안전예방정책실】

25.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2631-307) ····· 271
가. 개 요 ····· 271
나.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의 구체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272
다.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관련 예산 반영 필요 ···· 275
26.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2631-308) ····· 278
가. 개 요 ····· 278
나. 정책펀드 사업 추진 이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 279
27.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3032-509) ····· 290
가. 개 요 ····· 290
나. 재난안전 영상분석 인공지능 실증 사업의 추진 계획 재정비 필요 ····· 292

다.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 재검토 필요 ····· 296

【자연재난실】

28.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2731-304) ····· 301

가. 개 요 ····· 301

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시험 실시 기관의 조속한 선정 및 연구용역 발주기관 재검토 필요 ····· 303

29.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733-303) ····· 307

가. 개 요 ····· 307

나. 안전한국훈련 환류 단계의 평가지표 개선 및 실질적인 환류 체계 강화 필요 ····· 308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 ···· 313

가. 개 요 ····· 313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의 집행 부진 사업지구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315

【사회재난실】

31.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2735-309) ····· 322

가. 개 요 ····· 322

나. 피해자 인정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을 고려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필요 ····· 323

【재난복구지원국】

32. 재난구호지원(2734-301) ····· 328
가. 개 요 ····· 328
나. 법적 근거에 부합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 변경 필요 ····· 329
다.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의 실질화 방안 마련 필요 ····· 331

【비상대비정책국】

33.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333
가. 개 요 ····· 333
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확보 필요 ···· 335
다.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사업의 지원 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한 보조사업 관리 필요 ····· 338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34.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342
가. 개 요 ····· 342
나.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편성예산의 차질없는 집행 노력 필요 ····· 343
3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2431-304) ··· 345
가. 개 요 ····· 345
나. 위령시설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노력 필요 ··· 346

3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2432-300) ····· 349
가. 개 요 ····· 349
나. 솔로몬제도 추모조형물 건립 관련 사업의 내실화 필요 ····· 350
3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2434-300) ····· 354
가. 개 요 ····· 354
나. 전액 삭감된 민주주의 연구, 사료관리 예산의 증액 검토 필요 ··· 355
38.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 358
가. 개 요 ····· 358
나. 민주주의기념관 건립 사업의 2026년도 편성예산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359
3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2436-300) ····· 362
가. 개 요 ····· 362
나. 치유센터 행정 및 상담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 검토 필요 ···· 363
40.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2437-300) ····· 368
가. 개 요 ····· 368
나. 위원회 접수 사건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조사인력충원 예산 증액 검토 필요 ····· 369

Ⅰ. 개 요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65억 1,800만원이 증가(10.13%)한 1,795억 9,500만원임. 이 중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596목)이 1,201억 7,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241억 5,300만원,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546목) 148억 900만원 등이 다음으로 큰 규모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계	163,077	179,595	16,518	10.13
o 일반회계	143,392	153,126	9,734	6.79
-재산수입: 11관	18,938	21,309	2,371	12.52
(건물대여료: 512목)	2,976	6,076	3,100	104.17
(토지대여료: 511목)	424	424	0	0.00
(기타재산이자수입: 546목)	15,538	14,809	-729	-4.69
-경상이전수입: 12관	115,079	121,798	6,719	5.84
(과징금: 565목)	-	81	81	순증
(위약금: 572목)	945	1,542	597	63.17
(기타경상이전수입: 596목)	114,134	120,175	6,041	5.2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관	1,297	1,352	55	4.24
(면허료및수수료: 651목)	38	39	1	2.63
(기타잡수입: 691목)	1,259	1,313	54	4.29
-수입대체경비수입: 14관	8,078	8,667	589	7.29
(기타잡수입: 691목)	8,078	8,667	589	7.29
o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685	26,469	6,784	34.46
-재산수입: 11관	1,493	2,316	823	55.12
(기타재산이자수입: 546목)	1,493	2,316	823	55.12
-경상이전수입: 12관	18,192	24,153	5,961	32.77
(기타경상이전수입: 596목)	18,192	24,153	5,961	32.77

주) 총계·총수입 기준 동일

한편, 수입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주요한 이유는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이 전년대비 각각 60억 4,100만원, 59억 6,1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기타경상이전 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수납되는 과목인데,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는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수입은 전년대비 축소되었으나, 2025년에 지급한 민생지원금의 반납 예상액이 추가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게 된 것임.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는 최근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1]하여 예산액을 전년 대비 증액하게 된 것임.

1)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자율계정) 수납액은 예산액 18억 3,300만원의 920.5%인 168억 7,200만원임

나. 세출예산안

(1) 총 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76조 4,426억 3,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72조 839억 3,600만원 대비 4조 3,587억원(6.05%) 증가하였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B-A)/A
계	72,083,936	76,442,636	4,358,700	6.05
o 일반회계	69,720,872	72,742,432	3,021,560	4.33
-지방교부세	67,038,505	69,345,855	2,307,350	3.44
-인건비	369,519	390,873	21,354	5.78
-기본경비	39,671	39,398	-273	-0.69
-사업비	2,273,177	2,966,306	693,129	30.49
o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63,064	3,700,204	1,337,140	56.59
-사업비	2,363,064	3,700,204	1,337,140	56.59

주 1) 총계·총지출 기준 동일
2)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프로그램(1600) 6개 세부사업 예산 전체
3) 인건비: 과학수사연구원인건비, 본부인건비, 소속기관인건비 등 3개 단위사업 예산 전체
4) 기본경비: 과학수사연구원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 소속기관기본경비 등 3개 단위사업 예산 전체
5) 사업비: 상기 지방교부세·인건비·기본경비 내역을 제외한 예산 전체

이를 예산 목적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69조 3,458억 5,500만원으로서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와 연동하여 전년 대비 2조 3,073억 5,000만원(3.44%) 증가하였음.

다음 인건비는 3,908억 7,300만원으로서 공무원 보수 인상(전년 대비 3.5%)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13억 5,400만원(5.78%)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93억 9,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7,300만원(-0.69%) 감소하였음.

마지막으로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2조 9,663억 6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6,931억 2,900만원(30.49%)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3조 7,002억 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조 3,371억 4,000만원(56.59%) 증가하였음.

우선 일반회계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재난대책비(보조) 세부사업(2734-300) 예산이 2025년 대비 크게 증가(6,500억 2,000만원)된 것에 기인함.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사업(1349-306) 예산이 2025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1조 1,500억원이 반영된 것에 기인함.[2)]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2025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이 반영되었음.

(2)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은 3개 분야, 6개 부문, 20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문	프로그램	2025년 본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B-A)/A
총 계		720,839	764,426	43,587	6.05
일반·지방행정 분야(010)		703,298	738,510	35,212	5.01
지방행정·재정지원(013)	소 계	685,301	720,106	34,805	5.08
	지방자치분권(1100)	652	617	△35	△5.37
	지역발전(1200)	13,835	14,067	232	1.68
	지방재정경제(1300)	263	11,779	11,516	4378.71
	지방자치인재개발(1400)	143	158	15	10.49
	이북5도(1500)	23	26	3	13.04
	지방교부세(1600)	670,385	693,459	23,074	3.44
정부자원관리(015)	소 계	7,994	8,451	457	5.72
	인사관리(1800)	2	2	-	-
	정부혁신조직(1900)	340	537	197	57.94
	전자정부(2000)	7,652	7,912	260	3.40
일반행정(016)	소 계	10,001	9,953	△48	△0.48
	정부의전(2100)	177	174	△3	△1.69
	청사관리(2200)	2,271	2,399	128	5.64
	기록물관리(2300)	454	489	35	7.71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2400)	3,219	2,836	△383	△11.90
	행정안전행정지원(7000)	3,880	4,055	175	4.5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020)		17,296	25,847	8,551	49.44
경찰(023)	과학수사(2500)	683	700	17	2.49
재난관리(025)	소 계	16,614	25,147	8,533	51.36
	안전관리(2600)	9,770	11,542	1,772	18.14
	재난관리(2700)	4,386	10,913	6,527	148.81
	재난안전기술개발(2900)	976	1,019	43	4.41
	재난안전정보화(3000)	1,482	1,673	191	12.89
사회복지 분야(080)		245	70	△175	△71.43
취약계층지원(082)	일자리지원(3100)	245	70	△175	△71.43

(3) 사업 내역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은 114개 단위사업과 30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세부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69,976,907	72,083,936	85,982,183	76,442,636	4,358,700	**6.0**
[11]일반회계						67,345,917	69,720,872	82,554,813	72,742,432	3,021,560	**4.3**
	[010]일반·지방행정					66,307,040	68,937,763	81,110,160	71,272,728	2,334,965	**3.4**
		[013]지방행정·재정지원				64,631,995	67,147,094	79,317,961	69,444,236	2,297,142	**3.4**
			[1100]지방자치분권			39,431	39,480	39,480	34,601	△4,879	**△12.4**
				[1131]지자체역량강화		4,942	6,195	6,195	5,181	△1,014	**△16.4**
					[302]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3,054	3,423	3,423	3,123	△300	**△8.8**
					[304]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666	935	935	927	△8	**△0.9**
					[31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463	1,008	1,008	378	△630	**△62.5**
					[315]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161	161	161	145	△16	**△9.9**
					[316]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598	599	599	539	△60	**△10.0**
					[319]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	69	69	69	-	-
				[1132]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7,631	1,524	1,524	1,818	294	**19.3**
					[300]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7,631	1,524	1,524	1,818	294	**19.3**
				[1133]기반정보관련전산망운영(정보화)		228	205	205	-	△205	**순감**
					[504]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228	205	205	-	△205	**순감**
				[1135]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984	1,177	1,177	838	△339	**△28.8**
					[500]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984	1,177	1,177	838	△339	**△28.8**
				[1137]주민등록및인감운영(정보화)		2,732	5,294	5,294	5,109	△185	**△3.5**
					[500]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	2,732	5,294	5,294	5,109	△185	**△3.5**
				[1138]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44	544	544	537	△7	**△1.3**
					[501]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44	544	544	537	△7	**△1.3**
				[1139]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4,635	6,410	6,410	5,323	△1,087	**△17.0**
					[307]지자체경쟁력지원	4,635	6,410	6,410	5,323	△1,087	**△17.0**
				[1140]비영리민간단체지원		3,822	3,604	3,604	3,907	303	**8.4**
					[300]비영리민간단체지원	3,822	3,604	3,604	3,907	303	**8.4**
				[1142]새마을운동지원		6,000	6,645	6,645	5,442	△1,203	**△18.1**
					[304]새마을운동지원	880	792	792	713	△79	**△10.0**
					[305]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5,120	5,853	5,853	4,729	△1,124	**△19.2**
				[1143]성숙하고따뜻한사회구현		488	369	369	331	△38	**△10.3**
					[305]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278	180	180	161	△19	**△10.6**
					[308]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210	189	189	170	△19	**△10.1**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1145]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426	7,513	7,513	6,115	△1,398	**△18.6**
					[300]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426	7,513	7,513	6,115	△1,398	**△18.6**
			[1200]지역발전			27,617	26,146	26,146	22,648	△3,498	**△13.4**
				[1234]생활공감정책추진		252	260	260	-	△260	**순감**
					[300]생활공감정책추진	252	260	260	-	△260	**순감**
				[1237]도로명주소사업추진		22,822	21,023	21,023	18,185	△2,838	**△13.5**
					[300]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9,957	18,665	18,665	18,185	△480	**△2.6**
					[501]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2,865	2,358	2,358	-	△2,358	**순감**
				[1242]한국 섬 진흥원 지원		4,543	4,863	4,863	4,463	△400	**△8.2**
					[300]한국섬진흥원 지원	4,543	4,863	4,863	4,463	△400	**△8.2**
			[1300]지방재정경제			25,465	26,302	12,197,169	22,748	△3,554	**△13.5**
				[1331]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1,113	1,157	1,157	993	△164	**△14.2**
					[300]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1,113	1,157	1,157	993	△164	**△14.2**
				[1332]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620	7,208	7,208	7,671	463	**6.4**
					[500]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5,620	7,208	7,208	7,671	463	**6.4**
				[1333]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775	5,453	5,453	5,149	△304	**△5.6**
					[500]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5,675	5,353	5,353	5,051	△302	**△5.6**
					[503]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00	100	100	98	△2	**△2.0**
				[1335]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91	156	156	388	232	**148.7**
					[300]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91	156	156	388	232	**148.7**
				[1336]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		3,407	3,411	3,411	3,404	△7	**△0.2**
					[301]지방공기업경영평가	3,407	3,411	3,411	3,404	△7	**△0.2**
				[1337]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3,587	3,587	3,587	3,297	△290	**△8.1**
					[300]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3,587	3,587	3,587	3,297	△290	**△8.1**
				[1338]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364	1,424	1,424	1,042	△382	**△26.8**
					[300]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364	1,424	1,424	1,042	△382	**△26.8**
				[1349]지역경제지원		4,507	3,906	3,906	804	△3,102	**△79.4**
					[300]지역금융활성화	87	87	87	114	27	**31.0**
					[301]지역경제활성화	4,420	3,819	3,819	690	△3,129	**△81.9**
				[1350]긴급재정지원		-	-	12,170,867	-	-	**순감**
					[301]민생회복 소비쿠폰	-	-	12,170,867	-	-	**순감**
			[1400]지방자치인재개발			14,533	14,370	14,370	15,822	1,452	**10.1**
				[1431]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5,595	5,817	5,817	6,594	777	**13.4**
					[300]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4,535	4,666	4,666	5,350	684	**14.7**
					[301]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825	1,011	1,011	875	△136	**△13.5**
					[302]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236	140	140	369	229	**163.6**
				[1432]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864	912	912	887	△25	**△2.7**
					[500]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 교육센터운영(정보화)	371	375	375	375	-	-
					[501]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493	537	537	512	△25	**△4.7**
				[1433]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8,074	7,641	7,641	8,341	700	**9.2**
					[650]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8,074	7,641	7,641	8,341	700	**9.2**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1500]이북5도			1,955	2,291	2,291	2,562	271	**11.8**
				[1531]이북도민관련지원		1,955	2,291	2,291	2,562	271	**11.8**
					[300]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499	613	613	531	△82	**△13.4**
					[301]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581	469	469	499	30	**6.4**
					[302]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875	1,209	1,209	1,532	323	**26.7**
			[1600]지방교부세			64,522,994	67,038,505	67,038,505	69,345,855	2,307,350	**3.4**
				[1631]보통교부세		57,793,200	60,401,769	60,401,769	61,703,228	1,301,459	**2.2**
					[300]보통교부세	57,793,200	60,401,769	60,401,769	61,703,228	1,301,459	**2.2**
				[1632]특별교부세		893,800	823,189	823,189	954,133	130,944	**15.9**
					[300]지역현안특별교부세	715,000	658,551	658,551	763,307	104,756	**15.9**
					[301]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78,800	164,638	164,638	190,826	26,188	**15.9**
				[1633]부동산교부세		4,109,800	4,004,709	4,004,709	4,698,208	693,499	**17.3**
					[300]부동산교부세	4,109,800	4,004,709	4,004,709	4,698,208	693,499	**17.3**
				[1644]재난특별교부세		893,699	823,189	823,189	954,133	130,944	**15.9**
					[300]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93,699	823,189	823,189	954,133	130,944	**15.9**
				[1645]소방안전교부세		832,495	985,649	985,649	1,036,153	50,504	**5.1**
					[300]소방안전교부세	832,495	985,649	985,649	1,036,153	50,504	**5.1**
			[015]정부자원관리			724,686	790,534	790,534	833,219	42,685	**5.4**
				[1800]인사관리		164	167	167	152	△15	**△9.0**
					[1831]공무원단체건전육성	164	167	167	152	△15	**△9.0**
					[306]공무원단체건전육성	164	167	167	152	△15	**△9.0**
				[1900]정부혁신조직		20,668	25,132	25,132	41,850	16,718	**66.5**
					[1931]책임운영기관제운영및정부조직진단관리	1,105	1,140	1,140	1,109	△31	**△2.7**
					[300]정부조직진단관리	647	681	681	681	-	-
					[301]책임운영기관제운영	459	459	459	428	△31	**△6.8**
					[1932]민원처리개선(정보화)	7,993	11,132	11,132	29,089	17,957	**161.3**
					[500]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524	537	537	537	-	-
					[501]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7,407	10,530	10,530	26,152	15,622	**148.4**
					[505]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	62	65	65	2,400	2,335	**3,592.3**
					[1933]행정효율성향상	9,080	10,435	10,435	9,261	△1,174	**△11.3**
					[300]행정생산성향상지원	438	469	469	236	△233	**△49.7**
					[302]정부혁신국제네트워크강화및대외신인도제고	676	488	488	503	15	**3.1**
					[303]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2,411	2,629	2,629	2,756	127	**4.8**
					[306]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734	773	773	733	△40	**△5.2**
					[307]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4,241	5,492	5,492	4,464	△1,028	**△18.7**
					[311]온라인 청원 시스템(정보화)	581	584	584	569	△15	**△2.6**
					[1935]정보공개활성화	2,489	2,425	2,425	2,391	△34	**△1.4**
					[305]정보공개활성화(정보화)	2,489	2,425	2,425	2,391	△34	**△1.4**
				[2000]전자정부		703,854	765,235	765,235	791,217	25,982	**3.4**
					[2031]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21,230	26,007	26,007	17,561	△8,446	**△32.5**
					[501]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정보화)	2,098	2,886	2,886	2,886	-	-
					[504]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9,984	11,605	11,605	11,843	238	**2.1**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505]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6,342	8,684	8,684	-	△8,684	순감
					[506]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2,806	2,832	2,832	2,832	-	-
				[2032]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12,854	16,439	16,439	15,003	△1,436	△8.7
					[500]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854	15,510	15,510	15,003	△507	△3.3
					[506]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929	929	-	△929	순감
				[2033]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36,329	19,933	19,933	19,514	△419	△2.1
					[500]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36,329	19,933	19,933	19,514	△419	△2.1
				[2034]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2,982	3,568	3,568	3,592	24	0.7
					[500]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2,982	3,568	3,568	3,592	24	0.7
				[2035]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4,045	5,087	5,087	4,031	△1,056	△20.8
					[506]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 촉진(정보화)	2,942	3,616	3,616	3,488	△128	△3.5
					[507]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103	1,471	1,471	543	△928	△63.1
				[2036]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455,068	517,987	517,987	531,210	13,223	2.6
					[500]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12,009	259,940	259,940	270,240	10,300	4.0
					[503]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	73,476	83,099	83,099	98,197	15,098	18.2
					[507]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150,601	173,334	173,334	158,400	△14,934	△8.6
					[508]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18,982	1,614	1,614	4,373	2,759	170.9
				[2038]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		8,565	8,926	8,926	7,392	△1,534	△17.2
					[302]전자정부분야국제교류협력(ODA,정보화)	1,401	1,375	1,375	1,382	7	0.5
					[501]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ODA)	5,941	6,391	6,391	4,980	△1,411	△22.1
					[507]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정보화)	328	328	328	328	-	-
					[508]전자정부대외협력활동강화(정보화)	895	832	832	702	△130	△15.6
				[2039]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정보화)		10,486	19,119	19,119	39,095	19,976	104.5
					[500]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3,643	5,250	5,250	3,973	△1,277	△24.3
					[504]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	6,843	8,477	8,477	7,143	△1,334	△15.7
					[506]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	5,392	5,392	7,371	1,979	36.7
					[508]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	-	-	20,608	20,608	순증
				[2040]미래전자정부추진(정보화)		6,796	7,358	7,358	10,273	2,915	39.6
					[501]스마트워크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4,860	4,998	4,998	6,202	1,204	24.1
					[504]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 고도화(정보화)	1,136	1,021	1,021	919	△102	△10.0
					[505]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 구축(정보화)	800	1,339	1,339	3,152	1,813	135.4
				[2041]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3,910	3,901	3,901	3,511	△390	△10.0
					[502]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3,910	3,901	3,901	3,511	△390	△10.0
				[2042]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신축		22,786	9,058	9,058	22,599	13,541	149.5
					[500]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22,786	9,058	9,058	22,599	13,541	149.5
				[2045]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27,719	29,948	29,948	30,318	370	1.2
					[500]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27,719	29,948	29,948	30,318	370	1.2
				[2046]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75,292	72,905	72,905	66,385	△6,520	△8.9
					[502]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44,925	41,634	41,634	40,662	△972	△2.3
					[503]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정보화)	14,664	15,008	15,008	10,478	△4,530	△30.2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504]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5,352	7,653	7,653	8,253	600	**7.8**
					[507]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10,351	8,610	8,610	6,992	△1,618	**△18.8**
				[2047]대민서비스기반확충(정보화)		15,793	24,999	24,999	20,733	△4,266	**△17.1**
					[500]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15,793	24,999	24,999	20,733	△4,266	**△17.1**
		[016]일반행정				950,358	1,000,135	1,001,665	995,273	△4,862	**△0.5**
			[2100]정부의전			12,956	17,726	18,656	17,368	△358	**△2.0**
				[2131]국가의정관리		12,956	17,726	18,656	17,368	△358	**△2.0**
					[300]국경일등정부행사	1,546	4,924	5,854	2,559	△2,365	**△48.0**
					[301]정부포상	9,942	10,755	10,755	13,368	2,613	**24.3**
					[302]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	343	323	323	336	13	**4.0**
					[303]국가상징선양	143	776	776	147	△629	**△81.1**
					[307]전직대통령및유족예우	982	948	948	958	10	**1.1**
			[2200]청사관리			227,052	227,123	227,123	239,876	12,753	**5.6**
				[2231]정부청사시설관리		221,926	221,430	221,430	234,183	12,753	**5.8**
					[300]청사시설유지보수	66,631	62,777	62,777	65,936	3,159	**5.0**
					[301]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16,051	16,227	16,227	20,177	3,950	**24.3**
					[302]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26,687	139,093	139,093	147,880	8,787	**6.3**
					[303]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12,556	2,953	2,953	-	△2,953	**순감**
					[500]스마트정부청사관리체계구축(정보화)	-	380	380	190	△190	**△50.0**
				[2232]공무원통근버스운행		5,126	5,693	5,693	5,693	-	-
					[305]공무원통근버스운행	5,126	5,693	5,693	5,693	-	-
			[2300]기록물관리			43,156	45,336	45,336	48,864	3,528	**7.8**
				[2331]기록물효율적관리		16,543	17,144	17,144	16,640	△504	**△2.9**
					[303]국가기록물정리	11,884	12,314	12,314	11,893	△421	**△3.4**
					[306]기록물보존복원	4,659	4,830	4,830	4,747	△83	**△1.7**
				[2332]기록관리정보화(정보화)		8,132	7,895	7,895	10,281	2,386	**30.2**
					[500]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180	302	302	292	△10	**△3.3**
					[501]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3,978	4,089	4,089	6,505	2,416	**59.1**
					[502]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3,973	3,504	3,504	3,484	△20	**△0.6**
				[2333]기록관리정책및교육		2,865	2,823	2,823	3,521	698	**24.7**
					[300]기록관리정책및교육	2,865	2,823	2,823	3,521	698	**24.7**
				[2334]기록정보서비스		1,168	1,746	1,746	1,254	△492	**△28.2**
					[300]기록정보서비스	1,168	1,746	1,746	1,254	△492	**△28.2**
				[2335]기록물보전시설관리		6,310	6,969	6,969	7,637	668	**9.6**
					[302]기록관보존시설관리	6,310	6,969	6,969	7,637	668	**9.6**
				[2336]기록물보존기술연구		189	400	400	400	-	-
					[301]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189	400	400	400	-	-
				[2337]대통령기록관리		7,949	8,359	8,359	9,131	772	**9.2**
					[304]대통령기록관리	7,949	8,359	8,359	9,131	772	**9.2**
			[2400]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294,670	321,910	322,510	283,634	△38,276	**△11.9**
				[2431]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227,728	265,200	265,200	232,692	△32,508	**△12.3**
					[300]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957	1,070	1,070	1,094	24	**2.2**
					[301]과거사관련사업지원	13,364	10,461	10,461	9,405	△1,056	**△10.1**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303]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16,009	11,792	11,792	10,813	△979	**△8.3**
					[304]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	-	-	18,365	18,365	**순증**
					[306]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197,398	241,877	241,877	193,015	△48,862	**△20.2**
				[2432]강제동원진상규명		8,368	8,477	8,477	9,166	689	**8.1**
					[300]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7,464	7,694	7,694	8,619	925	**12.0**
					[302]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904	783	783	547	△236	**△30.1**
				[2433]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2,581	2,578	2,578	2,530	△48	**△1.9**
					[300]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581	2,578	2,578	2,530	△48	**△1.9**
				[243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3,324	8,033	8,633	7,230	△803	**△10.0**
					[300]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3,324	8,033	8,633	7,230	△803	**△10.0**
				[2435]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1,413	30,864	30,864	24,758	△6,106	**△19.8**
					[300]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1,413	30,864	30,864	24,758	△6,106	**△19.8**
				[2436]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6,355	1,954	1,954	3,188	1,234	**63.2**
					[300]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6,355	1,954	1,954	3,188	1,234	**63.2**
				[2437]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4,901	4,804	4,804	3,770	△1,034	**△21.5**
					[300]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4,901	4,804	4,804	3,770	△1,034	**△21.5**
				[2439]진실화해위원회 청산 운영		-	-	-	300	300	**순증**
					[300]진실화해위원회 청산 운영	-	-	-	300	300	**순증**
			[7000]행정안전행정지원			372,524	388,040	388,040	405,531	17,491	**4.5**
				[7001]본부인건비		178,540	182,338	182,338	191,892	9,554	**5.2**
					[100]인건비(본부)	178,540	182,338	182,338	191,892	9,554	**5.2**
				[7002]소속기관인건비		141,187	149,563	149,563	159,895	10,332	**6.9**
					[102]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6,581	7,875	7,875	7,920	45	**0.6**
					[103]인건비(기록)	18,039	18,952	18,952	20,088	1,136	**6.0**
					[104]인건비(청사)	72,476	73,568	73,568	80,765	7,197	**9.8**
					[105]인건비(국가정보자원관리원)	22,011	24,657	24,657	26,085	1,428	**5.8**
					[106]인건비(이북)	3,811	3,992	3,992	4,088	96	**2.4**
					[107]국가재난안전교육원인건비	3,301	3,639	3,639	3,455	△184	**△5.1**
					[108]재난안전연구원인건비(R&D)	8,061	9,272	9,272	9,921	649	**7.0**
					[109]인건비(대통령기록관)	6,697	7,381	7,381	7,314	△67	**△0.9**
					[156]인건비(부마민주항쟁위)	210	227	227	259	32	**14.1**
				[7011]본부기본경비		20,979	24,028	24,028	23,100	△928	**△3.9**
					[200]기관운영(총액)	6,128	5,927	5,927	5,539	△388	**△6.5**
					[201]대변인실(총액)	65	71	71	76	5	**7.0**
					[202]의정관실(총액)	17	29	29	14	△15	**△51.7**
					[203]감사관실(총액)	53	62	62	55	△7	**△11.3**
					[204]기획조정실(총액)	181	172	172	210	38	**22.1**
					[205]정부혁신조직실(총액)	71	74	74	85	11	**14.9**
					[206]전자정부국(총액)	130	135	135	157	22	**16.3**
					[207]차관보실(총액)	316	316	316	323	7	**2.2**
					[208]지방재정경제실(총액)	197	194	194	196	2	**1.0**
					[209]인사기획관실(총액)	12	15	15	14	△1	**△6.7**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210]안전감찰관실기본경비(총액)	32	32	32	33	1	**3.1**
					[211]재난안전상황실기본경비(총액)	57	59	59	61	2	**3.4**
					[212]안전정책실기본경비(총액)	134	146	146	143	△3	**△2.1**
					[213]재난관리실기본경비(총액)	177	224	224	224	-	-
					[214]사회재난실(총액)	111	172	172	169	△3	**△1.7**
					[215]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총액)	86	97	97	105	8	**8.2**
					[249]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39	77	77	81	4	**5.2**
					[250]기관운영	1,502	1,633	1,633	1,424	△209	**△12.8**
					[251]대변인실	271	357	357	341	△16	**△4.5**
					[252]의정관실	213	250	250	239	△11	**△4.4**
					[253]감사관실	527	587	587	570	△17	**△2.9**
					[254]기획조정실	1,463	1,568	1,568	1,514	△54	**△3.4**
					[255]정부혁신조직실	641	691	691	651	△40	**△5.8**
					[256]전자정부국	497	572	572	550	△22	**△3.8**
					[257]차관보실	1,368	1,412	1,412	1,396	△16	**△1.1**
					[258]지방재정경제실	979	1,166	1,166	1,161	△5	**△0.4**
					[259]인사기획관실	481	525	525	505	△20	**△3.8**
					[260]안전감찰관실기본경비	234	244	244	233	△11	**△4.5**
					[261]재난안전상황실기본경비	93	94	94	90	△4	**△4.3**
					[262]안전정책실기본경비	609	618	618	614	△4	**△0.6**
					[263]재난관리실기본경비	842	925	925	928	3	**0.3**
					[264]사회재난실기본경비	523	673	673	667	△6	**△0.9**
					[265]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39	282	282	262	△20	**△7.1**
					[296]불우소외계층격려	45	1,954	1,954	1,880	△74	**△3.8**
					[297]재외주재관지원	1,121	993	993	955	△38	**△3.8**
					[299]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1,528	1,682	1,682	1,635	△47	**△2.8**
					[7018]소속기관기본경비	9,423	10,317	10,317	10,375	58	**0.6**
					[202]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300	298	298	282	△16	**△5.4**
					[204]기록원기본경비(총액)	387	451	451	481	30	**6.7**
					[205]대통령기록관기본경비(총액)	116	152	152	160	8	**5.3**
					[206]청사기본경비(총액)	1,172	1,194	1,194	1,463	269	**22.5**
					[208]이북5도기본경비(총액)	936	1,048	1,048	1,144	96	**9.2**
					[209]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총액)	114	118	118	120	2	**1.7**
					[210]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404	463	463	462	△1	**△0.2**
					[252]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573	634	634	600	△34	**△5.4**
					[254]기록원기본경비	622	677	677	653	△24	**△3.5**
					[255]대통령기록관기본경비	34	52	52	50	△2	**△3.8**
					[256]청사기본경비	1,417	1,512	1,512	1,462	△50	**△3.3**
					[258]이북5도기본경비	3,099	3,276	3,276	3,077	△199	**△6.1**
					[259]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	197	369	369	351	△18	**△4.9**
					[260]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R&D)	53	73	73	70	△3	**△4.1**
					[7031]행정안전정보화(정보화)	4,433	5,792	5,792	6,391	599	**10.3**
					[500]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4,433	5,792	5,792	6,391	599	**10.3**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7032]정책연구개발		865	922	922	765	△157	**△17.0**
					[300]정책연구개발	865	922	922	765	△157	**△17.0**
				[7033]부내행정지원		6,134	6,896	6,896	6,813	△83	**△1.2**
					[300]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2,913	3,417	3,417	3,476	59	**1.7**
					[301]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1,638	1,777	1,777	1,652	△125	**△7.0**
					[302]세종청사 이전 지원	1,583	1,702	1,702	1,685	△17	**△1.0**
				[7034]국제행정발전지원		2,462	668	668	606	△62	**△9.3**
					[303]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2,462	668	668	606	△62	**△9.3**
				[7036]국민안전방송운영		765	821	821	760	△61	**△7.4**
					[300]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765	821	821	760	△61	**△7.4**
				[7037]재난상황관리		7,736	6,695	6,695	4,934	△1,761	**△26.3**
					[300]중앙안전상황실운영	7,736	6,695	6,695	4,934	△1,761	**△26.3**
	[020]공공질서및안전					1,038,877	783,109	1,444,653	1,469,704	686,595	**87.7**
		[023]경찰				65,486	68,252	68,252	69,987	1,735	**2.5**
			[2500]과학수사			65,486	68,252	68,252	69,987	1,735	**2.5**
				[2501]과학수사연구원인건비		33,650	37,618	37,618	39,086	1,468	**3.9**
					[108]인건비(국과수)	33,650	37,618	37,618	39,086	1,468	**3.9**
				[2511]과학수사연구원기본경비		5,349	5,326	5,326	5,923	597	**11.2**
					[200]국과수기본경비(총액)	5,040	3,968	3,968	5,533	1,565	**39.4**
					[250]국과수기본경비	309	1,358	1,358	390	△968	**△71.3**
				[2531]과학수사활동지원		20,146	17,523	17,523	18,253	730	**4.2**
					[303]과학수사감정지원	10,779	12,360	12,360	12,843	483	**3.9**
					[304]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9,367	5,163	5,163	5,410	247	**4.8**
				[2532]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796	1,742	1,742	1,286	△456	**△26.2**
					[500]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796	1,742	1,742	1,286	△456	**△26.2**
				[2533]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5,546	6,043	6,043	5,439	△604	**△10.0**
					[300]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5,546	6,043	6,043	5,439	△604	**△10.0**
		[025]재난관리				973,391	714,857	1,376,401	1,399,717	684,860	**95.8**
			[2600]안전관리			30,029	36,062	36,062	47,644	11,582	**32.1**
				[2631]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4,128	8,052	8,052	15,934	7,882	**97.9**
					[301]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운영	-	3,204	3,204	3,275	71	**2.2**
					[303]재난안전산업활성화	2,758	3,124	3,124	3,004	△120	**△3.8**
					[304]재난안전사업평가	1,118	1,466	1,466	1,265	△201	**△13.7**
					[305]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	252	258	258	-	△258	**△100.0**
					[307]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	-	-	3,390	3,390	**순증**
					[308]국민안전산업펀드조성	-	-	-	5,000	5,000	**순증**
				[2632]생활안전개선 추진		13,332	15,592	15,592	15,269	△323	**△2.1**
					[301]국민안전의식선진화	-	3,032	3,032	2,741	△291	**△9.6**
					[302]4.16재단지원	330	330	330	330	-	-
					[303]지역안전개선컨설팅	-	5,758	5,758	5,588	△170	**△3.0**
					[305]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309	600	600	600	-	-
					[306]승강기안전관리개선	12,693	5,872	5,872	6,010	138	**2.4**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2633]민방위재난안전교육		3,141	3,354	3,354	3,344	△10	**△0.3**
					[300]재난안전교육원운영	3,141	3,354	3,354	3,344	△10	**△0.3**
				[2634]비상시대비능력강화		9,427	9,064	9,064	13,097	4,033	**44.5**
					[300]비상대비훈련	1,002	1,040	1,040	1,038	△2	**△0.2**
					[301]동원자원관리	642	763	763	728	△35	**△4.6**
					[303]B-1정부노후시설정비	888	353	353	574	221	**62.6**
					[304]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6,728	6,736	6,736	10,592	3,856	**57.2**
					[305]비상대비담당자선발	169	172	172	165	△7	**△4.1**
			[2700]재난관리			714,140	438,640	1,100,184	1,091,294	652,654	**148.8**
				[2731]재난관리인프라구축		10,181	11,230	11,230	10,768	△462	**△4.1**
					[300]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477	551	551	601	50	**9.1**
					[301]재난관리평가지원	640	655	655	662	7	**1.1**
					[304]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2,384	2,110	2,110	2,310	200	**9.5**
					[305]재난관리국제협력	2,164	2,403	2,403	2,320	△83	**△3.5**
					[307]지진대비인프라구축	4,517	5,511	5,511	4,660	△851	**△15.4**
					[311]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	-	-	215	215	**순증**
				[2733]재난경감활성화		2,098	8,314	8,314	8,214	△100	**△1.2**
					[300]자연재해저감 역량강화	238	272	272	272	-	-
					[303]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860	2,042	2,042	1,942	△100	**△4.9**
					[310]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	6,000	6,000	6,000	-	-
				[2734]재난복구지원		700,666	417,324	1,077,324	1,067,692	650,368	**155.8**
					[300]재난대책비(보조)	653,762	360,020	1,020,020	1,010,040	650,020	**180.6**
					[301]재난구호지원	1,000	900	900	1,221	321	**35.7**
					[302]풍수해·지진재해보험	38,042	48,994	48,994	48,951	△43	**△0.1**
					[303]재난심리회복지원	1,181	940	940	1,052	112	**11.9**
					[314]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5,909	5,618	5,618	5,183	△435	**△7.7**
					[317]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771	852	852	1,245	393	**46.1**
				[2735]재난관리지원		1,195	1,772	3,316	4,620	2,848	**160.7**
					[300]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273	305	305	274	△31	**△10.2**
					[301]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261	303	303	341	38	**12.5**
					[304]재난원인조사및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502	619	619	612	△7	**△1.1**
					[309]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159	545	2,089	3,393	2,848	**522.6**
			[2900]재난안전기술개발			80,937	91,965	91,965	93,452	1,487	**1.6**
				[2931]재난안전기술개발		76,807	88,445	88,445	89,468	1,023	**1.2**
					[509]도시침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저감실용화 기술개발(R&D)	1,600	2,650	2,650	-	△2,650	**순감**
					[513]AI기반차세대안전신고및위험 징후분석 서비스 기술개발(R&D)	1,500	1,080	1,080	-	△1,080	**순감**
					[517]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개발(R&D)	1,040	1,976	1,976	-	△1,976	**순감**
					[520]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 기술개발(R&D)	-	2,000	2,000	2,600	600	**30.0**
					[524]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R&D)	-	1,270	1,270	1,791	521	**41.0**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527]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 위험성분석기술개발(R&D)	-	1,500	1,500	2,600	1,100	**73.3**
					[529]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 위험지도및설계기준고도화(R&D)	-	1,491	1,491	1,500	9	**0.6**
					[533]재난안전중점기술로드맵연계형 기술개발(R&D)	-	-	-	1,500	1,500	**순증**
					[534]재난안전산업우수기술개발 지원(R&D)	-	-	-	2,000	2,000	**순증**
					[535]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	-	-	-	26,766	26,766	**이관**
					[610]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13,562	14,411	14,411	15,278	867	**6.0**
					[614]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851	482	482	543	61	**12.7**
					[627]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11,060	11,867	11,867	18,925	7,058	**59.5**
					[628]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7,590	3,180	3,180	-	△3,180	**순감**
					[629]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R&D)	4,450	3,058	3,058	-	△3,058	**순감**
					[631]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5,500	3,870	3,870	-	△3,870	**순감**
					[632]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2,344	2,110	2,110	1,500	△610	**△28.9**
					[634]기후변화 대응 AI 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기술 개발(R&D)	3,400	520	520	-	△520	**순감**
					[635]재난 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R&D)	2,160	1,630	1,630	-	△1,630	**순감**
					[638]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지원(R&D)	5,060	9,570	9,570	7,465	△2,105	**△22.0**
					[640]지진위험 분석 및 관리기술 개발(R&D)	4,100	8,100	8,100	-	△8,100	**순감**
					[641]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R&D)	3,950	5,100	5,100	-	△5,100	**순감**
					[642]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2단계)(R&D)	4,140	6,080	6,080	-	△6,080	**순감**
					[644]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R&D)	4,500	6,500	6,500	7,000	500	**7.7**
				[2932]재난안전연구지원		4,131	3,520	3,520	3,984	464	**13.2**
					[300]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2,133	1,190	1,190	1,385	195	**16.4**
					[301]재난안전연구원운영	1,615	1,649	1,649	1,938	289	**17.5**
					[302]재난안전정책서비스	384	414	414	405	△9	**△2.2**
					[305]잠재재난요소조사평가	-	267	267	256	△11	**△4.1**
			[3000]재난안전정보화			148,285	148,190	148,190	167,327	19,137	**12.9**
				[3031]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132,157	127,779	127,779	141,593	13,814	**10.8**
					[501]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9,510	15,027	15,027	12,520	△2,507	**△16.7**
					[502]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112,646	112,752	112,752	129,073	16,321	**14.5**
				[3032]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16,128	20,411	20,411	25,734	5,323	**26.1**
					[500]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4,519	7,904	7,904	6,696	△1,208	**△15.3**
					[501]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3,475	2,343	2,343	2,155	△188	**△8.0**
					[502]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정보화)	580	509	509	509	-	-
					[503]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운영(정보화)	3,517	4,156	4,156	3,569	△587	**△14.1**
					[505]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785	424	424	436	12	**2.8**
					[509]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3,251	5,075	5,075	12,369	7,294	**143.7**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39]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30,990	2,363,064	3,427,370	3,700,204	1,337,140	**56.6**
	[010]일반·지방행정					1,597,120	1,391,998	2,392,218	2,578,244	1,186,246	**85.2**
		[013]지방행정·재정지원				1,577,907	1,383,083	2,383,083	2,566,330	1,183,247	**85.6**
			[1100]지방자치분권			26,640	25,759	25,759	27,138	1,379	**5.4**
				[1131]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27	27	27	27	-	-
					[304]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27	27	27	27	-	-
				[1131]지자체자율통합지원		11,797	10,575	10,575	7,795	△2,780	**△26.3**
					[300]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11,797	10,575	10,575	7,795	△2,780	**△26.3**
				[1132]지자체역량강화		1,291	1,836	1,836	1,496	△340	**△18.5**
					[325]지방시대위원회운영	1,291	1,836	1,836	1,496	△340	**△18.5**
				[1141]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524	13,321	13,321	17,820	4,499	**33.8**
					[302]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524	13,321	13,321	17,820	4,499	**33.8**
				[1200]지역발전		1,251,274	1,357,324	1,357,324	1,384,067	26,743	**2.0**
				[1231]광역경제권추진지원		9,744	5,528	5,528	10,777	5,249	**95.0**
					[302]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199	200	200	-	△200	**순감**
					[303]지역발전활성화	9,545	5,328	5,328	10,777	5,449	**102.3**
				[1231]특수상황지역개발		210,498	194,260	194,260	199,449	5,189	**2.7**
					[300]특수상황지역개발	210,498	194,260	194,260	199,449	5,189	**2.7**
				[1231]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3,078	5,026	5,026	2,837	△2,189	**△43.6**
					[301]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3,078	5,026	5,026	2,837	△2,189	**△43.6**
				[1232]지역경관개선지원		-	10,000	10,000	-	△10,000	**순감**
					[300]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	10,000	10,000	-	△10,000	**순감**
				[1233]접경권발전지원		-	45,627	45,627	53,271	7,644	**16.8**
					[300]접경권발전지원(자율)	-	45,627	45,627	53,271	7,644	**16.8**
				[1233]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61,797	79,942	18,145	**29.4**
					[301]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61,797	79,942	18,145	**29.4**
				[1235]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400	9,818	9,818	11,761	1,943	**19.8**
					[301]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400	9,818	9,818	11,761	1,943	**19.8**
				[1236]서해5도종합발전지원		8,783	8,540	8,540	10,707	2,167	**25.4**
					[300]서해5도종합발전지원	8,783	8,540	8,540	-	△8,540	**이관**
					[300]서해5도종합발전지원(자율)	-	-	-	10,707	10,707	**이관**
				[1241]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847	11,478	11,478	15,323	3,845	**33.5**
					[300]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847	11,478	11,478	3,742	△7,736	**△67.4**
					[300]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	-	-	11,581	11,581	**이관**
				[1247]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7,925	5,250	5,250	-	△5,250	**순감**
					[301]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7,925	5,250	5,250	-	△5,250	**순감**
				[1261]지방소멸대응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
					[300]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
				[1300]지방재정경제		299,993	-	1,000,000	1,155,125	1,155,125	**순증**
				[1349]지역경제지원		299,993	-	1,000,000	1,155,125	1,155,125	**순증**
					[301]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	-	-	26	26	**이관**
					[301]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	-	-	4,935	4,935	**이관**
					[301]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	-	-	164	164	**이관**
					[306]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99,993	-	1,000,000	1,150,000	1,150,000	**순증**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015]정부자원관리				19,212	8,915	9,135	11,914	2,999	**33.6**
			[1900]정부혁신조직			19,212	8,915	9,135	11,914	2,999	**33.6**
				[1938]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19,212	8,915	9,135	11,914	2,999	**33.6**
					[301]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9,212	8,915	9,135	11,914	2,999	**33.6**
	[020]공공질서및안전					949,352	946,527	1,010,613	1,115,010	168,483	**17.8**
		[025]재난관리				949,352	946,527	1,010,613	1,115,010	168,483	**17.8**
			[2600]안전관리			946,952	940,927	1,005,013	1,106,610	165,683	**17.6**
				[2635]재난예방지원		940,019	934,809	998,895	1,100,810	166,001	**17.8**
					[300]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69,666	874,154	944,332	1,048,810	174,656	**20.0**
					[301]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70,352	60,655	44,563	40,000	△20,655	**△34.1**
					[302]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	-	10,000	12,000	12,000	**순증**
				[2638]재난예방지원		6,933	6,118	6,118	5,800	△318	**△5.2**
					[302]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6,933	6,118	6,118	5,800	△318	**△5.2**
			[2900]재난안전기술개발			2,400	5,600	5,600	8,400	2,800	**50.0**
				[2931]재난안전기술개발		2,400	5,600	5,600	8,400	2,800	**50.0**
					[626]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2단계)(R&D)	2,400	5,600	5,600	8,400	2,800	**50.0**
	[080]사회복지					84,519	24,539	24,539	6,950	△17,589	**△71.7**
		[082]취약계층지원				84,519	24,539	24,539	6,950	△17,589	**△71.7**
			[3100]일자리지원			84,519	24,539	24,539	6,950	△17,589	**△71.7**
				[3131]지역일자리창출		84,519	24,539	24,539	6,950	△17,589	**△71.7**
					[301]마을기업육성사업	2,695	1,675	1,675	5,250	3,575	**213.4**
					[301]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6,186	3,011	3,011	1,700	△1,311	**△43.5**
					[30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5,638	19,853	19,853	-	△19,853	**순감**

(4)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임무(Mission)와 비전(Vision)을 각각 'AI 민주정부 구현, 지방자치·균형발전 촉진, 국민생명·안전 보호' 및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정부 구현'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행정안전부는 임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6가지 전략목표(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정부 구현한다' ②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③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④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⑤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⑥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한다.')와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상 16개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94개, 세부사업은 총 192개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성과 목표 및 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개)	6	16	94	192

※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p5.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대상 사업 재정현황]

<성과관리대상/ 비대상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소관 (C)	타부처 소관 (D)	계 (C+D)	비율
총 계(A+B)		76,442,636	19,599	76,462,235	100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5,781,665	0	5,781,665	7.6
	정보화	718,079	0	718,079	0.9
	R&D	103,707	0	103,707	0.1
	소계(A)	6,603,451	0	6,603,451	8.6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390,873	0	390,873	0.5
	기본경비	62,447	0	62,447	0.1
	교부금	69,355,468	3,000	69,358,468	90.7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30,397	16,599	46,996	0.1
	소계(B)	69,839,185	19,599	69,858,784	91.4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p.12.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기금명	성과관리 대상사업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계	비율
총 계		0	19,599	19,599	0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0	3,000	3,000	0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0	3,188	3,188	0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0	13,411	13,411	0

주 1) 복권기금: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6333-330) 30억원
2) 기후대응기금: 정부청사온실가스저감사업(6132-500) 32억원
3) 국유재산관리기금: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2631-403) 111억,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2631-560) 23억

※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p.12.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성과 목표 체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6예산안
전략목표 Ⅰ. 일 잘하고 소통하는 국민 모두의 AI민주정부를 구현한다.				844,981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과 소통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53,764
정부혁신 조직	민원처리개선(정보화)	일반회계	1900-1932	29,089
	행정효율성향상	일반회계	1900-1933	9,261
	정보공개활성화	일반회계	1900-1935	2,391
	책임운영기관제운영및정부조직진단관리	일반회계	1900-1931	1,109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00-1938	11,914
프로그램목표 Ⅰ-2. AI민주정부 기반 구축과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791,217
전자정부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1	17,561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2	15,003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3	19,514
	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4	3,592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5	4,03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6	531,210
	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8	7,392
	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9	39,095
	미래전자정부추진(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0	10,273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1	3,511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	일반회계	2000-2042	22,599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2000-2045	30,318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6	66,385
	대민서비스기반확충(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7	20,733
전략목표 Ⅱ.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1,519,753
프로그램목표 Ⅱ-1.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46,011
지방자치 분권	지자체역량강화	일반회계	1100-1131	5,181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5	838
	주민등록및인감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7	5,109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8	537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일반회계	1100-1139	5,323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일반회계	1100-1140	3,907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6예산안
	새마을운동지원	일반회계	1100-1142	5,442
	성숙하고따뜻한사회구현	일반회계	1100-1143	331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0-1131	27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0-1141	17,820
	지자체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0-1132	1,496
프로그램목표 Ⅱ-2.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1,177,873**
지방재정경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300-1332	7,671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300-1333	5,149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일반회계	1300-1331	993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일반회계	1300-1335	388
	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	일반회계	1300-1336	3,404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일반회계	1300-1337	3,297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일반회계	1300-1338	1,042
	지역경제지원	일반회계	1300-1349	804
	지역경제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00-1349	1,155,125
프로그램목표 Ⅱ-3.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한다				**10,472**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400-1432	887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1400-1433	8,34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일반회계	1400-1431	1,244
프로그램목표 Ⅱ-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남북 평화번영 시대의 매개체 역할을 강화시킨다.				**2,063**
이북5도	이북도민관련지원	일반회계	1500-1531	2,063
프로그램목표 Ⅱ-5. 과거사 및 민주화 운동관련 희생자 지원과 명예회복 추진을 통해 공동체 화합에 기여한다.				**283,334**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일반회계	2400-2431	232,692
	강제동원진상규명	일반회계	2400-2432	9,166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일반회계	2400-2433	2,5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일반회계	2400-2434	7,2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일반회계	2400-2435	24,758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일반회계	2400-2436	3,188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일반회계	2400-2437	3,770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6예산안
전략목표 Ⅲ.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1,413,665
프로그램목표 Ⅲ-1.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1,406,715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199,449
	광역경제권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10,777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5	11,761
	한국 섬 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1200-1242	4,463
	지방소멸대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61	1,000,000
	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3	53,27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3	79,942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6	10,707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41	11,581
	도로명주소사업추진	일반회계	1200-1237	18,185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41	3,742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2,837
프로그램목표 Ⅲ-2.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				6,950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00-3131	6,950
전략목표 Ⅳ.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313,718
프로그램목표 Ⅳ-1.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한다.				48,864
기록물관리	기록물효율적관리	일반회계	2300-2331	16,640
	기록관리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2300-2332	10,281
	기록관리정책및교육	일반회계	2300-2333	3,521
	기록정보서비스	일반회계	2300-2334	1,254
	기록물보전시설관리	일반회계	2300-2335	7,637
	기록물보존기술연구	일반회계	2300-2336	400
	대통령기록관리	일반회계	2300-2337	9,131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6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2. 효과적인 정부청사 관리 및 운영으로 업무편의를 높인다.				239,876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일반회계	2200-2231	234,183
	공무원통근버스운행	일반회계	2200-2232	5,693
프로그램목표 Ⅳ-3.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시스템을 구축한다.				24,978
과학수사	과학수사활동지원	일반회계	2500-2531	18,253
	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2500-2532	1,286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일반회계	2500-2533	5,439
전략목표 Ⅴ.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1,256,106
프로그램목표 Ⅴ-1. 국가안전 정책수립 및 국민생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1,154,254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2600-2631	15,934
	생활안전개선 추진	일반회계	2600-2632	15,269
	민방위재난안전교육	일반회계	2600-2633	3,344
	비상시대비능력강화	일반회계	2600-2634	13,097
	재난예방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00-2638	5,800
	재난예방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00-2635	1,100,810
프로그램목표 Ⅴ-2. 국민안전 기술을 과학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101,852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일반회계	2900-2931	89,468
	재난안전연구지원	일반회계	2900-2932	3,984
	재난안전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00-2931	8,400
전략목표 Ⅵ.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한다				1,255,228
프로그램목표 Ⅵ-1.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정책 추진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한다.				1,087,901
재난관리	재난관리인프라구축	일반회계	2700-2731	10,768
	재난경감활성화	일반회계	2700-2733	8,214
	재난복구지원	일반회계	2700-2734	1,067,692
	재난관리지원	일반회계	2700-2735	1,227
프로그램목표 Ⅵ-2. 재난정보화 업무를 통해 재난상황 및 환경변화를 빠르게 대응한다.				167,327
재난안전정보화	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일반회계	3000-3031	141,593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3000-3032	25,734
총 계				6,603,451

※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pp.316~320.

(5) 성인지예산

행정안전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총 4개, 31억 9,700만원 규모임.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의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내역사업(5억 200만원)은 지자체 여성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②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세부사업(5억 3,100만원)은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③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18억 9,000만원)은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을 통해 여성 교육생이 재난관리 분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④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세부사업(2억 7,400만원)은 사회재난교육에 대한 여성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일반회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502	502	-	-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613	531	-82	-13.4
	3)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1,890	1,890	-	-
	4)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305	274	-31	-10.2
총 계		**3,310**	**3,197**	**-113**	**-3.4**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p.191.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행정안전부 해당 없음.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6년도 신규사업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사업(R&D),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8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6년 예산안	사 업 내 용
계	59,779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20,608	공공부문 공통 서비스에 AI를 적용하여 표준화·효율화로 중복투자 방지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필요
진실화해위원회 청산 운영	300	진화위 폐지에 따라 위원회 조직 정리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	3,390	재난현장 드론을 통해 실시간 정보파악으로 신속한 상황판단 및 현장대응 지원체계 구축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5,000	첨단 기술기반 국민안전기업의 성장 촉진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215	개발도상국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해 수원국 재난관리 정책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여 재난역량 강화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사업 (R&D)	26,766	“재난안전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한 3대 전략분야 현장활용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행정안전부 고유임무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재난안전중점기술로드맵연계형 기술개발(R&D)	1,500	재난안전 R&D 분야의 고유임무형 현장 적용 기술에 선택·집중하기 위한 중점기술 로드맵 연계형 기술개발 추진
재난안전산업 우수 기술개발지원 (R&D)	2,000	최근 재난안전 최대 이슈인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AI, 빅데이터, 재난로봇 등 첨단 기술분야에 특화한 기술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제 추진

주) 단순 이관사업 및 2025년 이전 편성 이력이 있었던 사업 제외

나. 2025년도 종료사업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종료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진위험분석및관리기술개발(R&D) 등 19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사 유
계	69,455	
생활공감정책 추진	260	사업 종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587	시스템 구축 완료
지자체경쟁력지원	750	30주년 종료
클라우드기반의통합주소체계구축(정보화)	2,358	시스템구축완료
자연재난정책연계형기술개발(R&D)	3,058	사업기간 종료
지능형상황관리 기술개발(R&D)	3,870	사업기간 종료
기후변화대응AI기반풍수해위험도 예측기술개발(R&D)	520	사업기간 종료
재난위험감지및모니터링기술개발(R&D)	1,630	사업기간 종료
사회복합재난 대응기술개발(R&D)	3,18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도시침수방어능력강화를위한피해저감실용화기술개발(R&D)	2,65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AI기반차세대안전신고및위험징후분석서비스기술개발(R&D)	1,08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과학기술기반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R&D)	1,976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지진위험분석및관리기술개발(R&D)	8,10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재난안전공동연구기술개발(R&D)	5,10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국민수요맞춤형생활안전연구개발사업(2단계)(R&D)	6,08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2,953	건축 완료('25.4.)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00	지출구조 조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9,853	'25년 사업 완료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5,250	'25년 사업 완료

주) 단순 이관 및 통폐합사업 제외

3. 주요 유형별 예산안

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액은 3조 7,372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44개의 보조사업이 편성되었음.

일반회계에서는 20개의 사업(1조 666억 9,300만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24개 사업(2조 6,70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44개)				3,472,818	3,737,201	264,381
-	일반회계(20개)			1,072,958	1,066,693	-6,26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4개)			2,399,860	2,670,508	270,648
1	일반회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330-01	980	980	0
2		지자체경쟁력지원	330-03	350	350	0
			330-01	1,650	1,650	0
종료		생활공감정책추진	330-01	135	0	-135
종료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330-01	117	0	-117
3		재난안전산업활성화	330-01	243	243	0
4		지역안전개선컨설팅	330-01	935	553	-383
5		국민안전의식선진화	330-01	370	370	0
6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330-03	3,818	3,819	1
			330-01	1,731	5,567	3,836
7		재난구호지원	330-01	900	1,200	300
8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330-01	60	90	30
9		재난대책비(보조)	330-03	1,019,960	1,009,940	-10,020
10		지진대비인프라구축	330-01	2,592	2,071	-521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11		동원자원관리	330-01	133	133	0
12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330-03	6,810	6,243	-567
			330-01	770	770	0
종료		지역경제활성화	330-01	3,060	0	-3,060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330-03	4,055	7,606	3,551
			330-01	3,642	4,735	1,093
14		재난심리회복지원	330-01	700	840	140
15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330-01	3,115	2,804	-312
16		과거사관련사업지원	330-01	8,286	7,433	-853
17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330-03	80	100	20
			330-01	2,166	1,511	-655
18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330-03	6,000	6,000	0
19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330-01	300	200	-100
종료		(민생회복 소비쿠폰)[1]	330-01	12,160,522	0	순감
20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330-03	0	1,485	순증
21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특수상황지역개발	330-03	194,260	199,449	5,189
22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330-03	2,966	1,700	-1,266
			330-01	45	0	-45
23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330-01	10,000	0	-10,000
24		접경권발전지원(자율)	330-03	45,627	53,271	7,644
25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330-03	0	11,581	11,581
26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330-01	0	4,935	4,935
27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330-03	10,575	7,795	-2,780
28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330-01	8,540	10,707	2,167
29		지역발전활성화	330-01	0	200	200
			330-03	0	6,275	6,275
30		자원봉사활성화지원	330-03	0	4,500	4,500
			330-01	9,716	10,245	529
31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330-03	941,532	1,048,443	106,911
			330-01	2,500		-2,50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32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330-03	61,797	79,942	18,145
33		마을기업육성사업	330-01	1,475	4,650	3,175
3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30-01	999,600	1,149,400	149,800
종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30-01	19,545	0	-19,545
35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330-03	10,913	3,233	-7,680
36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330-03	44,530	39,967	-4,563
37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330-03	10,000	12,000	2,000
38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330-01	0	132	132
			330-03	9,818	11,629	1,811
39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330-01	0	1,600	1,600
40	균특회계 (제주계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330-01	27	27	0
4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330-03	5,026	2,837	-2,189
42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330-01	0	164	164
종료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330-03	5,250	0	-5,250
43	균특회계 (세종계정)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330-03	6,118	5,800	-318
4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330-01	0	26	26

주1) 2025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그 규모가 1조 2,000억원이상으로 크고 일회성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연도별 자치단체보조금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 사업 예산은 합계 산정시 제외함.

2) 2025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민간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민간보조사업 예산액은 827억 8,400만원이며, 일반회계로 18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민간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과목	피보조 기관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					84,489	82,784	-1,705
1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140-300)	320-01	비영리민간단체 200개	2,925	3,298	373
2	일반회계	새마을운동지원 (1142-304)	320-01	새마을운동중앙회	734	660	-74
3	일반회계	맞춤형 새마을 운동 지원사업(ODA) (1142-305)	320-01	공모기관	1,100	537	-563
				새마을운동중앙회	4,158	3,912	-246
				새마을금고중앙회	462	160	-302
				소 계	5,720	4,609	-1,111
4	일반회계	행복한 선진시민사회구현 (1143-305)	320-01	한국자유총연맹	180	161	-19
5	일반회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1143-308)	320-01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189	170	-19
6	일반회계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320-01		0	1,729	1,729
7	일반회계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531-302)	320-01	(사)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등	391	335	-56
8	일반회계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2041-502)	320-01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3,875	3,485	-390
9	일반회계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2131-307)	320-01	(사)해위윤보선 대통령기념사업회	105	105	-
				(재)아름다운봉하	141	141	-
				소 계	246	246	-
10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333-300)	320-01	유네스코국제기록 유산센터	1,718	2,511	793
11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조사지원및운영(2432-300)	320-0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3,827	4,210	383
12	일반회계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433-300)	320-01	부마민주항쟁재단	1,404	1,429	25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과목	피보조 기관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13	일반회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2434-300)	320-01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8,633	7,230	-1,403
종료	일반회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지원 (2435-300)	320-01	공모 단체	1,300	0	-1,300
14	일반회계	4.16재단지원 (2632-302)	320-01	4.16재단	330	330	0
15	일반회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632-306)	320-0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6	56	0
16	일반회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731-300)	320-01	전국자율 방재단연합회	45	45	0
17	일반회계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2731-304)	320-01	강원대학교(재난)	90	45	-45
				울산과기원(재난)	90	45	-45
				동의대학교(재난)	90	45	-45
				한성대학교(재난)	90	45	-45
				숭실대학교(재난)	90	45	-45
				군산대학교(지진)	180	90	-90
				세종대학교(지진)	180	90	-90
				울산과기원(지진)	180	90	-90
				강원대학교(지진)	198	180	-18
				부산대학교(지진)	180	90	-90
				연세대학교(지진)	180	180	0
				고려대학교(지진)	90	0	-90
				숭실대학교(지진)	162	180	18
18	일반회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2734-302)	320-01		48,580	48,580	0
1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1141-302)	320-0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27	127	0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30	30	0
				한국중앙자원 봉사센터	2,379	2,418	39
				소계	2,536	2,575	39

주) 2025년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임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연구용역비 예산안 현황

□ 연구용역비(260목)는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로 구분되는데, 각 세목의 편성 목적은 다음과 같음.

일반연구비(260-01)	정책연구비(260-02)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편성 목적의 차이 이외에, 정책연구용역은 일반연구용역과 달리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과제가 선정되고,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중복성이 검토되며 용역결과가 공개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일반연구비(정보화사업 제외)[3]가 50개 세부사업(205억 5,700만원)에, 정책연구비가 16개 세부사업(38억 2,200만원)에 편성되었음.

3) 일반연구비(260-01)에는 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전산개발에 대한 용역 비용이 포함됨. 그러나 정보화사업은 별도 목차가 있으므로, 일반연구비에서는 제외하고 현황을 분석함.

[2026년도 행정안전부 일반연구비(260-01)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50)				20,557	21,123	565
일반회계(48)				20,257	21,023	76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				300	100	-200
1	일반회계	국경일등정부행사		0	629	629
2	일반회계	기록정보서비스		0	50	50
3	일반회계	비상대비훈련		155	155	0
종료	일반회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90	0	-90
4	일반회계	대통령기록관리		380	359	-22
5	일반회계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1,135	1,335	200
6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96	196	0
7	일반회계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790	722	-68
8	일반회계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30	27	-3
9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100	96	-4
10	일반회계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52	47	-5
11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340	111	-229
12	일반회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738	548	-190
13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제운영		217	195	-22
14	일반회계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400	400	0
15	일반회계	과학수사감정지원		301	301	0
16	일반회계	국가기록물정리		282	222	-60
17	일반회계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024	1,833	-191
18	일반회계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100	300	200
19	일반회계	행정생산성향상지원		30	0	-30
20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활성화		525	297	-228
21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400	800	400
22	일반회계	국민안전의식선진화		100	88	-12
23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1,136	1,136	0
24	일반회계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1,175	1,098	-77
25	일반회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78	101	-177
26	일반회계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30	30	0
27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5	127	102
28	일반회계	지진대비인프라구축		1,550	1,250	-300
29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260	270	1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30	일반회계	동원자원관리		41	41	0
31	일반회계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600	577	-23
32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54	54	0
33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3,071	3,123	52
34	일반회계	재난안전사업평가		350	372	22
35	일반회계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332	1,001	669
36	일반회계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339	339	0
37	일반회계	기록관보존시설관리		43	43	0
38	일반회계	재난관리평가지원		40	40	0
39	일반회계	재난안전정책서비스		240	240	0
40	일반회계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100	85	-15
41	일반회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47	100	-147
42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182	174	-8
43	일반회계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250	500	250
44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30	200	170
45	일반회계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운영		340	340	0
46	일반회계	잠재재난요소조사평가		150	130	-20
47	일반회계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80	340	260
종료	일반회계	민생회복 소비쿠폰		200	0	-200
48	일반회계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0	215	215
4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지역발전활성화		600	386	-214
종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29	0	-129
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마을기업육성사업		0	100	100
종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지방시대위원회운영		300	0	-300

주1) 정보화 사업은 제외
2) 2025년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비(260-02)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16개)				3,541	3,822	281
일반회계(12개)				1,839	2,234	3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4개)				1,702	1,588	-114
1	일반회계	정책연구개발		922	765	-157
2	일반회계	정부조직진단관리		240	240	0
3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140	183	43
4	일반회계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400	400	0
5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		50	50	0
6	일반회계	재난안전사업평가		1,000	777	-223
7	일반회계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50	50	0
8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100	50	-50
9	일반회계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210	210	0
10	일반회계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189	100	-89
11	일반회계	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70	70	0
12	일반회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0	150	150
1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20	120	0
1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	250	200
1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지방시대위원회운영		0	107	107
1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0	300	300

주) 2025년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정보화사업 예산안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정보화사업 예산액은 1조 302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60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			972,780	1,030,246	57,466
1	일반회계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19,933	19,514	-419
2	일반회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44	537	-7
3	일반회계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	5,294	5,109	-185
4	일반회계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5,353	5,051	-302
5	일반회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정보화)	509	509	0
6	일반회계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7,904	6,696	-1,208
7	일반회계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3,901	3,511	-390
8	일반회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5,027	12,520	-2,507
9	일반회계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5,792	6,391	599
종료	일반회계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205	0	-205
10	일반회계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	83,099	98,197	15,098
11	일반회계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정보화)	1,339	3,152	1,813
12	일반회계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41,634	40,662	-972
13	일반회계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정보화)	328	328	0
14	일반회계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2,343	2,155	-188
15	일반회계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7,653	8,253	600
16	일반회계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1,177	838	-339
17	일반회계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정보화)	1,021	919	-102
18	일반회계	스마트워크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4,998	6,202	1,204
19	일반회계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4,089	6,505	2,416
20	일반회계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302	292	-10
21	일반회계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3,504	3,484	-2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22	일반회계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1,742	1,286	-456
23	일반회계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ODA)	6,391	4,980	-1,411
24	일반회계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6,347	3,973	-2,374
25	일반회계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537	537	0
26	일반회계	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	65	2,400	2,335
27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537	512	-25
28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375	375	0
29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112,752	129,073	16,321
30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72,149	270,240	-1,909
31	일반회계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4,156	3,569	-587
32	일반회계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9,058	22,599	13,541
33	일반회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4,999	20,733	-4,266
34	일반회계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10,530	26,152	15,622
35	일반회계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7,208	7,671	463
36	일반회계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5,510	15,003	-507
37	일반회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2,832	2,832	0
38	일반회계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11,605	11,843	238
종료	일반회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929	0	-929
39	일반회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852	1,245	393
40	일반회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424	436	12
41	일반회계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	3,616	3,488	-128
42	일반회계	정보공개활성화(정보화)	2,425	2,391	-34
43	일반회계	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3,568	3,592	24
44	일반회계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173,334	158,400	-14,934
45	일반회계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471	543	-928
46	일반회계	전자정부분야국제교류협력(ODA,정보화)	1,375	1,382	7
47	일반회계	전자정부대외협력활동강화(정보화)	832	702	-130
48	일반회계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정보화)	2,886	2,886	0
종료	일반회계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2,358	0	-2,358
49	일반회계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정보화)	15,008	10,478	-4,530
50	일반회계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00	98	-2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51	일반회계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69	69	0
52	일반회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8,610	6,992	-1,618
종료	일반회계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	258	0	-258
53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1,614	4,373	2,759
54	일반회계	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	8,477	7,143	-1,334
종료	일반회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8,684	0	-8,684
55	일반회계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16,642	30,318	13,676
종료	일반회계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	5,075	0	-5,075
56	일반회계	온라인 청원 시스템(정보화)	584	569	-15
57	일반회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5,392	7,371	1,979
58	일반회계	스마트정부청사관리체계구축(정보화)	380	190	-190
59	일반회계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0	20,608	20,608
60	일반회계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5,075	12,369	7,294

주) 세부사업명에 “(정보화)”가 포함된 사업 기준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 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 예산안

□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4]상 ① ‘**법정지출**’(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재정지출) 및 ② ‘**이자지출**’을 말함. 참고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재량지출**’이라고 칭함.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제3항[5] 및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의무지출을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 ② 지방이전재원, ③ 기타 의무지출(①~③이 ‘법정지출’) 및 ④ 이자지출로 세분하고 있음.

□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에서 의무지출은 388조원으로 2025년도 364.8조원 대비 23.2조원(6.4%) 증가하였고,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도 51.9% → 53.3%로 증가하였음.

의무지출 유형별로 2026년도 예산안의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

4)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196.5조원으로 전년 대비 13.4조원(7.3%) 증가하였고, 의무지출 중 비중도 50.2% → 50.6%로 확대되었음. ② 지방이전재원은 144.9조억원으로 전년 대비 4.5조원(3.2%) 증가하였으나, 의무지출 중 비중도 38.5% → 37.3%로 축소되었음. ③ 기타 의무지출은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1.5조원(13.0%) 증가였으며, 의무지출 중 비중도 3.2% → 3.4%로 증가되었음. ④ 이자지출은 33.6조원으로 전년 대비 3.8조원(12.8%) 증가하였으며, 의무지출 중 비중도 8.2% → 8.7%로 확대되었음.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의무지출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규모(c=b-a)	비율(c/a)
총지출(A)	703.3	728.0	24.7	3.5
의무지출(B)	364.8	388.0	23.2	6.4
(총지출 대비(B/A))	(51.9)	(53.3)	(1.4)	2.7
법정지출	364.8	388.0	23.2	6.4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D)	183.1	196.5	13.4	7.3
(의무지출 대비(D/B))	(50.2)	(50.6)	(0.4)	0.8
② 지방이전재원(E)	140.4	144.9	4.5	3.2
(의무지출 대비(E/B))	(38.5)	(37.3)	(-1.2)	-3.1
③ 기타 의무지출(F)	11.5	13.0	1.5	13.0
(의무지출 대비(F/B))	(3.2)	(3.4)	(0.2)	6.3
④ 이자지출(G)	29.8	33.6	3.8	12.8
(의무지출 대비(G/B))	(8.2)	(8.7)	(0.5)	6.1
재량지출(C)	338.4	340.0	1.6	0.5
(총지출 대비(C/A))	(48.1)	(46.7)	(-1.4)	-2.9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중 ‘의무지출’은 총 10개 세부사업 69조 5,475억 4,800만원(정부 의무지출 합계의 17.9%)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인 69조 3,458억 5,500만원은 지방교부세 6개 세부사업이고, 나머지는 기타 의무지출 유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1131-300) 77억 9,500만원, 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2131-302) 3억 3,600만원,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2431-306) 1,930억 1,500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2432-302) 5억 4,700만원 등 4개 세부사업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의무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1]	2026 예산안(b)	증 감	
			규모(c=b-a)	비율(c/a)
행정안전부 의무지출 합계 (정부 의무지출 대비 비중)	67,292,063 (18.4)	69,547,548 (17.9)	2,255,485	3.4
지방이전재원 (정부 의무지출 대비 비중)	67,038,505 (18.4)	69,345,855 (17.9)	2,307,350	3.4
보통교부세(1631-300)	60,401,769	61,703,228	1,301,459	2.2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658,551	763,307	104,756	15.9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164,638	190,826	26,188	15.9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823,189	954,133	130,944	15.9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985,649	1,036,153	50,504	5.1
부동산교부세(1633-300)	4,004,709	4,698,208	693,499	17.3
기타 의무지출 (정부 의무지출 대비 비중)	253,558 (0.07)	201,693 (0.05)	-51,865	-20.5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1131-300)	10,575	7,795	-2,780	-26.3
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2131-302)	323	336	13	4.0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2431-306)	241,877	193,015	-48,862	-20.2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2432-302)	783	547	-236	-30.1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2,554억 8,500만원(3.4%)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예산안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69조 3,458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073억 5,000만원(3.4%) 증가함.

[2026년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규모(c=b-a)	비율(c/a)
보통교부세(1631-300)	60,401,769	61,703,228	1,301,459	2.2
특별교부세	1,646,378	1,908,266	261,888	15.9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658,551	763,307	104,756	15.9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164,638	190,826	26,188	15.9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823,189	954,133	130,944	15.9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985,649	1,036,153	50,504	5.1
부동산교부세(1633-300)	4,004,709	4,698,208	693,499	17.3
합 계	67,038,505	69,345,855	2,307,350	3.4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61조 7,032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14억 5,900만원(2.2%)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를 재원[6]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도 함께 증가한 것임.

6) 보통교부세의 재원: 내국세 총액(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 총액 45%,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은 제외. 이하 동일)의 19.24% 중 97%

한편, 특별교부세인 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 7,633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7억 5,600만원(15.9%) 증가,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1,908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8,800만원(15.9%) 증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9,541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9억 4,400만원(15.9%)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내국세를 재원[7]으로 하는 특별교부세가 함께 증가한 것에 기인함.[8]

다음 소방안전교부세는 1조 361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5억 400만원(5.1%) 증가하였는데,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전액을 재원[9]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임.[10]

마지막으로, 부동산교부세는 4조 6,982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34억 9,900만원(17.3%)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전액을 재원[11]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임.[12]

---

7) 특별교부세의 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

8) 2026년 지역현안·국가지방협력·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예산안에서 차감한 2024년 정산분은 각각 △285억 5,400만원, △71억 3,900만원, △356억 9,300만원임

9)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45%

10) 소방안전교부세의 2024년 정산분은 △1,099억 3,900만원임

11) 부동산교부세의 재원: 종합부동산세 전액

12) 부동산교부세의 2024년 정산분은 +747억 900만원임

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란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13]이며, 실무적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14]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의미함.[15]

---

13)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9.

14)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5)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사업명 마지막에 “(R&D)”라는 문구를 붙임(ex. 0000(R&D)).

□ 2026년도 행정안전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은 총 19개 세부사업 1,14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19개)			142,040	114,160	-27,880
일반회계(18개)			136,440	105,760	-30,68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개)			5,600	8,400	2,800
1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463	462	-1
2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R&D)	73	70	-3
3	일반회계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6,043	5,439	-604
4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14,411	15,278	867
5	일반회계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400	400	0
6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인건비(R&D)	9,272	9,921	649
7	일반회계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11,867	18,925	7,058
종료	일반회계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3,180	0	-3,180
종료	일반회계	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R&D)	3,058	0	-3,058
종료	일반회계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3,870	0	-3,870
8	일반회계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2,110	1,500	-610
9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482	543	61
종료	일반회계	기후변화 대응 AI 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기술 개발(R&D)	520	0	-520
종료	일반회계	재난 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R&D)	1,630	0	-1,630
10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지원(R&D)	9,570	7465	-2,105
종료	일반회계	지진위험 분석 및 관리기술 개발(R&D)	8,100	0	-8,100
종료	일반회계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R&D)	5,100	0	-5,100
종료	일반회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2단계)(R&D)	6,080	0	-6,080
11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R&D)	6,500	7,000	500
12	일반회계	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기술개발(R&D)	2,000	2,600	600
종료	일반회계	도시침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저감 실용화 기술개발(R&D)	2,650	0	-2,650
종료	일반회계	AI기반차세대안전신고및위험징후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1,080	0	-1,080
종료	일반회계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개발(R&D)	1,976	0	-1,976
13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기획평가관리(R&D)	1,270	1,791	521
14	일반회계	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위험성분석기술개발(R&D)	1,500	2,600	1,10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15	일반회계	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위험지도및설계기준고도화(R&D)	1,491	1,500	9
16	일반회계	재난안전중점기술로드맵연계형기술개발(R&D)	0	1,500	1,500
17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우수기술개발지원(R&D)	0	2,000	2,000
18	일반회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	31,744	26,766	-4,978
1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2단계)(R&D)	5,600	8,400	2,800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Ⅱ. 검토의견

Ⅱ-1. 총괄 분석

【총 괄】

1. 지방소멸대응 예산 관리

○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예산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획정하고, 해당 사업들을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인지예산 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소멸”은 일본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16]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제시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대 부터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이 본격화되었음.

2020년 12월 8일 공포(2021년 6월 9일 시행)된 「舊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년 10월 총 89개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16)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2015.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음.

한편, 2021년 12월 7일 공포(2022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22회계연도부터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조합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2022년 6월 10일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공포(2023년 1월 1일 시행)되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특례를 구체화하였음.

□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예산체계는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명확하게 획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사업[17] 및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013관) 사업 등을 지방소멸대응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보면, 2026년 예산안에는 19개 부처에 총 22조 6,30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1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교부금(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 등 5개 세목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명	소관부처	예산안
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고용노동부	240,986
2		국가보훈부	2,453
3		산림청	881,655
4		농촌진흥청	128,804
5		기후에너지환경부	4,418,741
6		경찰청	5,146
7		국가유산청	43,619
8		문화체육관광부	488,467
9		보건복지부	4,462,011
10		성평등가족부	129,825
11		교육부	233,255
12		농림축산식품부	1,849,634
13		산업통상부	1,410,285
14		국토교통부	2,117,175
15		해양수산부	810,196
16		식품의약품안전처	55,223
17		행정안전부	3,700,204
18		중소벤처기업부	466,747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6,154
		합 계	**22,630,580**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세목인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교부금(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 등 5개 세목 예산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는 28개 부처에 77조 6,485억 5,1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330-02)은 2개 부처에 144조 9,075억 1,800만원, 자치단

체자본보조(330-03)는 24개 부처에 9조 5,085억 6,2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는 2개 부처에 1,324억 7,500만원,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는 1개 세부사업(기획재정부 지방채 인수(융자))에 100억원 등 총 232조 2,989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세목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목	구분	회계명	부처명	예산안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일반회계	일반회계	경찰청	2,700
			고용노동부	103,849
			교육부	197,814
			국가보훈부	1,789
			국가유산청	30,74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500
			국토교통부	3,403,331
			농림축산식품부	21,940
			농촌진흥청	59,550
			대법원	9,237
			문화체육관광부	24,428
			법무부	133
			보건복지부	55,562,988
			산림청	142,649
			산업통상부	50
			성평등가족부	621,395
			소방청	26,624
			식품의약품안전처	5,103
			외교부	6,917
			재외동포청	2,122
			질병관리청	10,303
			통일부	11,083
			해양수산부	16,366
			행정안전부	31,149
	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2,135,335
		영유아특별회계	교육부	5,886,75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4,158

(단위: 백만원)

세목	구분	회계명	부처명	예산안
		교통시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952,914
		환경개선특별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	71,10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383,78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5,125
		양곡관리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1,1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진흥청	4,6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8,88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청	175,68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업통상부	3,46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328,07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14,000
	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135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	34,611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100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36,890
		기후대응기금	기획재정부	25,482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400,233
		한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265,95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28,71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108,014
		금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62,368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림축산식품부	2,975,846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83,37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8,810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4,0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51,244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42,120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88,600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300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9,63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40,037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1,290,842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216,122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부	153,228
		청소년육성기금	성평등가족부	108,324
		양성평등기금	성평등가족부	790,829

(단위: 백만원)

세목	구분	회계명	부처명	예산안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900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22,966
	합 계			77,648,551
자치단체 교부금 (330-02)	일반 회계	일반회계	교육부	72,252,708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69,345,855
	특별 회계	영유아특별회계	교육부	3,308,955
	합 계			144,907,518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일반 회계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2,040
			국가보훈부	6,255
			산림청	442,832
			농촌진흥청	19,712
			기후에너지환경부	530,701
			국가유산청	598,839
			방위사업청	3,711
			문화체육관광부	111,458
			보건복지부	62,210
			산업통상부	7,958
			국토교통부	8,160
			해양수산부	29,736
			식품의약품안전처	1,660
			새만금개발청	3,600
			행정안전부	1,035,543
			소방청	5,803
			질병관리청	17,885
	특별 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청	43,66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진흥청	2,139
		환경개선특별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	932,37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	2,43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	1,809,66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11,98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418,29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16,83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1,38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3,000
		교통시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1,047,544
		교통시설특별회계	해양수산부	7,296

(단위: 백만원)

세목	구분	회계명	부처명	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51,509
	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185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110
		한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88,68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19,46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59,084
		금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27,923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	25,651
		기후대응기금	기획재정부	188,280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29,742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30,785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1,115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8,620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46,464
		청소년육성기금	성평등가족부	450
		양성평등기금	성평등가족부	3,261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38,05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18,40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64,027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1,259,958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13,174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34,8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4,000
	합 계			**9,508,562**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330-04)	일반 회계	일반회계	국방부	128,507
	특별 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5,768
	합 계			**134,27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450-05)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지방채인수 융자)	100,000
총 합 계				**232,298,906**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음,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013관) 예산으로는 2026년에 908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013관) 예산안]

(단위: 백만원)

부문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지방행정 재정지원 (013관)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16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3,123
				한국섬진흥원 지원	4,463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37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98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927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993
				지역금융활성화	114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170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388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7,67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5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8,34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375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5,350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875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042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5,051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539
				지방공기업경영평가	3,404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69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145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	5,109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378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838

18) 전술한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교부금(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 등 5개 세목 예산과 중복 금액 차감.

(단위: 백만원)

부문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499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369
				새마을운동지원	713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907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531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4,729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8,18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6,115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3,297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1,818
합 계					90,836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지방소멸대응 예산의 구체적인 선정 및 성과관리 필요

□ 현행 지방소멸대응 관련 정부기관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19]가 있음.[20]

동 위원회는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들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21] 특히 지역에 투자되는 국가재정과 관련하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22]

---

19) 기존의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2023년 7월 10일 출범하였음

2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에 투자되는 재정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만을 하고, 각 사업이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의 측면에서 어떠한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평가·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또한,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과 관련있는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026년 예산안: 22조 6,305억 8,000만원) 뿐만 아니라, 330목과 450목에서 지방에 교부하는 예산(2026년 예산안: 232조 2,989억 6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예산(2026년 예산안: 908억 3,600만원)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시 의견제시만으로는 전체 지방소멸대응

---

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한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및 지역균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사업의 범위를 획정하고, 이러한 사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평가·환류하는 **‘(가칭)지방소멸대응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의 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있는데, 각각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과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예산제도임.

[성인지 예산제도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구분	성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의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근거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재정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 「국가재정법」
2026년도 예산안 규모	265개 사업, 14조 5,982억원	347개 사업, 11조 9,560억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각 사업별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예상량 및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감축효과 및 감축효과 분석 사례]

□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단위: tCO_2eq/년)

내역사업명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40 (누적)	'50 (누적)
(1)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3,102	3,102
합계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3,102	3,102

□ 내역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정량) 분석

내역사업명	정량/정성/R&D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1)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정량	ㅇ 사업내용 - 광물탄산화 기술을 적용한 콘크리트 제품 상용화 성공사례 확보 ㅇ 산정방법 - 국외기술개발 수준 :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배합 1m^3당 CO_2 0.354kg 고정화 - 기 확보된 국내 개발기술의 상용화 성공사례 확보 목표(10건) - 활용량 : 레미콘 제품 생산 시 활용량 : 282 ton = 충북지역 레미콘 생산량 5,697,306m^3 x 기술개발수준 0.354kg/m^3 x 기업 참여율 14% ㅇ 산출근거 - 충북지역 레미콘 생산량 : 5,697,306m^3 - 기업참여율 : 14% · 충북지역 레미콘 70사 중 10개 기업 < 전국 레미콘 관련 기업현황 > (단위 : 개/천m^3) 구분 | 서울경기 | 강원 | 충북 | 대전충남 | 전북 | 광주전남 | 경북 | 대구 | 경남 | 부산 | 울산 | 제주 | 합계 기업수 | 142 | 139 | 70 | 109 | 72 | 128 | 145 | 25 | 105 | 28 | 14 | 25 | 963 출하량 | 46,894 | 5,820 | 5,697 | 13,290 | 4,917 | 8,335 | 8,221 | 3,333 | 7,463 | 5,718 | 3,300 | 1,450 | 114,438 * (출처: 레미콘공업협동협회 통계자료 2024년) - 기술개발 수준: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배합 1m^3당 CO_2 약 0.354kg 고정화 *출처 : 해외기술사례(카본큐어) (https://www.carboncure.com/blog/concrete-corner/total-carbon-costs/?utm_source=chatgpt.com)

□ **성과목표**

(단위: 사업별 자체기준)

내역사업명	이행지표	'24년		'25년		'26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1)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시험·분석·평가 장비 구축	3	3	21	21	20

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의 사례임
※ 자료: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이러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소멸 대응 분야도 각 사업별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 관련 요소(인구, 일자리, 생활인프라, 교육기관 등)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Ⅱ-2. 부서별·사업별 분석

【디지털정부혁신실】

1.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2041-502)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개발원의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에 대해 재난 및 사이버공격 등 장래 위험에 대응하여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사업은 국가위임사무 및 자체 사업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운영·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통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등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39억 100만원 대비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3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3,910	3,901	3,511	△390	△10

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국가핵심기반으로 미지정하여 재난안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을 지원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주체는 행정안전부 및 광역시·도임.

개발원의 2025년도 예산은 총 3,198억원으로, 수탁사업 수입 2,647억원(국가 551억원, 국가·지방자치단체 1,381억원, 지방자치단체 742억원), 지방자치단체분담금 34억원, 국고보조금 39억원, 기타 451억원임.[23)]

□ 주요 업무에는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22개 지방행정(자치행정, 보건위생 등)을 지원하는 시도

2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현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5.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중앙·시도·시군구 간 정보연계를 지원하는 시군구(새올) 행정정보시스템 지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세 납부(Wetax),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지자체 전산장비 유지관리, 행정표준코드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인증, 복합인증 시스템, 사이버침해 대응지원센터 운영,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지원, 지역정보인프라 서버·통신장비 등 2,352대의 전산장비 관리 등임.

□ 이처럼 개발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 등 지방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어 재해 발생 시 그 피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업무영역에 미칠 수 있게 된다는 됨을 감안할 때,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부합한 시설로서 국가핵심기반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아 「재난안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핵심기반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고(「재난안전법」 제26조제1항[2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는 것임(「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특히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25]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개발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재난안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제나목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따라 한국지역개발원의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에 대해 재난 및 사이버공격 등 장래 위험에 대응·대비하여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 및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2. 정보통신	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한다)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2046-502)

○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은 국민 수요조사를 토대로 대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개방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제·가공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등 사업의 목적, 개방과제의 선정 절차 등에서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낮은 데이터 활용률 및 지자체 참여율 등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두 사업의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개 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사업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처리, 사무국 운영 등 민·관 협의체 운영 추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융합·분석, 공동활용 등의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설계 추진,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창업·성장 패키지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416억 3,400만원 대비 9억 7,200만원이 감액된 40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44,921 [41,625]	41,634	40,662	△972	△2.3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26,410 [23,695]	26,410	30,506	4,096	15.5

□ 내역사업인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는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민·관 협업 기반 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전국 통합(지자체) 데이터 개방 확대,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2026년도 신규 편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264억 1,000만원 대비 40억 9,600만원이 증액된 305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과 통합·추진할 필요

□ 내역사업인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의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국민수요기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신산업분야 핵심 데이터 발굴 개방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것으

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276억 3,200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28억 7,400만원)하는 사업들로 구성됨.

□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출연사업은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97억 4,400만원,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40억원,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85억 6,800만원,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53억 1,000만원이고,

위탁사업은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 28억 7,400만원임.

[2026년도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피보조·피출연기관명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7,632	①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2025) 9,744백 → (2026요구) 9,744백만원, 전년동 ②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 (2025) 0백 → (2026요구) 4,010백만원(신규) ③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 (2025) 8,568백 → (2026요구) 8,568백만원, 전년동 **④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2025) 5,310백 → **(2026요구) 5,310백만원, 전년동**
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874	**⑤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2025) 2,788백 → **(2026요구) 2,874백만원, +86백만원, ↑3.1%**

※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행정안전부, 2025.9.

□ 이 중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확대(이하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지자체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개방형태(상세 항목·

내용, 서비스 방식 등) 등이 다양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전국통합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업무협약을 통해 1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의 범위는 국민 선호도 조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방 후보과제의 발굴 및 개방과제 선정, 통합개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임.

사업추진은 국민수요 조사 등을 통해 개방 후보 과제[26]를 발굴하고, 과제 보유기관인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타당성 검토 및 개방과제를 선정 후 표준화(파일[27] 또는 오픈API[28])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됨.

□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의 내용은 대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개방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제·가공하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기 위한 비용, 즉 지자체가 보유하는 데이터 중 선호도가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개방하는 것으로, 주요 실적에는 2023년 공영자전거 통합데이터(서울·

26) **[개방 후보 과제(안) 도출 절차]**

① 민간의 데이터 수요 분석	② 데이터 특성 분석	③ 후보 데이터군 도출	④ 후보 데이터 개방 가능성 검토
민간 기업의 사업화 아이템 기준 데이터 수요 분석	민간의 수요가 있고, 사회문제 해결과 연관이 있는 지자체 보유 데이터 선별	전국 통합개방 데이터 후보군 도출	후보 데이터군과 연관성 있는 데이터, 제공주기,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

자료 : 행정안전부

27) 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임.

28)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임.

대전·세종), 2024년 공영자전거 대여현황(광역 4개, 기초 7개),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보(광역 5개, 기초 75개), 공공도서관 열람실 가용 좌석 확인서비스(광역 1개, 기초 20개), 공영 물품보관함 대여 현황(광역 1개, 기초 11개) 등이 있음.

□ 다만, 전국통합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의 목적, 개방과제의 선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과의 통합·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29)]

□ 이와 관련해서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을 살펴보면, 출연사업 중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사업'(내내역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방·활용 시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임.

행정안전부는 2015년 이후 4차에 걸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30)]에 따라 217개 데이터를 개방하였고, 2025년도는 제4차 국가중점

29)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2025.8., p.124

30)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현황]**

연번	연도	개방(후보)데이터
1차	'15~'16	▪ 건축물정보, 부동산실거래가정보, 상권정보 등 33개 데이터
2차	'17~'19	▪ 공간융합정보, 의료영상정보, 다국어음성정보 등 63개 데이터
3차	'20~'22	▪ 자율주행통합관제, 119구급정보, 산재심사결정문 등 72개 데이터
4차	'23~'25	▪ 여권진위확인 서비스,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 30개 데이터('23) ▪ 법령유권해석, 헌법재판소 판례,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19개 데이터('24) ▪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다부처 협력과제, 리걸테크 데이터('25 예정)

자료 : 행정안전부

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15개 분야 데이터의 개방을 추진 중임.

□ 두 사업은 모두 수요자인 국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개방과제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같고,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개방과제를 선발하고 데이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방식도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전국통합데이터 및 국가중점데이터 사업 비교]

구분	전국통합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목적	공공데이터 활용성 증대 및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개방 관리로 민간서비스 창출** 도모	**개방·활용 시**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데이터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품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제공 절차	수요조사(국민, 기업 등) ⬇ 의견수렴(기업, 전문가 대상) ⬇ **지자체 수요조사 및 개방과제 선정** ⬇ 사업추진(**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 전국통합데이터 이용(국민, 기업 등)	수요조사(국민, 기업 등) ⬇ **타당성 심의위원회 검토(전문위원)** ⬇ 후보과제 확정 ⬇ 사업추진(NIA) ⬇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 국가중점데이터 이용(국민, 기업 등)
실적	5건(2023년~2024년)	217건(2015년~2024년)
제공 형태	파일(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또는 오픈API** *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 최근 국가중점데이터의 오픈API 제공 확대 노력	

※ 자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행정안전위원회, p.145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가 두 사업의 예산과목을 사업출연금(350-02목) 및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으로 달리 편성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별도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미흡해 보임.

□ 더구나 2025년 10월말 기준 전국통합데이터의 민간 앱 활용현황을 보면,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활용 4종,[31] 공공 물품보관한 실시간 정보[32] 활용 1종을 제외하고는 민간에서 전국통합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는 없고, 지자체 참여율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33]

[2025년 10월 기준 전국통합데이터 참여 지자체 현황]

개방데이터	연계 완료 지자체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 총 11개(광역 4, 기초 7개) - (광역) 서울, 세종, 대전, 광주 - (기초) 부산 기장군,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여수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경남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 총 185개(광역 11개, 기초 174개)** **- (광역) 서울,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초) 11개 시·도 관할 전체 시·군·구**

31) NHN 도플소프트에서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앱(3종)을 네이앤 캠퍼니에서 네이버스 앱(1종)을 통해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 대여 가능 자전거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32) EveryLocker(모두의 보관함) 앱(1종)을 통해 이용 가능한 물품보관함의 위치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함.

33)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앱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개방데이터	연계 완료 지자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 총 26개(광역 1개, 기초 25개) - 울산(광역), 전북 완주군,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경기 광주시,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 인천 서구, 경기 안산시, 충북 음성군, 경기 군포시, 전북 익산시, 경기 부천시,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경기 안양시, 인천 강화군, 경기 남양주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기장군,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 총 34개(광역 1개, 기초 33개) - 서울(광역)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랑구, 경기 구리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시, 경기 수원시, 강원 양양군

※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국민 수요조사를 토대로 대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개방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제·가공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등 사업의 목적, 개방과제의 선정 절차 등에서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낮은 데이터 활용률 및 지자체 참여율 등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두 사업의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시도·새올시스템은 20년 전 구축 당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해킹위협의 심각성 및 시스템 중단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ISMP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사업비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 소요 항목인 소프트웨어개발비,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지능정보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9억 2,900만원 순감되었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929	-	△929	순감

나. 시도·새올시스템 노후화 해소 및 기능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예산안 편성 검토 필요

□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의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시·도에서 사용하는 '시·도 행정시스템'과 시·군·구에서 사용하는 '새올 행정시스템'이 있음(이하 "시도·새올시스템"). 시도·새올시스템을 통해 732개 국가위임사무와 227개 지방자치사무, 921종 민원처리(신청, 발급, 인·허가 등)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245개 시·도/시·군·구[34]와 58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와도 연계됨.

□ 2025년 현재 시·도 행정시스템(2004년 구축)과 새올 행정시스템(2006년 구축)은 구축 당시 환경과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안성 및 지자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이 중 보안성 측면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가 어려워 해킹위험[35]에 노출돼 있고 하드웨어 노후화 및 부품 단종으로 장애 시 복구가 지연되는 등 우려가 있는바, 2025년 말 기준 시도·새올시스템 장비의 노후화율은 평균 95.2%에 달함.

---

34)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245개 개별 시스템으로 존재함.

35) 2025년도 국정감사 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안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한 해킹시도 건수는 2022년 4,648건, 2023년 4,896건, 2024년 7,237건으로 급증하였고, 2025년 8월 기준 5,182건(2024년도 같은 기간보다 7.4% 많음)으로 전년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시도·새올시스템 하드웨어 장비 노후화 현황]

(단위: 식, %)

구분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치	백업장치	기타	합계
	Unix	x86					
장비현황	1,225	544	1,453	683	245	3	4,153
노후장비	1,180	513	1415	642	203	-	3,953
(노후화율)	(96.3)	(94.3)	(97.4)	(94.0)	(82.9)	-	(95.2)

주) 노후장비 및 노후화율은 2025년 말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 시도·새올시스템 장비의 노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전부터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36] 2023년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37] 시 서비스 중단 영향을 받은 시도·새올시스템의 노후화 문제도 동시에 불거진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과제라 할 수 있겠음.

□ 시도·새올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245개 시·도/시·군·구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을 17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은 각각 34% 및 66%임.

36)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상태…민원 처리 중단", MBC, 2015.3.9.,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새올' 2시간 가량 마비…현재 정상 복구 완료", 아주경제, 2015.3.9., "지자체 행정망 '새올' 시스템장애", 경인일보, 2015.3.9. 등

37) 해당 장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와 대전센터를 연결하는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라우터 내용 연한(9년) 경과에 따라 교체대상인 것으로 파악됨.

□ 이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25년 ISMP[38] 수립,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구축, 2032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2025년 8월 말 ISMP 수립결과 및 예비타당성 결과 간에 사업 적정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2026년도 4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됨에 따라 총사업비[39] 미확정을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본사업 단계인 구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40]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사업 기간	ISMP	2025년 실시	2025.8월말 완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025.9월~2026.4월
	구축 사업	2025~2027년	2026.6월~2029.5월
	운영·유지 관리 사업	구축 후 2032년까지	구축 후
총사업비		6,805억원	6,614억원
구축비		3,633억원(국비1,235억원)	3,326억원(국비1,380억원)
관리비		3,174억원	3,288억원
국비·지방비 비율		국비 34%, 지방비 66%	

※ 자료: 행정안전부

38)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39)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는 6,807억원이었으나, ISMP 수립 결과에서는 6,614억원으로 조정된바,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보임.

40)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미편성하였다고 설명함.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정보화 사업의 구축 예산은 원칙적으로 ISP 또는 ISMP 수립을 완료한 이후에 편성을 요구[41]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5년 8월 수립된 ISMP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예산안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계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201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었으나 예산 미편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유로 실제 본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 노후화(노후화율 95.2%) 및 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정책적 중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2015.7.~12.)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 ISP 추진
(2017.11.~2022.1. 34회)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계자 합동토론회, 지자체 설문조사, 중앙부처 설명회, 시도·새올 팀장 회의, 실무TF 회의 등을 통한 관계자 의견 수렴
(2018.9.~2019.3.)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ISMP 추진
(2021.3.~2021.9.)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BPR[42] 수립
(2022.4.)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4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5.5.
-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ISM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42) BPR: 업무과정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2024.8.)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최종 통과 확정 (2025.8.)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ISMP 수립 (2025.8~2026.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진행 중)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시도·새올시스템 노후화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간 3,416종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중앙연계시스템에 장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장애 발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등 48종 민원 발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모드 지원 서비스가 종료되는 2029년도부터는 동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는 2026년 4월경에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의 총사업비가 확정될 것이므로, 2026년 하반기부터는 본사업이 단계별로 착수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3)]

43) 당초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5년 ISMP 수립 후 10월부터는 우선적으로 1개 시·도 및 1개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1차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이후 2차 및 3차 사업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전체 17개 시·도 및 22개 행정업무로 확산한 후, 2028년부터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었으나, 2025년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2026년 2월까지 예정된 상황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본사업 예산이 미편성됨으로써 1년 6개월여 정도 지연이 불가피해 보임.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개발비,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위탁사업수행 인건비 및 조달수수료 등을 고려할 수 있음.[44)]

□ 따라서 시도·새올시스템은 구축된 지 20년 경과 후에도 구축 당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의 노후화로 보안상 해킹위협의 심각성 및 시스템 중단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시도·새올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축사업은 ISMP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의 지연 및 관련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화시스템 구축 시 공통 소요되는 경비인 소프트웨어 개발비, 인프라 구축(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예산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4) [2026년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예산안 반영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SW개발비	인프라		위탁사업수행 인건비	조달수수료	합계
	HW	상용SW			
3,089	494	5,046	256	48	8,933

자료: 행정안전부

4.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2039-508)

○ 내역사업인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은 동 내역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5대5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권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풀에서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공공 AI 사업지원센터’은 컨설팅 수요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받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도 있는 점, 출연금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운영 예산을 계상한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은 국민권익위 등 개별 부처에서 동 내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상 낭비가 발생하고 활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부처 간 사업의 협의·조정이 필요함.

가. 개 요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은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부처·지자체 공통업무를 AI 서비스로 공통 모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6억 800만원이 순증되었음.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	-	-	20,608	순증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	-	-	-	10,220	순증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	-	-	10,220	순증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	-	-	168	순증

나.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사업이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참여 유인 방안 마련 등

□ 내역사업인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은 지자체 공통적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조사, 공통 모델화하여 지역 간 AI 격차가 해소되도록 전국에 보급·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02억 2,000만원이 순증되었음.

□ 현재 지자체별로 주로 관내 인공 기업 지원, 민원인을 위한 챗봇,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지능형 CCTV 설치·영상 분석 등 AI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

[지방자치단체 AI 서비스 제공 사례]

구분	기관명	서비스(시스템)	주요 내용
1	각 지자체	지능형 관제 시스템	지능형 CCTV 영상을 AI를 통해 분석, 실종자 검색, 각종 사건 사고 대응 등
2	서울시 구로구	AI 챗봇, 민원 응대	유선 전화, 홈페이지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정책 안내, 민원 답변 등 제공
3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대응	활동 데이터,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AI가 고독사 발생을 예측하고 즉시 대응
4	경기도	혁신 클러스터 조성	도내 AI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5	경기도 안성시	노인통합돌봄	독거 노인에게 AI 스피커를 이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6	강원도 춘천시	AI케이콜	독거 재가 어르신에게 AI를 활용한 안부전화 및 돌봄 서비스 제공
7	충청남도	AI 실증랩 운영	도내 AI 솔루션 공급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자료 : 행정안전부

□ 이에 동 내역사업은 지자체 공통적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통 모델화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간 AI 격차가 해소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2026년도 동 내역사업 예산은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자정부법」 제71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을 통해 추진되며, 사업 지원율은 국비 50%임.

□ 동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참여 유인 방안 마련,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비율(50%)에 관한 법령상 근거 불명확, 지자체 실제 수요에 기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점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행정안전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매칭하여 동 내역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인데 이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하고 참여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AI 이해도가 있는 전문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어 보임.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제2항[45]은 행정기관 등이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내역사업의 국비 보조의 지원은 동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보조율이 예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의 근거 법령 및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내역사업은 보조금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예산의 범위 내

45)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서 분담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이같이 지자체에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는 보임.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모로 선정된 지체가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적시에 확보하여 중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이와 함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AI 관련 전문인력 및 데이터센터 등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가 관건임을 감안할 때, 동 내역사업의 참여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양호하거나 AI 전문인력[46]을 확보한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 편중될 가능성도 있음.[47]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당초 사업의 취지인 지역 간 AI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집행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방식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하되, 그 비율을 모든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풀에서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으로써 참여 지자체가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46) “AI 열풍 속 AI인력 없어 속타는 지방”, 서울신문, 2025.7.8., .“전국 지자체 데이터직 공무원 19명 불과”, 법률저널, 2025.10.20., “AI 행정 외치지만…광주 外 전국 광역단체 데이터직 '0명'”, 머니투데이, 2025.10.19. 등 언론보도 참조

47) 2025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AI 관련 조사결과, 지자체 AI 사업의 76%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동 내역사업은 과제별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과제 확정부터 AI 서비스 제공 단계까지 회계연도 내 완료돼야 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방비 확보 등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연도 말까지 동 내역사업의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사업 과제(3개) 확정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임.

다만, 동 내역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으로 짧아 지자체가 지방비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신규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절차를 통한 지자체 선정, 지방비 확보 등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국비가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동 내역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공통 모델화에 효과적이고 예산 절감도 도모할 수 있는바,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동 내역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예산안 규모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을 통해 AI 활용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된 서비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을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면서도 사업의 실수혜자인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예산액을 산출하였는바,[48]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실제 수요에 기초해 예산액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내역사업은 내년도 사업 시행에 앞서 의견수렴, 과제 선정 등 사전 준비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거쳐 실효성 검증 및 보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8)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지자체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2025.9월에 실시한 것으로 파악됨.

다.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출연금 편성 법적 근거 마련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내역사업인 ‘공공 AI 사업지원센터’는 AI 관련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억 6,800만원이 계상됨.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3명과 연구원 1명의 12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한 것임.

[2026년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168	컨설팅 인건비 : (책임연구원 3,705천원 3명 + 연구원 2,841천원 1명) x 12개월

□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사유에 대하여 부처·지자체가 AI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출연금 비목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 센터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AI 관련 컨설팅이 충실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AI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자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수요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음.

□ 둘째, 동 내역사업은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71조 제1항[49]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국가재정법」[50]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 편성의 구체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사업의 출연금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49)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3의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관한 업무
3의4.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전자정부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0)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 피출연기관에 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인바, 사업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비용에 편성되는 것으로,[51] 사업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집행에서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대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셋째, 동 내역사업은 부처· 지자체에 AI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운영 예산을 계상하고 단기간 채용방식은 컨설팅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52]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만 결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수립하고 있지 아니한바, 인력 운영 규모는 센터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12개월 단위의 인력 채용은 해당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계속되는 신규채용으로 컨설팅의 품질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소모를 가져올 수 있음.

5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p.264

52)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공통요구자료(Ⅱ-1)」, 행정안전부, p.801

라.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의 개별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방지 필요

□ 내역사업인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은 각 부처가 중복투자 없이 공통업무에 신속하게 AI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02억 2,000만원이 순증되었음.

□ 행정안전부의 부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3개 기관에서 61개 과제를 제출하였는데, 부처별 특화 업무에 해당하는 과제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민원 응대 분야 과제 15개, 부내 업무자료 검색·요약 등 업무포털 구축 6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4개 등임.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연번	분야	기관명	주요 내용
1	특화 업무	국조실	(국민) 조세 심판을 위한 신청서 작성 지원 (공무원) 자료 요약, 사례 제공, 조사 보고서 지원
2		경찰청	수사 사례 제공 및 핵심 요약, 보고서 작성 지원 등
3		보훈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진료 기록 분석 및 요약
4	민원	기재부	분산된 보조금 정보를 통합하여 안내(챗봇 등)
5		질병청	분산된 질병 정보를 통합하여 안내(AI 민원 안내)
6		관세청	다양한 개인 통관 물품에 대한 종합 상담

연번	분야	기관명	주요 내용
7	안내	유산청	내외국인, 학생 등 수요자 맞춤형 국가유산 해설
8		문체부	AI가 자연어 기반으로 도서에 대한 정보 안내
9	업무포털	법무부	부내 업무자료 검색, 요약, 초안 작성 등
10		환경부	부내 업무자료 검색, 요약, 초안 작성 등
11	데이터 구축	통계청	AI가 학습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 지원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부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달용 제안요청서·지출결의서 작성, 증빙자료 검증, 어르신 돌봄 등 공통업무용·민원용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함.

□ 그런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처에서는 개별적으로 범부처민원용·업무용 분야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53]하였거나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파악됨.

예를 들어, 민원용 분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 AI 기반 범정부 통합콜센터 시스템을 구축 후 그 운영을 위해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2)' 사업에 74억 1,200만원, 돌봄 업무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복지·돌봄 혁신(2639-310)' 사업에

53)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ISP, '23년 범정부 AI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 1차 사업 완료 및 1개 기관 시범운영, '24년 범정부 AI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 2차 사업 완료 및 17개 기관에서 정식운영하고 있음.

58억 7,000만원, 법령 업무의 경우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 33억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이처럼 개별 부처에서 동 내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상 낭비가 발생하고 활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부처 간 사업의 협의·조정이 필요해 보임. 이에 더하여 향후 행정안전부는 개별 부처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파악하고 개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지방행정국】

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 국민통합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에 비해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제 회의 개최 횟수, 참석 인원, 수당·사례금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반영하여 참석 수당 및 사례금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통합위원회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 중 상당수는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수의계약 남용으로 인한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저하와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는 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추진 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의 기본 방향 및 국가전략 수립, 정책의 조정·평가·지원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54]에 따라 2022년 7월 공식 출범하였음.

54)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대국민 홍보, 국민통합 행사 등 관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 75억 1,300만원 대비 13억 9,800만원(18.6%) 감액된 **6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5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426	7,513	6,115	△1,398	△18.6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	4,672	5,137	3,739	△1,398	△27.2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	2,754	2,376	2,376	-	-

나. 위원회 활동실적을 반영한 회의참석수당 예산의 적정화 필요

□ 국민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56] 국민통합 관련 주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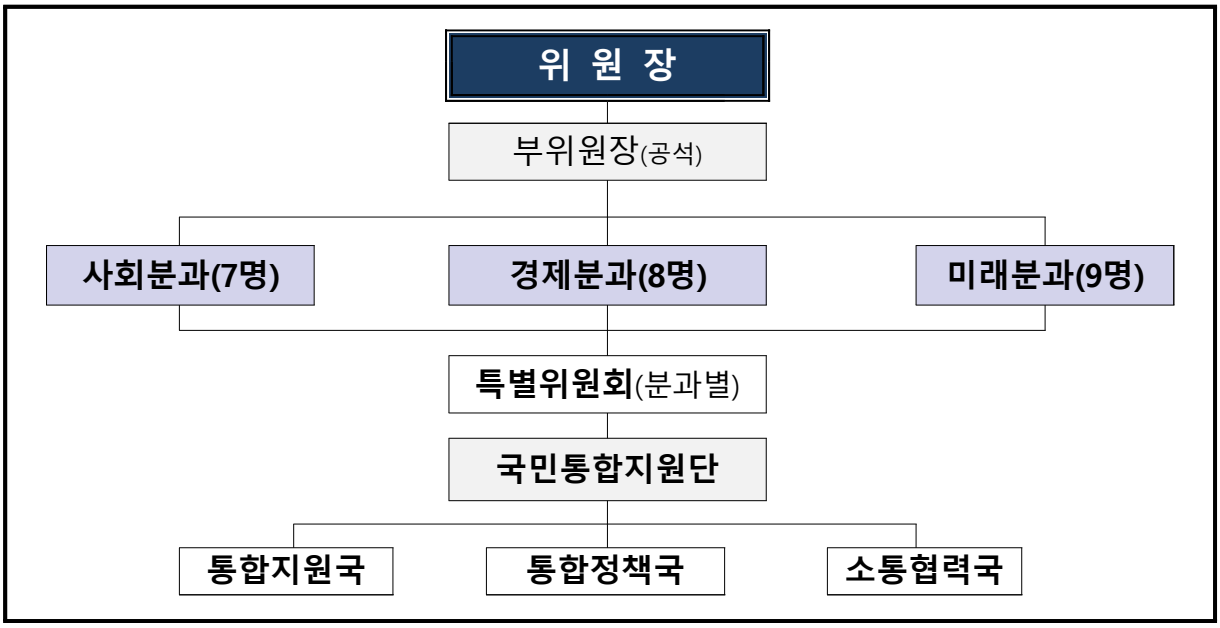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5) 감액된 예산은 전문임기제 인건비(1145-300-110-02)로,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통합위원회로 재배정될 예정이며, 해당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어 **실질적인 예산 감액은 없음.**

56)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현안 논의 및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실무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민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국민통합위원회 조직도]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이후 2025년 9월까지 전체회의 18회, 분과위원회 278회, 특별위원회 361회, 지역협의회 73회 등 **총 1,858회의 회의를 개최**하며,[57]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57) 국민통합위원회 회의 유형
- 전체회의: 국민통합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사회적 갈등이나 주요 문제 중 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선별하고, 이를 논의할 방향성을 제시함.
- 분과위원회: 기획, 정치, 사회, 경제, 미래 등 국민통합이 필요한 핵심 분야로 세분화되어 각 소관 영역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국민통합 전략을 마련함.
- 특별위원회: 구체적인 갈등 현안에 대한 조사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함.
- 지역협의회: 분과위 및 특위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국민통합위원회에 전달하여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

(※ 출처: 국민통합위원회 백서, 2025. 4.)

정책 수립 활동을 지속해왔음.

□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는 1회당 20만원 이내의 회의참석수당**과, 사전 자료수집 등 **별도 용역에 대한 사례금이 지급**되며,[58] 2026년도 예산안에는 회의참석수당 11억 3,664만원, 안건검토사례금 5억 3,632만원, 총 16억 7,296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간(2023~2025년)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3년 65.0%, 2024년 76.9%, 2025년 13.6%**(9월 기준)로,[59] 회의 실적에 비해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회의 개최실적 및 회의참석 수당·사례금 집행 현황]

연도	회의 구분	개최횟수(회)	참석인원(명)	평균 참석인원(명)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천원)
2023	전체회의	5	120	24.0	**49,350**
	운영회의	44	231	5.3	**88,650**
	분과회의	102	376	3.7	**253,998**
	특별위원회	**175**	**2,048**	**11.7**	**652,150**

58)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1-1. 일반수용비)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지급할 수 있다.

59) 연도별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집행 내역
- 2023년: 예산 26억 892만원 중 16억 9,467만원 집행
- 2024년: 예산 16억 7,296만원 중 12억 8,653만원 집행
- 2025년: 예산 16억 7,296만원 중 2억 2,819만원 집행(9월말 기준)

연도	회의 구분	개최횟수(회)	참석인원(명)	평균 참석인원(명)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천원)
	지역협의회	**34**	**377**	**11.1**	**160,278**
	청년포럼	47	529	11.3	41,380
	기타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401	1,423	3.8	448,868
	소계	**808**	**5,104**	**6.5**	**1,694,674**
2024	전체회의	6	148	24.7	**57,200**
	운영회의	57	351	6.2	**131,050**
	분과회의	99	696	7.0	**231,729**
	특별위원회	**129**	**1,737**	**13.5**	**478,779**
	지역협의회	**37**	**659**	**17.8**	**104,330**
	청년포럼	39	419	10.7	32,570
	기타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282	1,285	4.6	250,878
	소계	**649**	**5,295**	**8.2**	**1,286,536**
2025 (9월 기준)	전체회의	2	38	19.0	**11,650**
	운영회의	**11**	**57**	**5.1**	**24,150**
	분과회의	30	232	7.7	**84,842**
	특별위원회	**17**	**197**	**11.6**	**67,694**
	지역협의회	-	-	-	-
	청년포럼	4	103	25.8	4,910
	기타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94**	**375**	**3.9**	**34,950**
	소계	**158**	**1,002**	**6.3**	**228,196**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하여, 국민통합위원회는 **2024년 말의 정치적 상황 및 2025년 상반기 대통령 부재로 인한 위원회 활동 축소**가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위원회가 비교적 활발히 운영된 **2023년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기간과 2025년 하반기에도 집행률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한편, **참석수당·사례금 예산의 약 86.9%**를 차지하는 특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산출내역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16개 특위**가 각각 **연간 20회의 회의를 개최(총 320회/연), 회의당 20명**의 민간위원·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역협의회는 17개 협의회가 연간 4회씩** 회의를 개최(**총 68회/연**), **회의당 25명**의 민간위원·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각각 **60%의 보정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회의참석수당		안건검토사례금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전체회의	200천원×29명×4회×60%	13,920	직급별 단가×4회×60%	10,240
분과위원회	200천원×48명×12회×60%	69,120	직급별 단가×12회×60%	41,280
특별위원회	**200천원×320명×20회×60%**	**768,000**	**100천원×320명×20회×60%**	**384,000**
지역협의회	**200천원×420명×4회×60%**	**201,600**	**100천원×420명×4회×60%**	**100,800**
청년포럼	70천원×100명×20회×60%	84,000	-	-
계	-	1,136,640	-	536,320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운영 실적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연평균 152회**의 회의가 개최되어 회의당 **평균 12.5명**의 민간위원·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지역협의회는 연평균 35.5회**의 회의가 개최되어 회의당 **평균 14.6명**의 민간위원·전문가가 참석하는 데 그쳐, 60%의 보정률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산출의 전제와 실적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특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개최 현황(2023~2024년)]

회의 구분	연도	개최횟수(회)	참석인원(명)	평균 참석인원(명)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천원)
특별위원회	2023년	175	2,048	11.7	652,150
	2024년	129	1,737	13.5	478,779
	평균	**152**	**1,893**	**12.5**	565,465
지역협의회	2023년	34	377	11.1	160,278
	2024년	37	659	17.8	104,330
	평균	**35.5**	**518**	**14.6**	132,304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은 회의개최 횟수 및 참석 인원이 실제 운영 실적과 괴리가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예산 산출의 전제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이로 인해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사례금 예산이 **실제 수요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목적 외 집행 등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국민통합위원회는 국정과제인 '국민통합실질화'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는 민간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예산집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음.

□ 다만, 이와 같은 사업 목표와 계획이 실제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소요예산 산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 시 회의개최 실적, 실제 참석 인원, 수당·사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실적과 연동되는 합리적인 예산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경쟁입찰 원칙 준수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은 대통령 자문 기능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정책연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용역비(210-14) 19억 7,600만원과 정책연구비(260-02) 4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은 ‘위원회 및 정책 홍보’, ‘국민통합 행사’, ‘국민통합 기반 강화’, ‘국민통합 정책연구’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통합위원회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주요 내용	예산액	예산과목
위원회 및 정책 홍보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136	1145-300-210-14 (일반용역비)
	국민통합 홍보 기획 및 확산	360	
	국민통합 여론분석 및 홍보콘텐츠 제작	100	
	소계	**596**	
국민통합 행사	대통령 보고대회 개최	100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20	
	국민통합 대국민 소통행사 개최	100	
	국민통합 컨퍼런스	130	
	소계	**450**	
국민통합 기반 강화	국민통합기반 강화체계 구축·운영	120	
	국민통합 갈등해결 역량 강화	460	
	특별위원회 국민소통 행사 개최	80	
	특별위원회 해커톤 행사 개최	70	
	청년포럼 청년마당 운영	100	
	국민통합 실천 캠페인 추진	100	
	소계	**930**	
정책연구	대과제 (60백만원×1회)	60	1145-300-260-02 (정책연구비)
	중과제 (40백만원×4회)	160	
	소과제 (30백만원×6회)	180	
	소계	**400**	
계		**2,376**	-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 사업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9월말) 계약금액 **2천만원 초과 사업 75건 중 약 82.7%인 62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사유는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60] 31건, **긴급한 사유 18건, 특정인의 기술·자격 필요 6건**으로, 경쟁입찰 공고 후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은 7건에 불과하였음.

[2천만원 초과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2023~2025년)]

연도	계약건명	예산과목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조달청 입찰공고
2023	**2023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210-14**	**'23.02.07.**	**한국언론진흥재단**	**78,795**	**특정기술**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	210-14	'23.02.16.	㈜더블유컴퍼니	48,207	장애인기업	미실시
	근로자 안전 보장 제도의 적절성 평가	**260-02**	**'23.03.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0,000**	**특정기술**	**미실시**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식	210-14	'23.03.13.	에이엠피알	24,983	여성기업	미실시
	국내 이주배경인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60-02**	**'23.04.10.**	**㈜아이오엠아이민정책연구원**	**30,000**	**특정기술**	**미실시**
	정치진영갈등 해소 과제 운영 지원	**260-02**	**'23.04.25.**	**한림대 산학협력단**	**50,000**	**특정기술**	**미실시**
	국민통합 행사 및 실천캠페인 대행 용역	210-14	'23.05.04.	㈜케이아이미디어	365,000	유찰	실시
	청년의 로컬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260-02**	**'23.05.08.**	**(사)한국정치학회**	**25,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260-02**	**'23.05.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6,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민통합 10대 지표로 본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분석	**260-02**	**'23.05.11.**	**한신대 산학협력단**	**5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행사	**210-14**	**'23.05.15.**	**㈜블루컴**	**37,5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시도 지역협의회 운영효과 제고방안 수립	**260-02**	**'23.05.15.**	**(사)한국갈등협회**	**3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내외 국민통합 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260-02**	**'23.06.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이슈 연구	**260-02**	**'23.06.14.**	**(사)한국정치학회**	**5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설명 및 토론회	210-14	'23.06.20.	올어바웃플레이스	25,000	여성기업	미실시
	청년포럼 "청년마당" 운영 용역	210-14	'23.06.21.	㈜그리다360	40,000	여성기업	미실시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공론 행사	210-14	'23.07.10.	㈜엠앤엠리서치	49,00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기획 홍보영상 제작	210-14	'23.07.14.	컬쳐랩	49,50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210-14	'23.07.14.	㈜블루컴	43,703	여성기업	미실시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210-14	'23.08.03.	㈜비전메이커플러스	48,62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	210-14	'23.08.07.	㈜더블유컴퍼니	48,091	장애인기업	미실시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210-14	'23.09.08.	㈜비전메이커플러스	49,39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행사 용역	210-14	'23.10.24.	㈜리노위즈	54,950	여성기업	미실시
	4차 산업혁명 관련 갈등완화 및 국민통합 방안	**260-02**	**'23.10.31.**	**(사)한국정책학회**	**48,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민통합정책 평가방안 연구	**260-02**	**'23.11.01.**	**(사)한국정책학회**	**3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6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연도	계약건명	예산과목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조달청 입찰공고
	가족구조 변화와 청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260-02**	**'23.11.13.**	**㈜오픈도어**	**3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자살위기극복 특위 성과 홍보영상 제작	210-14	'23.11.14.	㈜인보이드	68,600	여성기업	미실시
	천만노인시대 대비 정책연구	**260-02**	**'23.11.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이주민 자치참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260-02**	**'23.11.22.**	**(재)이민정책연구원**	**55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성공희망 파도타기 영상 제작	210-14	'23.11.24.	㈜네오누리콤	25,300	여성기업	미실시
	2024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210-14**	**'23.12.22.**	**한국언론진흥재단**	**86,803**	**특정기술**	**미실시**
	소 계				**1,704,442**		
2024	2022-2023 백서 기획 용역	210-14	'24.01.31.	㈜온컬처인	47,200	여성기업	미실시
	북배경주민 정착지원 발전방안 연구	**260-02**	**'24.03.04.**	**통일연구원**	**35,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불법도박 대응 및 거버넌스 정책방안 연구	**260-02**	**'24.04.12.**	**(사)한국셉테드학회**	**3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 및 성과보고	210-14	'24.05.07.	㈜블루컴	46,101	여성기업	미실시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분석 연구	260-02	'24.07.16.	(사)한국행정학회	62,363	유찰	실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210-14	'24.08.13.	블랙올리브	31,23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3기 출범식	210-14	'24.09.09.	㈜블루컴	47,476	여성기업	미실시
	지역활력 제고 방안 연구	**260-02**	**'24.09.11.**	**원주대 산학협력단**	**45,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지자체 기본수당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60-02	'24.09.19.	(사)한국행정학회	34,545	유찰	실시
	지역협의회 연석회의 행사	210-14	'24.09.20.	㈜씨앤아이리서치	48,84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방안 연구	260-02	'24.09.27.	(사)한국사회통합학회	45,455	유찰	실시
	일자리 격차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260-02**	**'24.10.24.**	**연세대 산학협력단**	**48,048**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	210-14	'24.10.25.	㈜리노위즈	53,790	여성기업	미실시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돌봄체계 구축 연구	260-02	'24.11.19.	공주대 산학협력단	40,000	유찰	실시
	양성공감 인식개선을 위한 슬로건 제작	210-14	'24.11.22.	아이리스	33,00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정책과제 주요성과 홍보물 제작	210-14	'24.11.22.	㈜미르크리에이티브	45,000	여성기업	미실시
	양성공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210-14	'24.11.22.	디자인팜	49,500	여성기업	미실시
	2040 가족·노동역할 태도와 실태 연구	**260-02**	**'24.11.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5,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청년포럼 "청년마당" 활동영상 제작 및 홍보	210-14	'24.11.29.	디자인혼	33,000	여성기업	미실시
	도시 기후불평등 대응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260-02**	**'24.11.29.**	**서울대 산학협력단**	**49,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소 계				**869,548**		
2025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	210-14	'25.01.15.	㈜라이브온미	30,00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백서(제1기~제3기) 제작	210-14	'25.01.20.	㈜온컬처인	54,100	여성기업	미실시
	2025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210-14	'25.01.20.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94,700	유찰	실시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210-14	'25.01.23.	㈜에이플랜투모로우	51,200	여성기업	미실시
	향후의 국민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콘퍼런스	210-14	'25.01.24.	㈜인보이드	43,700	여성기업	미실시
	"소득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10-14	'25.02.26.	㈜라이브온미	29,928	여성기업	미실시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 정책토론회	210-14	'25.03.13.	㈜미코플랜	50,000	여성기업	미실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10-14	'25.03.17.	㈜라이브온미	54,840	여성기업	미실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10-14	'25.03.26.	㈜라이브온미	35,000	여성기업	미실시
	5대 사회갈등 관련 주요 이슈 및 데이터 분석 연구	**260-02**	**'25.09.10.**	**한국행정연구원**	**40,000**	**특정기술**	**미실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숙의 전략 연구	260-02	'25.09.18.	한양대 산학협력단	37,990	유찰	실시
	소 계				**521,458**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국민통합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한정된 활동기간 내에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관련 행사 및 정책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시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 제50조제1항[61]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62] **수의계약은** ① 천재지변·감염병확산 등에 준하는 **긴급한 경우**, ② **특정인의 기술·자격**이 필요하거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③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있음.[63]

---

6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6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 또한, 「행정업무규정」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절차를 정한 행정적 기준일 뿐,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 등 계약의 방법 자체를 완화하는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그런데, 국민통합위원회가 '**긴급성**'을 사유로 체결한 수의계약은 **일반 사회 이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17건과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행사용역** 1건으로, 사업의 내용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정책연구과제는 통상 연간계획·과제심의·선정 절차에 따라

준하는 경우
나.~라.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자. (생략)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타. (생략)
3.~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생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생략)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7) (생략)
나.~자. (생략)

계획적으로 진행되며, 긴급성을 이유로 추진된 연구과제의 대다수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지역활력 제고 방안” 등 **사전에 필요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활동기간 내 보고서 도출’이나 ‘정책적 시의성’ 등과 같은 **불가피성은 효율적인 일정 관리를 통해 대응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됨.

□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특정인의 기술·자격) 및 제5호가목4)(특수 지식·기술이 필요한 학술연구)에 따른 수의계약은, **특허권·저작권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독점적 권리** 등으로 실질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항임.

□ 반면, 국민통합위원회가 ‘특정인의 기술·자격’을 근거로 체결한 수의계약은 “근로자 안전보장 제도의 적절성 평가”, “5대 사회갈등 관련 이슈 분석” 등 4건의 정책연구용역 및 2건의 뉴스 스크랩 서비스[64]로서, **복수의 학술·연구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경험만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임.

□ 결론적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사업의 **긴급성 및 특정인의 기술·자격 필요성을 근거로 체결한 다수의 수의계약**이 실제로는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과제였다는 점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64) 뉴스 스크랩 서비스: 언론에 보도된 뉴스, 기사, 방송자료 등을 디지털 시스템(전자스크랩 솔루션)을 활용해 수집·관리하며, 이메일·모바일·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로 배포·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상 수의계약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과도한 수의계약은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사업예산의 합리적 산정 여부 및 사업자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시 **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요건 및 절차를 충실히 검토·이행**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140-300)

○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기획·운영, 보조금관리, 사업성과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평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특성과 실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보조금 지원, 평가결과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컨설팅 등 환류 체계 강화를 통하여 단체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단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3억 300만원(8.4%) 증액된 3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822	3,604	3,907	303	8.4
공익활동 지원	3,137	2,925	3,298	373	12.8
공익사업 평가 및 교육용역	210	196	196	-	-
공익사업 운영 및 관리	80	81	81	-	-
공익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395	402	332	△70	△17.4

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환류체계 강화 필요

□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65]에 근거하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임. 2026년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 공익사업 수가 전년도 110건에서 130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300만원(12.8%) 증액된 3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5년간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공익사업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이 2023년까지 60~70%를 상회하다가 2024년부터는 약 50% 수준으로 유지되어, **선정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이는 본 사업이 성과 중심의 경쟁적 공모사업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설계된 영향이 크다고 보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운영 현황(2021~2025)]

연도	등록단체수 (개)	신청현황			선정현황			
		사업수 (개)	금 액 (억원)	평균금액 (백만원)	사업수 (개)	금 액 (억원)	평균금액 (백만원)	선정률[66] (%)
2021	1,708	273	139	50.9	202	68	33.6	74.0
2022	1,733	284	151	53.2	182	65	35.7	64.1
2023	1,754	251	109	43.4	180	65	36.1	71.7
2024	1,471	249	88	35.3	124	32.5	26.2	49.8
2025	1,482	232	75	32.3	110	29.2	26.6	47.4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6) 공익사업 선정률 = (선정사업 수 ÷ 신청사업 수) × 100

□ 한편,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액된 이후, **공익사업당 평균 보조금액**은 2023년 3,610만원에서 **2026년(안) 2,530만원(잠정)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높은 선정률**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원 단가가 지속 감소**할 경우, 단체의 사업수행 여건과 성과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별 특성과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2~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67]를 종합한 결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기획 및 운영, 보조금 집행, 성과평가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공익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전담인력 부재, 조직·행정관리 미비 등 단체의 운영체계 취약성**이 지적되었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지침 미숙지, 집행등록 지연, 잦은 예산변경과 행정부담** 문제가 지적되었음.

- 성과평가의 경우, 다수 사업이 행사 횟수, 참가 인원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정책적 기여도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 정성적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6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용역 수행

□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통 등급 이상의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절대평가 방식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단체도 매년 일부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종합평가 결과(2022~2024)]

연도	우수(A) (90점 이상)		보통(B) (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C) (60점 미만)		중도포기 (평가제외)	계 (A+B+C)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2022	34	19.1	137	77.0	7	3.9	2	178
2023	54	31.2	117	67.6	2	1.2	3	173
2024	52	43.3	62	51.7	6	5.0	1	120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한편, 동 평가보고서에서는 사업기획 및 예산 편성, 교부금 집행 및 행정관리, 성과지표 수립 및 달성 등 공익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단체가 이러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지속 권고**하고 있음.

□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공익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단체의 사업수행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환류 체계와 연계하여 단체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자치분권국】

7.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1131-304)

○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상호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기적·체계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효율화’ 사업은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지자체 맞춤형 협력지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9억 3,500만원 대비 800만원이 감액[68]된 9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68)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2,200만원 감액,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1,100만원 감액
(지역 맞춤형 지자체 협력지원) 4억 2,000만원) 순감
(읍면동 기능 및 체계개선) 2,800만원) 순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소송대응) 500만원 감액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3,400만원 증액
(지자체 맞춤형 협력지원) 1억 4,000만원만원 신규편성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3억 400만원 신규편성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효율화	542	935	927	△8	△0.8
지자체 조직분석·진단	227	227	205	△22	△9.6
지자체 균형인사정책등 인사혁신 지원	110	110	99	△11	△10.0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96	96	130	34	35.4
지역맞춤형 지자체 협력지원	200	420	-	△420	순감
지자체 맞춤형 협력지원	-	-	140	140	순증
읍면동 기능 및 체계 개선	28	28	-	△28	순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소송대응	54	54	49	5	9.2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	-	304	304	순증

나. 지방시대위원회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 간 유기적·체계적 연계성 확보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사업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69]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3억 400만원이 신규편성[70]되었음.

69)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24.5. 출범)가 '25.1.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권고안으로 지방행정체제의 행정구역, 계층, 기능 측면에서 8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70) 의회 위촉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 10백만원,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14백만원, 사무실 인터넷망 전용회선 사용료 25백만원, 직원 특근매식비 5백만원, PC 및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차료 25백만원, 과운영비 2백만원, 실무회의 참석 여비 11백만원, 협의회 개최 3백만원, 실무회의 추진 3

□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로서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71],

[지방시대위원회 개요]

□ 설치목적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주요기능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관련 정책의 조정 등 다음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2.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3.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
4.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5.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6.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

□ 구성·운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위촉위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백만원, 지역주민 간담회 추진 3백만원,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권역별 행정수요 분석 200백만원

7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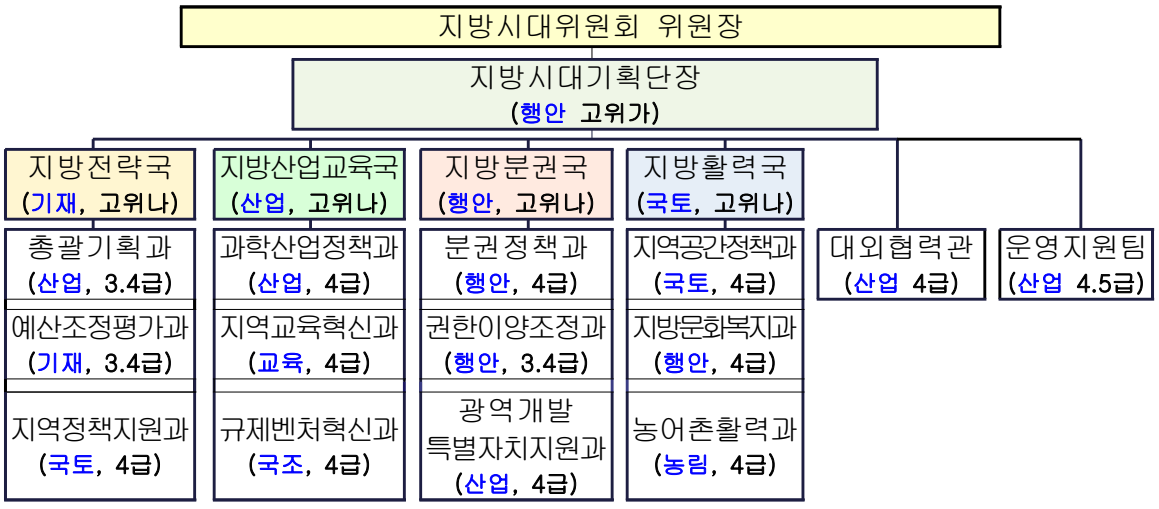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있는데[72], 이 중 분권정책과는 행정체제개편 등 제도개선(자치조직·입법·경찰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방시대기획단 현황]

□ (조직구성) 4국 12과 1관 1팀



□ (인력현황) 정원 46명 / 현원 91명('25.11.5. 기준)

○ 정원 : ①14개 중앙부처 소속파견(42) + ②전문임기제 공무원(4)

*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부처파견(별도) 및 전문임기제 T/O 현황임

○ 현원 : 정원 外 지자체(21), 공공기관 파견직원(15) 등 구성

※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

7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법 제68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3.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지원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1132-325)을 위하여 14억 9,600만원(위원회 기본운영 443백만원, 위원회 회의운영 251백만원, 지방시대 정책연구 및 홍보 302백만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활성화 300백만원, 지방분권 평가·확산 지원 20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실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와 해당 협의회의 운영·지원 등을 위한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의 설치근거를 마련('25. 4. 10.)[73]하였으며, 협의회 및 지원단 운영을 위해 3억 4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음.

---

73)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에 대한 개편(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 한다)을 위한 실행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실행방안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이하 "광역시·도 통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가사무의 이양 등 기능 이관에 관한 사항
4. 광역시·도 통합 관련 기구·정원·인사 및 통합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기능 조정 시 기관 간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지원단 개요]

□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주요 내용**

○ **(구성)** 위원장행안부 장관, 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 **(기능)**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실행방안의 협의 조정

-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실행방안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 주요 내용**

○ **(구성)** 단장행안부 자치분권국장(겸임), 단원행안부·기재부 등 관련부처, 필요시지자체등

○ **(기능)**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검토 및 이행방안 마련, 범정부 협의회 운영, 유관부처 협의, 관련 법령 정비, 연구용역 수행 등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방시대기획단 내에도 행정체제개편 등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내 협의회 및 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행정체제개편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상호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기적·체계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사전에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이 출범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임.

8.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1131-315)

○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이용 현황과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홍보 전략과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고, 국민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 사업은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제도 운영 및 개선을 통해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1억 6,100만원 대비 1,600만원 감액된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	161	161	145	△16	△9.9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홍보전략 및 예산 배분 검토 필요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을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감 도장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74]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 인감등록 신고	• 해당 없음	•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 인증서 등 사전발급 필요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신청방법	• 발급기관 방문 ※ 일부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	• 발급기관 방문	• 발급사이트 접속
발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拇印)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拇印)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 상 확인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전자서명

7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인	• 발급기관 날인	• 발급기관 날인	• 미날인
발급형태	• 문서형태	• 문서형태	• 전자문서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수요기관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 상 확인

※ 자료: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매도 용도	[ ] 부동산 매수자, [ ] 자동차 매수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일반 용도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 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5~7% 대에서 정체되고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8
인감증명 발급(A)	35,510	30,749	29,836	29,845	19,712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 발급(B)	2,177	1,729	1,880	1,901	1,483
발급률 (B/A+B)*100	5.8%	5.3%	5.9%	6.0%	7.0%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급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해왔으며[75],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2020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실적 개선	○ [지적사항] 2020년도 본인서명 발급률은 5.19%로,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도입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제도개선	○ 수요기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및 근거 규정을 정비**하도록 협의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와 교육을 지속 추진** 중 ○ 인감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75) 2020년도 결산심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2024년도 결산심사 시 우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수요기관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발급 실적을 개선**할 것		대행하는 대행업(행정사, 법무사) 협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협조 요청** ○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과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홍보예산은 2023년까지는 3,900만원으로 유지되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8.7% 감액된 2,0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예산안에서도 전년 대비 30% 감액된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2026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서명확인제도 홍보예산	39,000	39,000	20,000	20,000	14,000

※자료: 행정안전부

□ 이처럼 발급 실적이 낮은 상황에서 홍보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제도의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임.

[2025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계획]

○ **(홍보물 제작)** 합리적 비용으로 다양한 영상(모션그래픽 영상, 이미지 강조형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 숏폼, 현장 인터뷰 홍보영상 등) 및 홍보물 제작

《 2025년 홍보 캐치프레이즈(슬로건) 》

“ 똑똑한 요즘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1]만 있으면 됩니다[2] ”

1) **“나”**란 본인을 의미함과 동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칭
2) ‘23년 홍보 슬로건 ‘씁니다’의 시리즈 형식으로 **“됩니다”** 로 강조

① **(2D모션영상)** 서명의 **편리함**과 본인만 발급하는 **안전함** 강조

- **입체감 있는 3D 소스 이미지**와 주요 텍스트 자막을 강조하는 **2D 모션 그래픽 형식**의 20초 짧은 영상으로 제작(**비디오 강조**)

(예시) 은행갈 때! 신분증, 통장, 핸드폰...**도장 어디있지? 실패!**
내가 은행갈 때?! 신분증, 핸드폰 그리고5 **나?! 성공**
부동산 거래할 때! **도장 대신 여기 있어요. 저! 통과!**
자동차 구입할 때! **언제 어디서나 신분증과 나만 있으면 되는 이유**
우리에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치트키가 있으니까

② **(숏폼영상) 서명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위한 SNS 홍보용 제작

- **(이미지 강조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키워드 중심의 자막과 직관적인 아이콘**을 통해 대화 형식으로 핵심 내용 설명

(예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안전한데
서명 하나로 증명하니까 편리하지
사실 이거 신청 한 번이면 그냥!
확인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다 **됩니다**

☞ 사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신
☞ 펜으로 터치패드 서명 모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모션
☞ 주민센터 확인서 튀어나오는 모션
☞ 사용처 사이를 확인서가 뛰어가는 모션

- **(인플루언서 협업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A to Z를 소개, 2030 세대에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섭외**, 행안부 인스타 동시 업로드

(예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궁금증 유발 질문 → 장점 나열 → 인감증명서와 비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간편함 사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설명(사용처, 발급방법 등) → 슬로건 강조 및 엔딩

③ **(댓글 이벤트) 인플루언서 활용하여 제작한 제도안내 영상과 연계하여 댓글 달기 이벤트 추진**

* 유명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율 및 반응효과 극대화

○ **(홍보 방안) 전광판, SNS(인스타, 유튜브 등), 엘리베이터 활용**하여 국민생활 속 일부분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 홍보**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제도의 이용 현황과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홍보 전략과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고, 국민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과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법원, 은행 등 수요기관과 협력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입장임.

9.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1137-500)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개발SW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을 유사 시스템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비교·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여 유지관리비 산정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대책」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SW 유지관리 요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유지관리비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 예산 요구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하고, 개별 기관의 직접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사업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 및 주민등록데이터 개방 시스템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교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52억 9,400만원 대비 1억 8,500만원이 감액[76]된 5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76)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구축)** 5억 4,000만원 순감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교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억 2백만원 증액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민간전용 연계환경 구축) 1억 2,200만원 증액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2,732	5,294	5,109	△185	△3.4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309	2,182	2,101	△81	△3.7
비대면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4	-	-	-	-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235	235	235	-	-
주민등록 데이터 개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64	164	164	-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운영	-	266	478	212	79.6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구축	-	540	-	-	순감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	-	1,907	2,009	102	5.3

나. 모바일주민등록증 시스템 SW 유지관리 요율의 합리화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운영’ 사업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주민등록증[77]의 본격 시행(’24. 12. 27.)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지원 등을

77) **「주민등록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시스템 운영, SW 유지관리 및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년 대비 79.7% 증가한 4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모바일주민등록증 시스템 예산산출 내역]

□ 모바일주민등록증시스템 운영 : (2025) 266백만원 → (2026) 478백만원, +212백만원(+79.7%)

가. 시스템 운영 : (2025) 266백 → (2026) 266백, 전년동

- 〔산출근거〕 정보시스템운용자 12M/M(1명) × 32,706천원(1M/M 단가) × 67.8%(할인 32.2%) = 266백만원

나. 개발SW 유지관리 : (2025) 0백만원 → (2026) 36백만원, 순증

- 〔산출근거〕 526FP(기능점수) × 1,473천원(1FP당 유지보수 단가) × 4.65%(유지관리 요율) = 36백만원

다. 상용SW 유지관리 : (2025) 0백만원 → (2026) 108백만원, 순증

- 〔산출근거〕 901백만원(상용SW도입가) × 12%(유지관리 요율) = 108백만원

라.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025) 0백만원 → (2026) 68백만원, 순증

- 〔산출근거〕 DPM 16식 × 3,500천원 + SYSMON 12식 × 1,000천원 = 68백만원

※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중 '개발SW 유지관리' 사업은 2024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의 개발 이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유지관리비는 개발규모와 개발단가, 유지관리요율 등을 고려한 기능점수방법에 의해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기능점수 방식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식
①개발원가	기능점수×개발단가×보정계수
②개발금액	(①+이윤(개발원가의 20%))×1.1(부가세)
유지관리비	②×유지관리요율

※ 자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해당 방식에 따르면 모바일주민등록증 시스템의 개발SW 유지관리 개발원가는 5억 8,699만원이고, 개발금액은 7억 7,482만원이며, 유지관리요율(4.65%)을 고려한 유지관리비는 3,602만원으로 산정됨.

□ 그런데, 해당 유지관리요율은 유사한 개발SW 유지관리 사업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세부사업 내 개발SW 유지관리 사업은 총 5개인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제외한 다른 시스템의 개발 SW에 적용되는 유지관리 요율은 9~11% 수준이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10~15%를 적정 유지관리 요율로 산정[78]하고 있음.

78) 참고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개발 SW유지관리비에 대해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세부사업 내 SW 유지관리비]

사업명	유지 관리비	기능점수	개발단가	개발금액	유지관리 요율
주민등록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1,093백만원	9,231FP	605,784원	11,245,151,632원	9.7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16백만원	163FP	605,784원	174,546,973원	9.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발SW 유지관리	70백만원	575FP	605,784원	714,718,943원	9.85%
주민등록 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28백만원	220FP	605,784원	235,584,872원	11.9%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36백만원	526FP	605,784원	774,826,825원	4.65%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이 유지관리 요율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SW 유지관리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보수 및 장애 대응이 제한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편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유지관리 요율을 유사 시스템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비교·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유지관리비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정부 재정운용 여건 및 모바일 주

민등록증 발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개발SW 유지관리 요율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고려한 SW 유지관리비 대가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행정안전부는 '23년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대책을 발표('24.1.31.)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체계를 개선하여 사업품질을 높이고, 전산망 장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3.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으로 안정성 제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개선**해 사업의 품질을 높인다.

○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품질 제고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 산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유지관리 요율의 차등 적용기준**, 클라우드·인공지능 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기준, 과업변경 심의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 자료: 행정안전부

□ 이는 기존 공공정보화사업의 대가체계가 저예산으로 구성됨에 따라 우수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수 개발자를 참여시키고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그런데,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 운영' 세부사업의 개발SW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비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단가는 2024년 및 2025년 약 55만원에서 2026년 약 6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유지관리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총 유지관리비((개발단가×기능점수×보정계수)×유지관리요율)는 매년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024년~2026년 개발SW 유지관리비 현황]

구 분		2024	2025	2026(안)
주민등록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1,093백만원	1,093백만원	1,093백만원
	개발단가	553,114원	553,114원	605,784원
	개발금액	7,292,750,993원	9,386,667,224원	11,245,151,632원
	유지관리요율	15%	11.64%	9.7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24백만원	16백만원	16백만원
	개발단가	553,114원	553,114원	605,784원
	개발금액	160,888,773원	168,933,212원	174,546,973원
	유지관리요율	15%	9.5%	9.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발SW 유지보수	유지관리비	70백만원	70백만원	70백만원
	개발단가	553,114원	553,114원	605,784원
	개발금액	469,387,798원	652,577,575원	714,718,943원
	유지관리요율	15%	10.75%	9.85%
주민등록 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유지관리비	28백만원	28백만원	28백만원
	개발단가	553,114원	553,114원	605,784원
	개발금액	186,675,860원	215,101,902원	235,584,872원
	유지관리요율	15%	13%	11.9%

구 분		2024	2025	2026(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	-	36백만원
	개발단가	-	-	605,784원
	개발금액	-	-	774,826,825원
	유지관리요율	-	-	4.65%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이 SW사업의 대가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대책」의 취지와 달리, 유지관리비 규모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며, 우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품질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대책」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SW 유지관리 요율 및 개발단가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유지관리비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1등급 핵심 정보시스템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적정 수준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시스템 SW 예산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 편성 필요성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운영 사업은 현재 임시 라이센스로 활용 중인 모니터링SW 2종을 구매하여 상시관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음.

□ 해당 예산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에 따라 모니터링SW를 도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DPM[79] 16식과 SYSMON[80] 12식 도입에 각각 5,600만원 및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6년 도입예정 모니터링SW 현황]

<table>
<tr><th>제품명</th><th>도입비(원)</th><th>수량(식)</th><th>소요예산(원)</th><th>비 고</th></tr>
<tr><td>DPM</td><td>3,500,000</td><td>16</td><td>56,000,000</td><td>'25년 임시 라이선스 사용 중
※ CPU 2Core당 1식으로 총 16식 필요
(CPU 32Core ÷ 2Core(1식) = 16식)
<table><tr><th>구분</th><th>CPU</th></tr><tr><td>주민증 DB 1, 2</td><td>16Core</td></tr><tr><td>안면인식 1, 2</td><td>16Core</td></tr><tr><td>합 계</td><td>32Core</td></tr></table></td></tr>
<tr><td>SYSMON</td><td>1,000,000</td><td>12</td><td>12,000,000</td><td>'25년 임시 라이선스 사용 중
※ 라이선스 설치 대상 서버 목록
<table><tr><th>구분</th><th>수량</th></tr><tr><td>WEB1,2</td><td>2식</td></tr><tr><td>안면인식 1,2</td><td>2식</td></tr><tr><td>개인정보이력1,2</td><td>2식</td></tr><tr><td>DB암호화 1,2</td><td>2식</td></tr><tr><td>중 스테이징 WEB</td><td>1식</td></tr><tr><td>중 스테이징 WAS</td><td>1식</td></tr><tr><td>중 스테이징 DB</td><td>1식</td></tr><tr><td>WAS 모니터링 서버</td><td>1식</td></tr><tr><td>합계</td><td>12식</td></tr></table></td></tr>
</table>

※ 자료: 행정안전부

79) DPM(Data Performance Management) : 데이터베이스 성능 및 장애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80) SYSMON(System Monitor) : 단일 서버에 대한 장애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된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과 관련된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81]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한 후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고, 기타 SW구입 등의 예산은 개별 중앙관서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정보화사업과 ②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관서가 HW구축 및 AP개발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중앙관서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는 개별 정부부처에서 사용할 전산장비를 부처가 각각 구매하지 않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일괄구매한 후 정보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도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임.

□ 이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81) 시스템 SW : DBMS, Web서버, WAS, 서버보안, DB 보안, DB 접근제어, DB 모니터링, 백업 SW, 관제 SW, WAS 모니터링, HA용 SW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별표 2] 정보자산 분류기준

1) 정보자산 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소프트웨어	시스템S/W	관제	SMS	
			NMS	
			nTEMS	
			ESM	
			APM	
			DPM	
			nSIMS	

에 이전되어 있으며, 개별 중앙관서가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스템 SW인 DPM, SYSMON의 도입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통합하여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 예산 요구 절차에 따를 경우, 모니터링 SW의 도입이 2026년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신속히 SW를 도입하기 위해 직접 도입예산을 요구하였다고 설명함.

□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 예산 요구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개별 중앙관서가 직접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도입·운영 비용 절감이라는 통합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 예산 요구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하고, 개별 기관의 직접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지원국】

10.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행정안전부는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 도입의 효과성과 시급성,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제품 단가를 적절히 수정하는 등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 관련 예산액을 조정하여 양방향 비상벨 설치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빈도,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의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시설 등에도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의서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비상벨 설치 지원 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참여 여부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보조사업 추진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 요

□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보조요원인건비’,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조성’, ‘온천산업활성화’, ‘지역활력제고’, ‘고향사랑기부제활동지원’, ‘인구감소지역 기업협업 활성화 지원’, ‘균형발전 사업추진’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53억 2,800만원 대비 5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발전활성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역발전활성화	9,545	5,328	10,777	5,449	102.3
보조요원인건비	72	88	96	8	9.1
안전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717	760	6,965	6,205	816.4
- 안전한 화장실 조성	110	110	6,373	6,263	5,694
- 옥외광고 규제개선 및 안전관리	38	38	33	△5	△13.2
-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569	612	559	△53	△8.7
온천산업활성화	4,825	325	324	△1	△0.3
지역활력제고	1,824	3,155	2,612	△543	△17.2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	750	750	200	△550	△73.3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357	250	-	△250	순감
부처지역사업 연계지원	1,000	-	-	-	-
인구감소지역 기업협업 활성화 지원	-	-	430	430	순증
균형발전 사업추진	-	-	150	150	순증

나.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재검토 필요

□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은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통해 국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1억 1,000만원 대비 62억 6,300만원이 증액된 6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안전한 화장실’ 사업의 세부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안전한 화장실 조성	110	6,373	6,263	5,694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공모·시상 등 행사	87.5	67	△20.5	△23.4
전국 화장실 시설 안전·위생 실태조사 및 분석	10	10	-	-
화장실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	12.5	21.5	9	72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지원	-	6,275	6,275	순증

□ 이 중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지원’ 사업은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및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2,500개소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개소당 250만원, 국비 지원율 50%)을 설치하고 3,500개소에는 비상벨(개소당

180만원, 국비 50%)을 설치할 수 있도록 62억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양방형 비상벨[82] 등을 설치해야 하고, 국가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83]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범죄	3,852	3,154	3,528	2,890	2,584
불법촬영	523	419	518	520	504

※ 자료: 경찰청

82)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에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유형의 비상벨을 의미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8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그런데 비상벨 설치 의무가 있는 69,385개소 중 실제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37,874개소(54.6%)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전체 범죄 수는 감소하였으나 불법 촬영 범죄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84]

□ 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별 예산액**과 관련하여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은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효과가 제한적이고 도입의 시급성·필요성이 낮으며, 실제 1개소 당 설치 단가는 편성된 단가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액 일부를 **비상벨 설치지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은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로 탐지하여 관련 정보를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고 영상 무선 송출을 원격으로 차단하거나 경고 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불법촬영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회성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84)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중

□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제품은 크게 ‘통신 데이터 감지형’, ‘열원 감지형’, ‘트래픽 감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디바이스 검색에 기반한 ‘통신 데이터 감지형’은 통신 기능이 없는 기록형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이동형 기기를 활용한 불법촬영을 탐지하지 못하고, 온도감지센서를 활용한 ‘열원 감지형’은 장애물 통과가 안 되며 탐지거리가 2m 이내로 짧고, ‘트래픽 감지형’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격이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각각 한계가 있음.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개요]

○ **(개념)**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로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림 및 영상 송출을 원격으로 차단하거나 칸막이 상단 촬영 행위 감지시 경고 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주요 제품)**

제조사	이○○○	지○	넷○○
희망가격[85]	1,342,000	1,210,000	2,893,000
주요 기능	불법촬영 상시감지 (통신 데이터 감지)	불법촬영 상시감지 (열원 감지)	불법촬영 상시감지 (트래픽 감지)
	관계자 알림	관계자 알림	관계자 알림
	영상 송출 원격 차단	칸막이 상단 촬영 감지 (적외선 감지) 및 경고방송	카메라 위치 추적

※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설명을 토대로 재구성

85) 혁신장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6호)에 따른 견적가격(VAT포함)이며, 혁신장터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37호) 제16조 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님.

□ 또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이 실시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예방적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으나, 불법촬영 이외의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예방·적발·대응의 효과는 없고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실제로 적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임.

□ 반면, **양방향 비상벨**의 경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외에 각종 범죄 발생시 경찰관서에 즉각적으로 연락이 가도록 하여 범죄 예방·적발·대응 측면에서 더 높은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달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를 직접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전 수요조사 결과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에 비하여 양방향 비상벨에 대한 수요가 약 1.7배 더 많음.

[지방자치단체 사전 수요조사 결과]

(단위:개소)

구분	불법촬영 상시탐지 시스템 구축		비상벨 설치	
	사업량	신청량	사업량	신청량
합 계	2,500	1,765	3,500	3,033
서울	252	128	251	128
부산	56	59	8	41
대구	115	40	118	38
인천	97	104	66	11
광주	27	114	67	64
대전	96	3	18	20
울산	46	62	22	203

구분	불법촬영 상시탐지 시스템 구축		비상벨 설치	
	사업량	신청량	사업량	신청량
세종	39	0	46	55
경기	653	431	829	571
강원	154	44	273	153
충북	97	21	279	225
충남	125	435	202	543
전북	125	115	298	201
전남	169	117	324	360
경북	177	25	386	119
경남	238	57	290	301
제주	34	10	23	0

※ 자료: 행정안전부

□ 더 나아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주요 제품의 희망가격은 ‘통신 데이터 감지형’의 경우 개당 134만원, ‘열원 감지형’의 경우 개당 121만원, ‘트래픽 감지형’의 경우 개당 289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1개소당 1개의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개소당 실제 소요액 평균은 250만원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의 관점에서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 도입의 효과성과 시급성,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제품 단가를 적절히 수정하는 등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 관

련 예산액을 조정하여 **양방향 비상벨 설치**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 사업 추진시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의 경우 관광·체육시설 및 상업시설 등 이용객이 많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교통시설도 이용객이 많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 대상 확대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관광·체육시설 및 상업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의 협조가 요구되어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시 민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비상벨 설치를 지원받은 공중화장실등이 개방형 화장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86]

86) 제21대국회 제388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1.06.08.)
-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에 관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당시 논의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빈도,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의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시설 등에도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의서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비상벨**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교부세 예산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및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1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양방향 비상벨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자체적인 예산 사업을 통해 양방향 비상벨 등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가 비상벨 설치에 관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업과 일부 중복의 우려가 있음.

행정안전부차관 : 공공기관이 개방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의무를 두고요. 민간이 개방한 화장실에는 의무로 안 두고 민간이 벨을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것이 좋지 않나 … (중략) … 지금 민간부문 개방은 저희들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부담을 더하게 되면 개방이 좀 더 늦춰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간부문까지 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알아서 반드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면 임의사항을 두고 하게 되면 지원해 줄 것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측면이나 민간개방 화장실의 개방 권장 측면이나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시 : 서울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확충 사업]

□ 서울특별시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충 사업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지원
- 사업 내용 : 공중화장실 출입구 주변 CCTV 및 비상벨 설치 지원
- 사업 총액 : 1억 2,855만원
- 지원 금액 : 자치구 별 설치 비용의 5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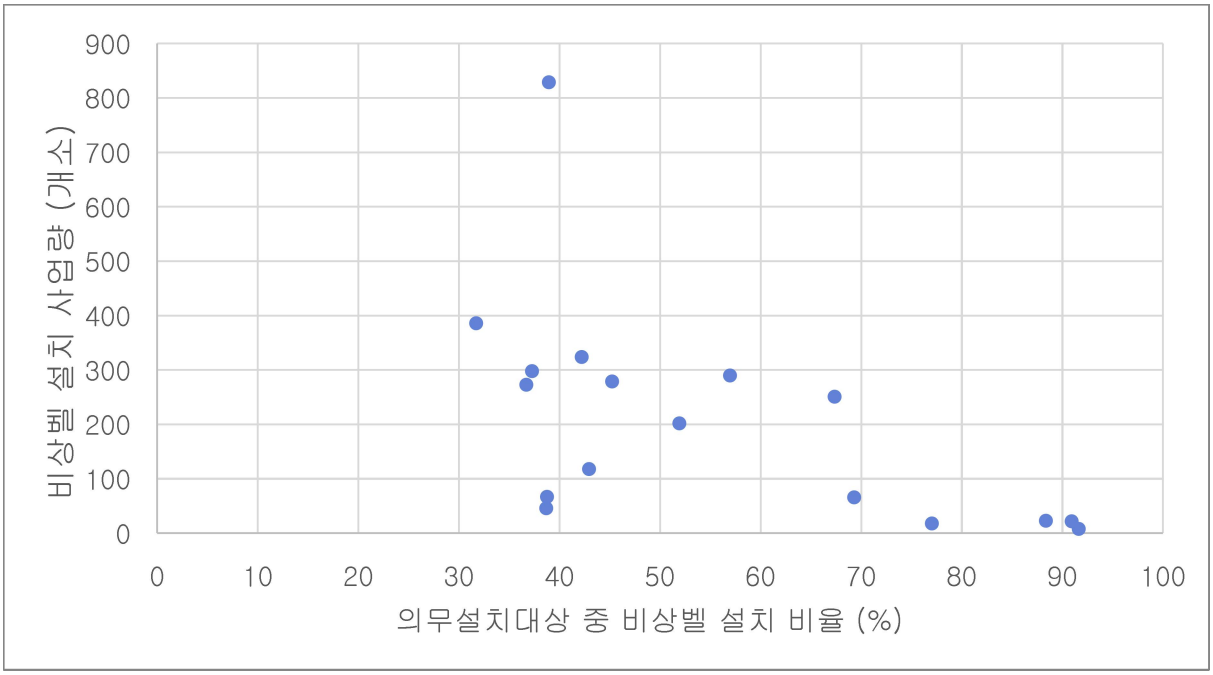
○ 민간개방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지원
- 사업 내용 : 민간건물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 지원 등
- 사업 총액 : 2억원
- 지원 금액 : 출입구 분리 최대 1,000만원, 층간 분리 최대 200만원, CCTV 및 비상벨 각 250만원

※ 자료: 서울특별시

□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와 비상벨 설치 등 노후화장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확충을 지원해왔음.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비상벨 설치 사업량을 비상벨 설치 비율에 반비례하도록 설계하였는바 그동안 중점사업으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비상벨 설치 비율과 사업량 대비 신청량]



※ 자료: 행정안전부

□ 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사업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으로 인하여 관련 사업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고, 화장실 만족도 조사 결과 불법촬영범죄 불안도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87]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이 공중화장실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참여 여부나 재

87) 불법촬영범죄 불안도 : ('22년) 42.4% → ('23년) 53% → ('24년) 67.2%
(※ 자료 :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만족도 조사)

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보조사업 추진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의 조성 주기를 2년으로 바꾸는 등 연차별 출연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조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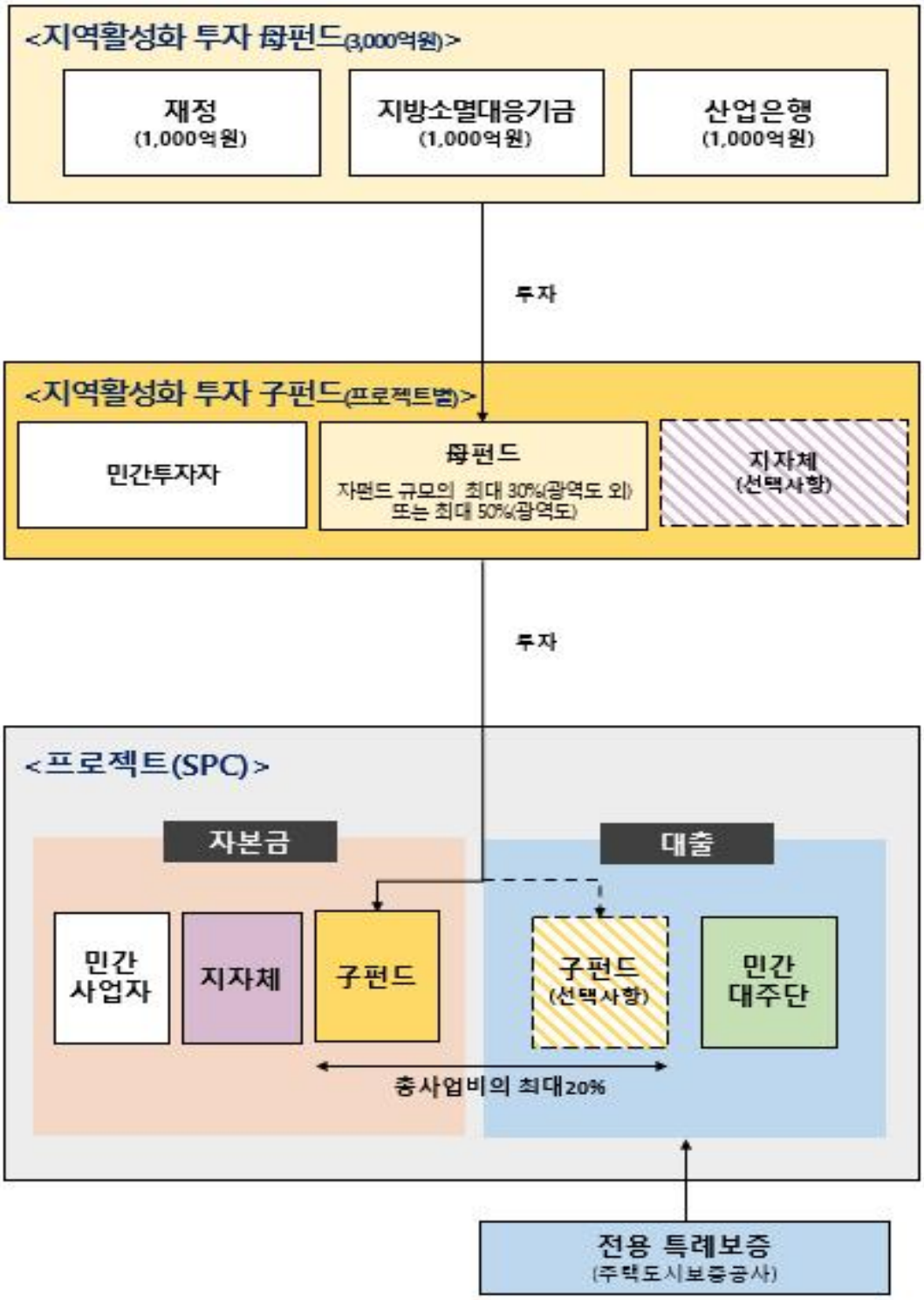
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연차별 출연 계획 재점검 필요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 투자 방식으로,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을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에 출자하여 2028년까지 5년간 총 5,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임.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하여 모펀드-자펀드(Fund of Funds) 구조를 활용함. 구체적으로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매년 1,000억원을 출자하여 매년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금융기관과 프로젝트별로 자(子)펀드를 결성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 시행법인(SPC)과 함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

□ 이때 프로젝트별로 모펀드는 자펀드 규모의 최대 30%(광역도 외)~50%(광역도)를 출자하고, 자펀드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출자하므로 모펀드는 총사업비의 최대 10% 출자할 수 있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최대 3조원 규모의 지역 투자 유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자 구조]



※ 자료: 관계부처 합동,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2025.2.5.를 토대로 일부 수정

□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는 결성되어 있으나, 지역개발 프로젝트 조성이 지속적으로 지체되어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자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운용사에게 프로젝트 펀드 출자 심사를 신청하여 프로젝트 투자 승인을 받고, 투자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펀드를 결성하되 3개월씩 총 2회 연장하여 최대 10개월 이내에 자펀드를 결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승인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SPC 설립,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각종 인·허가 취득을 거친 뒤 비로소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지며, 자펀드가 결성되어야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에 투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금이 비로소 활용될 수 있음.

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 출자가 실제 프로젝트 진행으로 이어지기 위하여는 모펀드 위탁운용사의 선정뿐만 아니라 지역 프로젝트 투자 선정,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자펀드 결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함.

□ 그런데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2024년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로 추진하는 5개 프로젝트 중 3개 프로젝트만이 자펀드가 결성된 상황이고 1개 프로젝트는 자펀드 결성 중이며 1개 프로젝트는 재심사 진행 중에 있음.

[2024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자펀드 결성 현황]

프로젝트	자펀드 선정일	자펀드 위탁운용사 최종선정일	자펀드 결성시한 및 결성일
충북 단양 복합관광단지	24.2.16.	24.11.27.	25.9.29.
			25.9.26.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24.2.22.	25.1.24.	25.8.25.
			25.8.21.
전남 여수 묘도 LNG터미널	24.8.29.	24.9.2.	25.4.2.
			25.2.28.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4.11.26.	24.11.27.	25.9.29.
			(투자조건 재심사 중)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1단계	24.12.24.	25.10.2.	26.2.2.
			(결성 중)

※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2025년 올해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중 1,000억원을 출자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난 4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하였으나 10월 말까지도 자펀드 위탁운용사 및 신규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못하여 2025년도에는 자펀드 결성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 이는 지역활성화 투자성 자펀드 조성시 기조성된 모펀드로부터의 출자를 우선하고 있어 2024년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가 소진되지 않는 한 2025년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로부터 출자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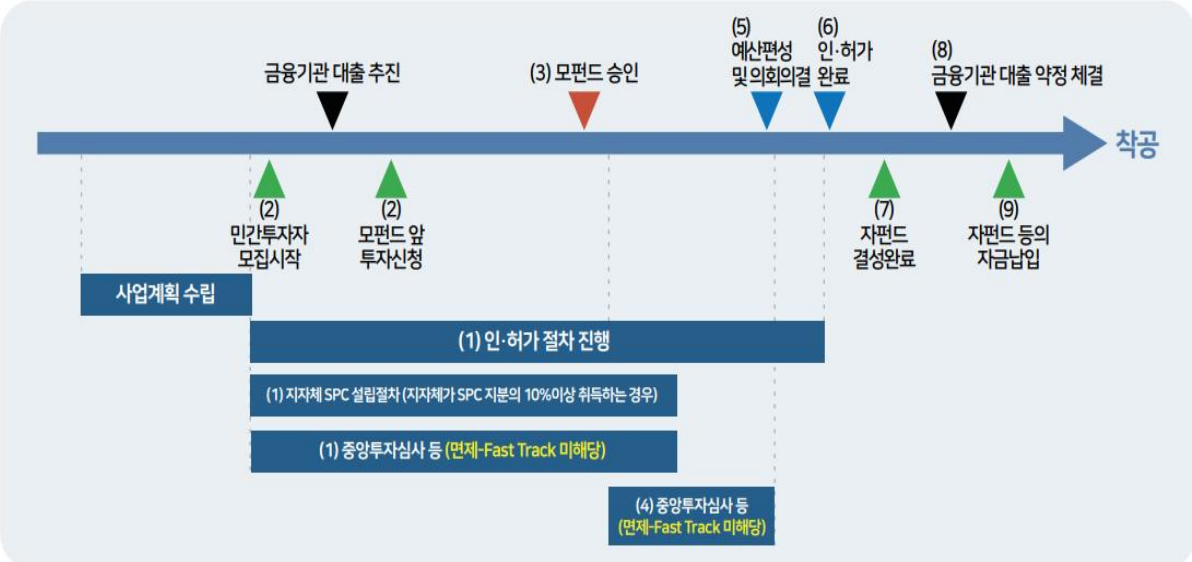
□ 한편 지난 11월 4일,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2개 사업(모펀드 투자액 합계 792억원 규모)을 승인하여 2025년도 모펀드 소진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는데, 2024년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는 같은 해 2월 자펀드를 선정했음을 고려할 때 2025년의 경우 자펀드 선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2026년 1분기까지 모펀드 1,240억원을 추가 소진하고, 2026년 2~4분기에 지방자치단체 추진 희망 프로젝트(총 18개 사업, 모펀드 투자액 합계 6,877억원)를 추진하는 경우 2026년 내 2025년 조성 모펀드를 전액 소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 매입기간[88]이 2년이고 모펀드 소진에 약 2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의 조성 주기를 2년으로 바꾸는 등 연차별 출연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88) 자펀드를 선정하고 확약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업무흐름도 (예)]



※ 자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2024.6.

12.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

○ 행정안전부는 청년 인구의 실질적인 지방 유입·체류를 독려할 수 있도록 개별 청년마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업체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 청년마을과 관련된 전 부분의 성과를 평가하여 환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마을 신규 조성 및 지원 규모를 계획하고 매년 일정한 수의 청년마을이 신규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 거점 활성화’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91억 3,500만원 대비 27억 7,9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9,212	9,135	11,914	2,779	33.6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7,513	7,515	6,764	△751	10.0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해결 사업	1,386	1,400	1,000	△400	28.6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	-	2,500	2,500	순증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	-	1,650	1,650	순증
산불재난지역대상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	-	220	-	△220	순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4,199	-	-	-	-
과학기술 기반 현안해결	1,145	-	-	-	-
빈집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지원운영	4,969	-	-	-	-

나.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은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청년마을에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51개의 청년마을이 선정되었음.

□ 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2018년 세부사업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의 내역사업 ‘과제지정형 프로젝트’로서 지방 원도심의 유휴상가를 활용하여 청년을 위한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로 시작하였음.

□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개소씩 조성되다가 2021년에는 12개소로 확대 조성되었고, 2022년부터는 다년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단년도 지원에서 다년도(3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2022년~2023년, 2025년에 매년 12곳이 추가 선정되었음.[89]

---

89) 행정안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0) 청년마을 조성 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년도 사업체계 필요(제도개선)

○ **[지적사항]**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의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특성상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 사업체계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나, 현재 사업의 진행방식은 단년도의 지역공모 및 용역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들은 약 7~8개월의 계획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정부는 단년도 시점으로 청년 정착률 등의 성과를 측정하는 한계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는 실질적 사업기간 보장, 성과공유 결과 환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점검을 위해 향후 최소 3년 이상의 다년도 관점에서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보완할 것

[연도별 청년마을 조성 현황]

연도	세부사업 - 세사업 명	마을당 지원액	신규 선정마을
2018년 2018.8.28~12. 25. (약 5개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과제지정형 프로젝트	7억원	1개소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
2019년 2019.6.10.~1231. (약 7개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8억원	1개소 충남 서천 '삶 기술학교'
2020년 2020. 4. 28. ~12. 31. (약 8개월)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2022~ 다년도지원(3년)	6억원	1개소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
2021년 2021.7.13.~12.31. (약 6개월)		5억원	12개소
2022년		2억원	12개소
2023년		2억원	12개소
2024년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조성	2억원	- (2022~2023년 지정 24개소 지원, 신규 지정 없음)
2025년		2억원	12개소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은 청년마을 조성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부족이나 단절·고립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배분의 효율성과 예산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지방 정착이나 체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이 청년 인구의 지방 유입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에 따르면 자연마을은 행정리 안에 위치하여 고유의 마을 이름이 있고 다른 마을과의 경계가 구분되는 마을로, 자연마을별 가구 수는 평균 6.0~81.9호 수준임.[90]

□ 반면, 청년마을의 경우 최근 3년간 청년마을당 이주정착 인원은 9.61명 및 월평균 참여 인원은 11.47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마을’을 조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90) 행정리 내에서 가장 큰 마을을 자연마을1(본마을)이라 하고 자연마을 숫자가 커질수록 자연마을의 규모가 작아짐

구분	사례수	전체 가구수	본마을	자연마을 2	자연마을 3	자연마을 4	자연마을 5	자연마을 6	자연마을 7
전체	(103)	106.7	81.9	47.1	51.6	23.8	19.7	12.3	6.0

[최근 3년간 청년마을당 이주정착 인원 및 월평균 참여 인원]

구분	이주정착 인원	월평균 참여 인원
2022년	9.17명	5.00명
2023년	9.58명	10.06명
2024년	10.08명	19.36명
평균	**9.61명**	**11.47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이 행정구역상 행정리 안에 위치한 실제 '마을'을 신규로 건설한다기보다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봉착한 마을에 청년들이 유입·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년까지 39개의 청년마을 조성을 통해 880명의 지역 이주·정착을 유도하고 10,680명의 참여 인원이 지역사회의 관계인구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임.

□ 한편,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 이후에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와 같이 폐업하여 활동을 종료하거나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와 같이 정착사례가 없게 되는 등 국비 지원 없이 청년마을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는 청년마을이 매년 일정한 성과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청년마을로 일단 선정되는 경우 3년간 매년 2억원 씩 총 6억원이 지원되고, 지원 종료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청년마을

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도록 할 유인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보임.

□ 참고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의 경우 1차 신규지정을 받은 마을기업이 2차 재지정 및 3차 고도화 마을기업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1차 지정과 마찬가지로 공모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우수 마을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성과가 부진한 마을기업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 정보화마을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평가를 통해 정보화마을을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매출이 부진하거나 사업지속 노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해제를 하거나 컨설팅을 통해 매출액 증가를 유도하는 등 성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음.

□ 특히 해당 사업은 청년마을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지만 일반용역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에서 제외되어 청년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년도 사업이나 1년 단기 용역사업으로 진행되어 청년마을 중간관리기관의 성격을 갖는 용역업체에 대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 외에도 2022년부터 3년간 특별교부세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공유 숙소·오피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주거공간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제 준공·입주가 이루어진 이후

해당 사업이 청년 유입에 미치는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청년 인구의 실질적인 지방 유입·체류를 독려할 수 있도록 개별 청년마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업체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 청년마을과 관련된 전 부분의 성과를 평가하여 환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에 신규 청년마을로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나 청년마을 조성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는 **연도별 청년마을 지정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은 2022년에 다년도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2022~2023년 2년간 청년마을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는데, 2024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2022~2023년에 지정된 24개소에 대하여만 지원이 이루어졌고 신규 청년마을을 지정할 수 없었음.

□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마을 지원 대상은 22개소로, 2027년 이후에 예산 증액 없이 2025~2026년 신규 지정된 청년마을에 대하여 지원이 지속되는 경우 2027년에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신규 청년마을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는 청년마을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년도예산주의의 특성상 미래 예산 편성 계획을 미리 알기 어렵고, 다년도 사업은 지원 대상이 연차별로 누적

되어 신규 청년마을 조성을 위하여 기 조성된 청년마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임.

[청년마을 신규 조성 및 지원 건수]

(단위 : 개소)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2년 신규	12	12	12				
23년 신규		12	12	12			
24년 신규			-	-	-		
25년 신규				12	12	12	
26년 신규					10	10	10
27년 신규						a	a
28년 신규							b
연간 지원 청년마을	12	24	24	24	22	22+a	10+a+b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마을 신규 조성 및 지원 규모를 계획하고 매년 일정한 수의 청년마을이 신규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2·3차 지정 비중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1~3차 지정단계별 지정 건수를 조정하고 마을기업 2·3차 지정 심사를 토대로 마을기업 관련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을 활용하여 마을기업의 특성과 사업추진 구조를 고려하여 마케팅 지원 외에 마을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가. 개 요

□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6억 7,500만원 대비 35억 7,500만원이 증액된 5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마을기업육성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마을기업육성사업	2,695	1,675	5,250	3,575	213.4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200	600	400	200
마을기업 육성사업	2695	1475	4650	3175	215.2

나. 마을기업 지정단계 별 지정 건수 조정 필요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된 이후 2011년부터 ‘마을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그동안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였으나 올해 8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 마을기업에 대한 지정·지원은 1차~3차 지정에 따라 총 1억원을 지원하고 우수사례와 연합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미흡사례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체계임.

[마을기업 지정·지원 체계]

예비 마을기업 (1천만원)	▶	1~3차 지정		▶	우수사례 확산
		1차	신규 마을기업(5천만원)		우수 마을기업 (최대 7천만원)
		2차	재지정 마을기업(3천만원)		모두애(愛) 마을기업 (최대 1억원)
		3차	고도화 마을기업(2천만원)		
		↕			
		재도약 지원	재도약 마을기업(1천만원, 컨설팅)		
		연합체 지원	기초지자체 내 3개 이상 연합 마을기업(최대 3억원)		

※ 자료 : 행정안전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이 때 1차 지정은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마을기업의 양적 성장을 유도하고, 2·3차 지정과 우수사례 및 재도약, 연합체 지원은 기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마을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은 신규 마을기업을 130개소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나, 2·3차 지정 대상으로는 각각 20개소와 16개소만을 편성하여 기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을기업 지정 현황]

(단위: 건수)

구분	합계	1차	2차	3차
2021년	241	109	77	55
	(100%)	(45.2%)	(32.0%)	(22.8%)
2022년	238	113	75	50
	(100%)	(47.5%)	(31.5%)	(21.0%)
2023년	201	88	64	49
	(100%)	(43.8%)	(31.8%)	(24.4%)
2024년	116	-	70	46
	(100%)	(0%)	(60.3%)	(39.7%)
2025년	113	57	-	56
	(100%)	(50.4%)	(0%)	(49.6%)
2026년(안)	166	130	20	16
	(100%)	(78.3%)	(12.0%)	(9.6%)

※ 자료 : 행정안전부

□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을기업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마을기업 1~3차 지정단계별 비율은 1차 50% 내외, 2차 30% 내외, 3차 20% 내외 수준으로 전체 지정 건수 중 절반 이상을 2~3차 지정에 배정해 왔음.

□ 반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마을기업 전체 지정 건수 중 1차 지정에 78%에 달하는 130개소를 편성하여 과거에 비하여 신규 지정 건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그동안 마을기업의 숫자 증가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의 매출 증대나 일자리 창출 등 마을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91]

91) 2023 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2) 마을기업 자립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 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지적사항	○ 2030년까지 3,500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정부는 2023년 말 기준, 3,500개 대비 2,386개(68%)의 마을기업을 지정했음 ○ 다만, 지정취소 기업이 2023년 말 기준 586개에 달해 전체 5곳 중 1곳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 0원인 기업의 수도 2018년 199곳, 2021년 449곳, 2023년 526곳에 달하는 등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 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마을기업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시정요구 사항	○ 행정안전부는 운영 지표가 부실한 마을기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개선방안과 이와 연계한 차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

제22대국회 제429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09.01.)

마을기업 2·3차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 지정과 같이 지정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정 요건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사업계획,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차 지정 제도는 마을기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효과가 있음.

[마을기업 1~3차 지정 심사 기준별 배점]

(단위: 점)

구분	1차	2차	3차
공동체성	30	15	10
공공성	20	25	30
지역성	20	15	10
기업성	20	25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10
가점	5	3	3

※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2·3차 지정 비중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1~3차 지정단계별 지정 건수를 조정하고 마을기업 2·3차 지정 심사를 토대로 마을기업 관련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 마을기업 지원 방안 다양화 노력 필요

□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을기업에 대한 역량개발, 경영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판로지원’, ‘워크숍 등’, ‘연구용역’, ‘DB 운영’, ‘현장방문’을 위하여 2025년 예산액 2억원에 비하여 200% 증가한 6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교육훈련’,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92]

---

9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4.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이는 마을기업에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마을기업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예산액이 3배 증가하였으나 지원 방식은 판로개척을 통한 '마케팅' 지원에만 머무르고 있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함.

□ 참고로, 2026년도 예산안 중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판로지원 외에 창업, 성장(공간지원, 교육, 멘토링), 자금(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 IR대회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지자체,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교육(업무 담당자 교육,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업은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통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제한되어 있는 측면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마을기업의 특성과 사업추진 구조를 고려하여 마케팅 지원 외에 마을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2026년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주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내 용
사회적기업 육성[93]	창업지원	30,000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제공
	판로지원	4,963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차세대 판로플랫폼 운영
	성장지원	14,171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 사회적 가치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인식개선	504	사회적기업 브랜드 강화, 주간행사, 국제협력, 모니터링 및 조사협력
	자금지원	800	투자유치 강화,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기업 육성(지특)[94]	인건비 창출사업	32,100	인건비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93) 일반회계 사업

9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14.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1236-300), 섬 발전 협력 사업 추진(자율)(1241-300)

○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포괄보조 이관사업 보완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며, 지역자율계정으로 사업 집행시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 사업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① 정주생활지원금, ② 해상운송비, ③ 노후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보다 21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사업은 열악한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섬 지역에 정주를 유도하고 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과 ‘작은 섬 공도방지’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보다 2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1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 사업은 2022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되다가 2023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지특회

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되었고, 2026년 예산안부터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됨.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자율)	8,783	8,540	10,707	2,167	25.4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8,958	8,643	11,581	2,938	34.0
섬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5,808	5,808	7,542	1,734	29.9
작은 섬 공도 방지	3,150	2,835	4,039	1,204	42.5

나.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필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지역 연계 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을 수행하며,

①지역자율계정, ②지역지원계정, ③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세종특별자치시계정 총 4개의 계정으로 구분됨.

□ 이 중 재정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으로, 권역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하고 있음.[95]

□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 사업과 섬 발전 협력사업(자율)은 2026년 회계연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편성 절차** 측면에서, 시·도지사는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

95) 기획재정부, 「2026년도 국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역균형발전 특별법」 및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상 절차를 위반한 문제가 있음.

□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시·도의 예산신청서 및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이후인 2025년 8월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지출한도를 새로이 정하지 않은 채 시·도에서 요구하는 예산액 전부를 일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또한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은 포괄보조 사업 이관에 따른 과소투자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별도한도 설정 및 사업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이 작성된 이후에 지역자율계정 이관이 결정되어 보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예를 들어,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의 정주생활지원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예산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인당 지급액이 전년대비 최대 66.6% 증가하도록 편성되었음. 그동안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과 정부재정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특정 사업에의 쏠림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정주생활지원금 1인당 지급액]

연도		2011	2018	2022	2023	2024	2025	2026(안)
1인당 지급액	단기 거주자 (10년 미만)	5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20만원
	장기 거주자 (10년 이상)		10만원	12만원	15만원	16만원	18만원	
소비자물가 총지수 (2020=100)		89.9	99.1	107.7	111.6	114.2	-	-

※ 자료: 통계청 국가발전지표 - 소비자물가상승률

□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시·도별 지출한도 배분방식을 공개할 뿐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지출한도액이 얼마인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국회의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출한도액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출한도액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어 예산안 편성의 투명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시·도 지출한도 배분모형]

$$\log(y_i) = \beta_0 + \beta_1 \log(\text{인구}_i) + \beta_2 \log(\text{면적}_i) + \beta_3 \log(\text{지방소득세}_i)$$
$$+ \beta_4 \text{노령인구비율}_i + \beta_5 \text{재정력지수}_i + \epsilon_i$$

* 각 변수는 최근 3년 값 평균

※ 자료: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둘째**,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집행** 측면에서, 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계정 이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으로서 포괄보조사업의 성격을 가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됨.

□ 이에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지역자율' 계정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정부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별도 조정 없이 검토의견만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지역지원’ 계정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부처에서 그 집행실적을 관리함.

□ 그런데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섬 발전 협력사업(자율)’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하는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의 내역사업인 ‘섬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및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연차별·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의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96]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하

---

9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

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음.

□ 이는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이 서해 5도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등에 노출된 서해 5도 주민에 대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임.

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체류지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③ 정주생활지원금은 그 지급대상자별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
2. 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배우자

④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주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방법·시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8만원으로 한다.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정주생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는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주생활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액 일부를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할 계획임.

□ 그러나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된 예산이 부처에 의하여 조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이는 해당 사업이 그동안 정부의 수요 관리 및 기능 조정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이관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처와의 협의나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지역자율계정으로 일괄 이관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포괄보조 이관사업 보완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며, 지역자율계정으로 사업 집행시에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경제실】

15. 지역금융활성화 (1349-300)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제재처분 및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소송대응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나, 그 예산규모가 충분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금융활성화’ 사업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97]의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8,700만원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심의회 운영 및 행정쟁송 대응’ 내역사업이 4,700만원 규모로 신설되었고,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제도개선’ 내역사업이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이 계상되었음.

97)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제사업을 담당하며, 「대한지방공제회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금융활성화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
지역금융활성화	87	87	87	114	27	31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제도개선	40	40	40	20	-20	-50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47	47	47	47	0	0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심의회 운영 및 행정쟁송 대응	-	-	-	47	47	순증

나. 충분한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행정쟁송 대응 예산 확보 필요

□ 내역사업인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심의회 운영 및 행정쟁송 대응’ 사업은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직접제재 처분 및 조치를 위한 심의회 운영과 제재 불복에 대한 행정쟁송 대응을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되었음.

□ 동 사업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제제심의회 운영비로 위원참석수당 540만원, 안건검토 수당 540만원,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등 1,680만원과 소송대응 비용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심의회 운영 및 행정쟁송 대응 예산안 내역]

○〔위원 참석 수당〕 150,000원 × 3명 x 12회 = 5,400천원 ○〔안건검토 수당〕 150,000원 × 3명 x 12회 = 5,400천원 ○〔자료 인쇄 및 소모품 등 구입〕 500,000원 × 12부 = 6,000천원 ○**〔소송 대응 등〕 5,000,000원 × 6회 = 30,000천원**

□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새마을금고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제재[98] 및 적기시정조치[99]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2026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임.

이러한 예산 편성은 개정된「새마을금고법」의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도모하고, 금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98)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99)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임.

□ 다만, 타 부처의 행정소송 대응 예산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다소 미흡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직접제재 및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불복시 행정소송 대응 예산으로 건당 500만원씩 6회의 사건을 예상하여 총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우선, 소송건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감독대상인 새마을금고 법인은 2024년말 기준 1,276개인데, 해마다 발생할 행정쟁송 건수를 예측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4년말 금융기관(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지주회사)의 수는 3,624개[100]로, 금융기관을 감독·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동 위원회는 최근 4년간 연평균 83건의 행정쟁송이 발생하고 있음.

100) 은행 53개, 보험 55개, 금융투자, 여신전문 1,030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2,207개, 금융지주회사 10개(출처: 금융감독원)

[최근 4년간 금융위원회의 행정쟁송 건수]

연도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가소송	헌법재판	합 계[1)]
2021	34	13	3	4	54
2022	32	23	3	3	61
2023	63	40	4	3	110
2024	82	21	1	2	106
4개년 평균	53	24	3	3	83

주1) 합계는 전체 소송건수 중 집행정지 사건은 제외한 수치임
※ 자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사업설명자료 Ⅱ-1

행정안전부의 감독대상인 새마을금고 법인 개수는 금융위원회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개수의 약 35%(1,276/3,624) 수준임에 반해 소송발생 건수는 6%(5/83)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어 다소 소송발생 건수를 낮게 예상한 측면이 있어 보임.

□ 한편, 건당 소송비용에 관하여 타부처의 소송대응 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건당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건당 1,250만원, 개인정보위원회는 건당 3,0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당 착수금 750만원과 승소사례금 55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음.

[최근 타부처 행정쟁송 예산안 내역]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위원회
행정소송 대응예산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 80건 × 선임료 1,250만원= **10억원**	○소송대응 : 4억 5,200만원 · 착수금: 39건 × 750만원 = **2억 9,250만원** · 승소사례금: 29건 × 550만원 = **1억 5,950만원**	○국가송무수행 : 8억원 · 진행중·신규 소송 등 대응: 25건 x 3,000만원* =**7억 5,000만원** * 23~25년도 소송 건당 평균 지출액
소송의 목적	○금융위원회 상대 소송(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행정심판 등)의 소송 수행	○식약처 소관 소송사건 수행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
기타	○기타소송(집행정지 사건) 대리인 선임 34건 × 선임료 250만원 = **8,500만원**	-	○송무 관련 법률·기술 등 전문가 검토 : 10건 x 500만원=**5,000만원**

※ 자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위원회 사업설명자료 Ⅱ-1

특히 새마을금고의 금융기관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의 법률분쟁 발생시 그 소송의 난이도가 평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당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위에서 언급한 타 부처의 사례를 참고하여 계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의 행정소송 대응 예산은 건수와 건당 소송비용 등의 측면에서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또한, 동 사업의 소송대응 예산안에는 행정소송 이외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응비용, 소송단계 이전에 법률자문 비용 등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직접 제재조치 등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불복에 대응할 행정쟁송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극적으로 실행할 우려가 있고, 행정안전부의 승소율 저하로 인한 남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는 결국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 및 적기시정조치 등에 대한 불복 행정쟁송시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행정쟁송 대응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1331-300)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 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과거 국회에서 해당 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였고, 지자체별로 제도 활성화 정도에 편차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내역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태와 지방재정 위험수준을 점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1,113	1,157	993	△164	△14.2
지자체재정분석 및 지방재정위기관리	498	499	445	△44	△10.8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체계적 관리	52	52	42	△10	△19.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70**	**73**	**47**	△26	△35.6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10	10	-	△10	순감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40	40	30	△10	△25.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운영	443	483	429	△54	△11.2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샵,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세부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및 제도 확산’을 위해 전년대비 2,510만원 감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치단체 컨설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 및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사업 세부산출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제도 확산	
○ 총액 : 48,100천원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자료인쇄비 : 10천원×400부×4회 = 16,000천원 ・워크숍 개최등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수당 : 355천원×10명×2회 = 7,100천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동영상 등 제작 : 25,000천원×1식 = 25,000천원	○ 총액 : 23,000천원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자료인쇄비 : 10천원×400부×4회 = 16,000천원 ・워크숍 개최등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수당 : 355천원×10명×2회 = 7,1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치단체 컨설팅	
○ 총액 : 25,000천원 · 컨설팅 관련 물품 구입 : 300천원×10회 = 3,000천원 · 컨설팅 책자 및 관련 자료 인쇄 : 10천원×30부×10회 = 3,000천원 · 컨설팅 전문가 수당 지급 : 300천원×5명×6회 = 9,000천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권역별 현장방문 : 130천원×6명×5회 = 3,900천원 · 평가지표 개발 등 간담회 : 30천원×20명×9회 = 5,400천원	○ 총액 : 25,000천원 · 컨설팅 관련 물품 구입 : 300천원×10회 = 3,000천원 · 컨설팅 책자 및 관련 자료 인쇄 : 10천원×30부×10회 = 3,000천원 · 컨설팅 전문가 수당 지급 : 300천원×5명×6회 = 9,000천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권역별 현장방문 : 130천원×6명×5회 = 3,900천원 · 평가지표 개발 등 간담회 : 30천원×20명×9회 = 5,400천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101],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행 여부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되었음.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공청회·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의

101)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 2025.6., p2

방법을 통해 지방예산의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102].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방법(예시)]

사업제안		사업선정		예산편성		예산집행		예산결산
주민	→	지자체 + 주민	→	지자체 + 주민	→	지자체 + 주민	→	지자체 + 주민
공모방식·공모외 방식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선정 및 정보공개		선정사업 편성 시 주민참여·정보공개		집행과정 주민참여 및 과정·결과 정보공개		결산과정 주민참여 및 과정·결과 정보공개

주) 이외에도 환류 과정에서 모니터링 회의 등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음.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 2025.6., p18

---

102)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 그런데,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액과 및 전체 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103].

[2023년 및 2024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전체 예산액 (A)	주민참여예산 예산액 (B)	비중 (B/A)	전체 예산액 (A)	주민참여예산 예산액 (B)	비중 (B/A)
서울	43,750,801	38,527	0.09	45,466,908	44,180	0.10
부산	16,658,129	18,855	0.11	17,619,856	15,185	0.09
대구	11,993,733	31,040	0.26	12,417,847	33,284	0.27
인천	14,657,191	35,214	0.24	15,885,809	13,063	0.08
광주	7,931,542	11,897	0.15	7,772,158	6,374	0.08
대전	7,671,938	16,746	0.22	7,787,862	12,104	0.16
울산	5,679,557	41,243	0.73	5,956,448	33,440	0.56
세종	1,260,621	541	0.04	1,181,394	16,563	1.40
경기	61,976,092	219,062	0.35	64,349,926	146,956	0.23
강원	13,379,630	45,139	0.34	15,225,965	49,056	0.32
충북	13,626,745	86,745	0.64	13,276,523	32,045	0.24
충남	18,072,902	68,621	0.38	18,732,868	57,985	0.31
전북	18,143,490	89,775	0.49	19,133,605	79,768	0.42
전남	19,481,012	78,610	0.40	21,247,408	64,782	0.30
경북	25,221,807	212,753	0.84	26,154,130	159,653	0.61
경남	24,499,219	144,914	0.59	24,737,434	127,960	0.52
제주	4,627,309	22,495	0.49	4,535,785	25,938	0.57
합계	**308,631,718**	1,162,177	**0.38**	321,481,926	918,336	**0.29**

주) 이는 일반회계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합계임

※ 자료: 행정안전부

103) 2023년 및 2024년 주민참여예산이 직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 세입여건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줄어든 측면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액은 연간 약 1조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임.

[최근 5개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민참여예산액	1,360,179	1,183,295	1,399,618	1,162,177	918,336
전체 대비 비중	0.49	0.38	0.41	0.38	0.29

※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4년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성과평가에 의하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등급인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85개로 전체의 76.1%에 달함[104)105)].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결과(2024년)]

(단위: 개)

우수	보통	개선필요	합계
22	36	185	243
(9.1%)	(14.8%)	(76.1%)	(100%)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104)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별도의 평가등급 없이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절대평가로 3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으로 평가하였음.

105) 다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평가는 자치단체별 순위나 등급을 구분하려는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한 뒤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제도를 보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하기 위한 평가라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2024년 자치단체 평가는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횟수 11회 이상, 예산학교 교육시간 21시간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등 평가기준을 다소 높게 설정한 부분이 있고, 현재 모든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지표(2024년 기준)]

구분		세부지표	배점
정량평가 (60점)	책임성(15점)	운영계획·사업선정 시 주민참여, 주민의견서 구성	8
		제안사업의 구체화, 결과환류, 포상·인센티브	7
	투명성(15점)	사회적약자·청년 참여, 집행·결산과정 참여 등	13
		웹페이지 운영	2
	민주성(15점)	주민참여예산기구 소집·지원기구·운영 등	9
		제안사업 총액 설정·공개, 주민 제안 확대 등	6
	전문성(15점)	예산학교 과정 및 교육시간	6
		홍보, 관련기관·단체 협력, 퍼실리데이터 활용	9
정성평가 (40점)	발전가능성(20점)	전년 대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과 결과	0~20 (5점 단위)
	우수사례발굴(20점)	우수시책 및 사례 개발·발굴 성과	
총점 (100점)		※ 주민e참여 시스템 사용/컨설팅 참여 및 환류 시 2점 가점	

주) 85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84점 이하 보통, 69점 이하 개선필요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106]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107].

106) 특히, 최근 3개년 컨설팅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3년간 매번 컨설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11개소인데, 이는 컨설팅 참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및 제도 활성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미흡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제도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107)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컨설팅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2025년부터는 컨설팅 대상 자치단체 선정 시 개선이 필요한 자치단체가 컨설팅을 받아 실질적으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임.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도입배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한 지역 간 운영편차 해소 및 관행적 사업운영 예방

○ **(사업기간)** 2018년~

○ **('25년 예산)** 2,500만원

○ **(참여현황)** ('22) 40개소 → ('23) 55개소 → ('24) 52개소

□ 사업방식 ('25년 기준)

○ **(일시/장소)** 7~10월(4개월간) /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장소

○ **(대 상)** 컨설팅 신청 자치단체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개선필요' 지방자치단체 중심

○ **(컨설팅단)**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교수, 시민단체 등)

○ **(진행방식)** 전문가와 담당자 간 1:1 맞춤형 컨설팅

○ **(추진절차)**

① 추진계획(안) 안내 및 수요조사	▶	② 추진계획 확정·안내 및 일정 협의	▶	③ 사전 점검 및 컨설팅 추진	▶	④ 결과 보고
자치단체 수요조사 (행안부→지자체)		신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일정 등 협의 (행안부↔지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점검 및 컨설팅 실시 (행안부→지자체)		컨설팅 결과 보고 (컨설팅단→행안부)
(7월)		(~8월)		(~10월)		(11월)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포스터 및 브로셔, 홍보 동영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동영상 등 제작에 관한 예산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108],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

10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에도 2025년에 제작될 주민참여예산 홍보 동영상 활용, 홍보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SNS 제작·홍보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도의 실질적 활성화가 미진한 상황에서 단순히 홍보 예산만을 삭감하고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과거 국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109], 예산편성·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110]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운영 수준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내역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109) 과거 국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고, 제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19%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0.8., p145)"고 지적하였음.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여부를 성과 평가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11, p235)"고 지적하였음.

110)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연번 53번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예산편성·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7.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1335-300)

○ 행정안전부는 신규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전략기획(ISP)수립 예산은 국비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간 시스템 구축 비용의 분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사업은 지방회계제도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실무자회의 및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1억 5,600만원 대비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의 요인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에 신규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정보전략기획(ISP) 예산 2억 4,200만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임.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91	156	156	388	232	148.7
지방회계제도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21	63	63	47	△16	△25.4
계약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70	93	93	64	△29	△31.2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	-	277	277	순증

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비율의 조속한 확정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재산[111] 등을 의미함.

1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현행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 시스템은 텍스트 기반으로 구축되어 공간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타 시스템과 연계가 미흡하며, 대국민 포탈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감사원은 국유재산 수준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및 온라인 포탈을 구축하고 공개하도록 권고하였고, 경상북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또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건의해 왔음.

□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예산으로 신규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 시스템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예산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 동 시스템은 AI·GIS[112] 등 기반으로 구축되어 공간정보의 제공·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며, 대국민 포탈도 지원할 예정임.

---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112)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경 사항]

	現 시도·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행정 내부	◦ 텍스트 기반으로 구축되어 공간정보 미제공, 다른 시스템과 연계* 부족 * 공유재산 총조사('24~'25년)시 공유재산대장과 3종공적장부 간 불일치 163만 건 발굴 ◦ 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한 전·후 검증기능* 부족으로 횡령 등 재정누수 발생 * (예시) 매각시 낙찰가격-계약서상 가격-징수액-수납액 일치 여부 자동확인 등	◦ AI·GIS 등 기반으로 구축되어 공간정보 제공·활용, 다른 시스템*과 연계 강화 * 3종공적장부(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온비드, 위택스, K-Geo, e호조, 도로명주소, 토지이용계획 등 ◦ 대장 간 불일치 누락재산 자동 분석·발굴 ◦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증기능* 도입 및 이상징후 확인 시 알림기능** 강화 * (예시) 매각 단계별 증빙자료 첨부여부 검증, 매각 단계 간 입력수치 일치 여부 등 확인 ** (예시) 감사실·총괄재산관리관에 자동 통보
대민 서비스	◦ 공유재산 관련 대국민 포털 없음 ◦ 공유재산 기본현황, 유휴재산 정보 등이 엑셀 형태로 지자체별 누리집에 공개되어 식별 곤란 ◦ 대부·매각은 대면 계약으로 진행되어 원거리 거주자 불편 발생	◦ 공유재산 관련 대국민 포털 구축 ◦ 유휴재산 및 사용·대부 중인 공유재산 현황 실시간 공개, 온라인 수의계약 기능 도입 ◦ 공유재산의 입찰, 계약, 사용료·대부료 납부 등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유관 사이트 연계
디지털 전환	◦ 최신기술을 활용한 관리기능 활성화 요구에도 미활용 중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무단점유 적발, 신규시설 최적 입지 도출 등 신규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지자체 공유재산 효율적·체계적 관리 지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또한, 현재 일부(2025년 10월말 기준 32개) 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의 미구현, 타 시스템 연계 부족 등[113] 현행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다만, 동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동 시스템의 정보전략계획수립(ISP)에 2억 4,200만원이 소요되고,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개발비용으로 85억 3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보전략계획수립(ISP) 비용은 국비에서 부담하고,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개발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동 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예정임.

113) 이투데이, '전북도 공유재산관리 엉터리', 2025. 7. 17.
KBS 등, '전남 시·군 공유재산 관리 부실 개선 시급', 2024. 1. 31.
서울신문, '서울시의원 "135조원 서울시 재산, 제대로 관리해야"', 2023. 11. 07.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6년			2027~2028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8,745	242	8,503	242	242	-	8,503	-	8,503
ISP(국비)	242	242	-	242	242	-	-	-	-
시스템 구축(지방비)	8,503	-	8,503	-	-	-	8,503	-	8,503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 개발비 85억 3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협약 및 약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2025년 10월말 기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114]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간의 비용 분담비율[115]에 대한 이견 등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공유재산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은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거 '차세대 지방세징수시스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경우 지방세 징수 및 지방재정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116]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비율 국비가 투입[117]되었다는 점을 감

114) 당초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태로 인하여 해당 설명회가 연기되었음.

115)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규모,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할 예정임

116)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안하면,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일부 국비가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임.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 비용 부담비율에 대한 이견,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부담 요구 등에 의해 사업지연 및 추가 국비 부담의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와의 명확한 비용부담 협약 또는 약정을 통해 비용부담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117)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총사업비 1,956억원(국비:623억원, 지방비: 1,333억원)
차세대 지방세징수시스템: 총사업비 2,678억원(국비:692억원, 지방비: 1,986억원)

18.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349-301)

○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최근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고려할 때 과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예산안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국비 지원율이 상향되었고 최근 해당 사업을 둘러싼 정책환경 및 경제여건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의 국가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51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	5,125	5,125	순증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	-	4,935	4,935	순증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	-	164	164	순증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	-	26	26	순증

주) 2026년도 예산안에는 세부사업이 각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가독성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통합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당초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이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였음.

□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운영비 명목의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있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 **(도입배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사업기간)** 2023년~
- ○ **(’26년 예산)** 102억원 (국비 51.2억, 지방비 51.2억)
- ○ **(지원현황)** 11,001개소(’25.7 기준)

□ **사업방식** (’26년 기준)
- ○ **(선정방식)**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선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선정
- ○ **(지원내용)** 시·도별 착한가격업소 운영비* 보조
  - * 업종별 주방용품, 세탁·청소용품, 미용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85만원 한도)
- ○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지원율 30%→50%)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내 설명자료를 재구성

□ 구체적으로, 2025년 7월 기준 11,001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외식업 업소가 6,572개소(59.7%), 그 외 업소가 4,429개소(40.3%)를 차지하고 있음.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25.7월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외식업		외식업 外							
	소계	비중	소계	세탁	이용	미용	목욕	숙박	기타	비중
11,001	6,572	59.7%	4,429	210	311	1,599	113	109	315	40.3%

※자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 착한가격업소 안내 → 지정현황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고려한 적정 예산 계상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년대비 약 21억원 증액된 5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증가율 67,4%).

[최근 3개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전년대비 증감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785	1,785	3,060	3,060	5,125	67.4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12,058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인센티브 85만원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원대상 업소 수는 전년의 12,000개소와 유사한 수준이나 종전 대비 국비 지원율을 30%에서 50%로 20%p 상향하여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는 물가안정 정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보조율을 상향하였다는 입장임.

[최근 4개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업소 수		1개소 당 지원금액		국비지원율		예산액
2023년 예산	5,895	×	85만원	×	30%	=	1,530
2024년 예산	7,000						1,785
2025년 예산	12,000						3,060
2026년 예산안	12,058				50%		5,125

주) 착한가격업소 대상 물품지원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시작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그런데, 최근 5개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2026년도 지원대상 착한가격업소 개소 수인 12,058개소는 과소한 측면이 있어 보임.

[최근 5개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6월)
합 계		5,895	6,146	7,172	9,723	10,954
	기지정	-	-	6,146	7,172	9,723
	신규지정	-	-	1,685	3,210	1,673
	취소	-	-	659	659	442
전년대비 증가폭		-	251	1,026	2,551	1,231
	증가율	-	+4.3%	+16.7%	+35.6%	+12.7%

주 1) 2025년 8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 11,134개소
2)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세부 지정 현황에 관한 자료 없음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연평균 증가폭이 1,923개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12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건수는 약 11,646개소, 2026년 12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건수는 약 13,569개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3개년 간 착한가격업소 수가 대폭 증가하여 2026년도 이후에는 착한가격업소 수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지원 대상 업소 수를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는 입장임.

□ 다만, 2023년 8월 행정안전부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개편[118]한 이후 신규지정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지정 주체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행정안전부가 지정 건수를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가 사전에 예측한 수준 이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규모를 실제 수요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118)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총점을 110점에서 55점으로 하향하고, 기존 지정 기준 중 착한가격 메뉴 수 기준(25점)과 이용자 만족도 기준(20점)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위생·청결 기준(20점)이 전체 점수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단순히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가격수준이 저렴하기만 한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 용이해져 착한가격업소 지정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후단의 참고자료 1 참조

참고1 2023.8.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2022.12. 기준	2023.8. 기준
□ 가격(30점)	□ 가격(30점)
① 가격수준(20점)	① 가격수준(20점)
② 가격안정노력(10점)	② 가격안정노력(10점)
□ 위생·청결(20점)	□ 위생·청결(20점)
① 주방 등(10점)	① 주방 등(10점)
② 매장 내(7점)	② 매장 내(7점)
③ 화장실(3점)	③ 화장실(3점)
□ 공공성(5점)	□ 공공성(5점)
□ 메뉴비중(25점)	<삭 제>
① 착한가격메뉴 개수(25점)	
□ 이용만족도(20점)	
□ 가점(10점)	
총합 (110점)	총합 (55점)

주) 2023.8 이전은 110점 중 70점 이상일 경우, 2023.8 이후는 55점 중 40점 이상일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가능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참고2 2025년 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구분	지표정의	평가기준
□ 가격(25점)		
① 가격수준(25점)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신 규) 평균가격 미만 25점 (재지정) 평균가격 미만 20점
② 가격안정노력(+5점)	평균가격 미만 유지 기간	(신 규) 미평가 (재지정) 2년 이상 5점 1~2년 3점
□ 위생·청결(25점)		
① 주방·매장 공통(12점)	·주방용품 관리상태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주방 및 매장의 청결상태,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등 평가
② 주방(4점)	·주방 바닥의 물기 처리상태, 배수시설의 청결도 ·식재료 구분 보관 관리상태	·주방의 청결상태를 고려하여 평가
③ 매장(6점)	·식탁, 의자 등 청결 상태 ·냅킨통, 소스통 등 청결 상태	·매장 내 용품 등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
④ 화장실(3점)	·세척제, 화장지·에어타월 구비여부, 수세, 소독, 환기 등 관리상태	·화장실 청결 상태 등 고려하여 평가
□ 가·감점		
① 가점(+3점)	·지역화폐가맹점(1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1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점)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② 감점(-2점)	·착한가격메뉴 표시(-1점)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1점)	·착한가격메뉴 및 현판 미부착시 감점
총합 (50점)		

주 1) 5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2)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미지정 가능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필요

□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해 2024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고, 동 기관은 2024년 7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효과성·타당성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미지정 일반업소 대비 생존율이 높아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업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설명임. 또한, 주요 음식의 평균 가격을 비교할 때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의 가격대가 비지정 일반업소 대비 낮아 물가 안정 효과가 존재한다는 분석임.

동시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의견수렴 채널을 마련하며,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주요 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효과

○ (매출액) 매출 증대에 긍정적

- 착한가격업소의 69.8%(4,410개 업소) 매출액*이 전년대비 2,800만원 증가했고, 31.1%(1,995개 업소)는 매출이 평균 1,500만원 감소

* 2022년도와 2023년도 신용카드 매출액

○ (생존율) 미지정업소 대비 높은 생존율

-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5년차 생존률은 76.58%, 미지정 일반업소의 5년차 생존률은 53.46%로 착한가격업소의 5년차 생존률이 23.12%p 높음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착한가격업소	93.49%	90.15%	86.52%	82.25%	76.58%
미지정 일반업소	88.55%	79.29%	69.34%	61.77%	53.46%
차이	4.94%p	10.86%p	17.18%p	20.48%p	23.12%p

○ (물가안정) 미지정일반업소 대비 저렴한 메뉴 가격

- 2023년 12월 기준, 주요 음식의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착한가격업소의 모든 품목이 미지정 일반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대를 형성

구분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미지정 일반업소 평균가격(원)	9,870	9,482	8,124	13,728	6,490	15,810	8,181	3,046
착한가격업소 평균가격(원)	6,804	7,335	7,110	11,389	4,897	13,138	6,347	2,882
차이(원)	3,066	2,147	1,014	2,339	1,594	2,672	1,834	165

□ 정책제언

○ (법제·예산) 착한가격업소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 필요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외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

○ (환류체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체 대상 정기적 의견수렴 채널 마련

-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향성, 높은 자진취소율 완화 방안,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 검토 필요

○ (협업체계) 지역 물가 안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유관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 마련, 데이터·정보 공유 및 지속적 지역 물가 모니터링을 한 선제대응 필요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2024.7.

□ 그런데, 해당 연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과보다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이었다는 점, 국비 지원이 시작된 2023년과 직전 연도만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 효과의 지속성 및 장기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개편 이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건수는 2022년 약 6,000개소에서 2025년 9월 약 11,000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양적 지표만 놓고 보았을 때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정착하여 물가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의 타당성은 있어 보임.

□ 다만,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되는 업소가 최근 1년간 약 800개소로 2023년의 659개소 대비 증가하였다는 점,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착한가격업소 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영세한 업소의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지원 사업이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1년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신규지정	취소업소	취소사유			
			휴·폐업	기준미달	자진취소	행정처분 및 기타
서울	725	157	83	27	11	36
부산	173	38	9	9	1	19
대구	170	39	24	8	-	7
인천	191	38	27	4	3	4
광주	141	29	21	-	2	6
대전	137	37	25	4	-	8
울산	125	24	11	7	2	4
세종	11	5	4	1	-	-
경기	916	110	61	24	8	17
강원	137	58	21	18	4	15
충북	178	17	13	4	-	-
충남	171	39	24	7	1	7
전북	123	32	16	14	1	1
전남	157	41	18	19	1	3
경북	137	47	24	10	7	6
경남	367	38	28	4	3	3
제주	244	36	25	5	3	3
합계	**4,103**	**785**	**434**	**165**	**47**	**139**

주) 2024.7월부터 2025.6월까지 통계임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등록기간별 착한가격업소 현황('25.8)]

(단위: 개소)

구분	업종							
	외식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합계
1년 미만	**2,616**	**21**	**39**	**386**	**28**	**34**	**169**	**3,293**
1년~3년미만	**2,617**	**40**	**89**	**475**	**26**	**41**	**102**	**3,390**
3년~5년미만	661	23	20	144	12	10	23	893
5년~10년미만	924	36	47	207	12	15	16	1,257
10년 이상	1,620	93	121	410	35	8	14	2,301
합계	8,438	213	316	1,622	113	108	324	11,134

※ 자료: 행정안전부

□ 뿐만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지수[119] 등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나타나 행정안전부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던 때와 비교하여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춰 사업의 규모, 지원 단가 등을 조정하고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9) BSI지수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로, BSI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인 경우 경기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함(『2025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동향]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2023	5.0	4.7	4.2	3.7	3.4	2.7	2.4	3.4	3.7	3.8	3.3	3.2	3.6
2024	2.8	3.1	3.1	2.9	2.7	2.4	2.6	2.0	1.6	1.3	1.5	1.9	2.3
2025	2.2	2.0	2.1	2.1	1.9	2.2	2.1	1.7	2.1	-	-	-	1.9 (전망)

주) 이는 전년동기 대비 지표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테마별통계지표→소비자물가지수

[월별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체감지수 동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3	59.8	56.2	69.9	69.4	70.3	63.9	57.3	63.6	70.5	69.6	63.6	59.0	64.4
2024	48.1	50.0	64.5	64.8	64.4	57.3	54.5	55.4	65.6	69.1	62.4	53.7	59.2
2025	47.6	51.3	66.5	63.6	70.0	67.6	61.5	72.3	76.6	-	-	-	64.1

주) 체감지수 > 100 이면 전월대비 호전되었다고 체감, 체감지수 < 100이면 악화되었다고 체감

※ 자료 : 중소기업벤처부→주요정책→정책자료→정책연구→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월별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전망지수 동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3	77.8	72.5	93.9	91.3	88.9	80.8	73.7	83.6	98.0	95.7	89.4	84.9	85.9
2024	79.5	65.2	74.6	78.1	73.4	67.4	57.9	56.6	82.8	83.9	79.8	79.3	73.2
2025	75.5	69.3	86.6	86.9	79.8	79.1	76.2	76.7	88.3	86.8	-	-	80.5

주) 전망지수 > 100 이면 전월대비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 체감지수 < 100이면 악화되었다는 의미

※ 자료 : 중소기업벤처부→주요정책→정책자료→정책연구→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 행정안전부는 종전 ‘착한가격업소 지원 활성화 사업’이 일반회계의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당시 성과지표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건수’를 설정하였음. 2025년도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 ‘착한가격업소 재지정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120] 해당 지표 또한 국비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임[121].

□ 2026년도 예산안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는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용역,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0)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국회공통요구자료에 의하면 해당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목표	-	90.1	90.1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값	동일 업소에 대해 전년대비 당해연도 지정률
실적	90.8	-	-		
달성도	-	-	-		

121) 특히,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업소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규 지정 업소의 증가폭이 훨씬 커 전체 착한가격업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지정 업소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산식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성과지표 달성이 용이해질 수 있으므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보임.

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349-306)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5%의 할인율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재정여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상품권 국비지원 신청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성을 고려하여 재정여력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의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해당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할인판매 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1,500억원이 순증되었음[12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예산안 내역]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299,993	-	1,000,000	1,150,000	1,150,000	순증

122) 2025년 예산현액 대비로는 1,500억원 증액 되었음

□ 동 사업은 2018년도에 군산·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면서 시작되었음. 2019년도에는 884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그 규모가 1조 2,522억원까지 확대되었음. 그 이후에는 2022년 8,050억원, 2023년 3,522억원, 2024년 2,998억원으로 점차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2025년 1조원, 2026년 예산안에는 1조 1,500억원으로 그 규모가 다시 확대되었음.

나.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비부담률 차등화 필요

□ 동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불교부단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4가유형으로 구분하여 할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임.

각 지역의 유형별로 국비보조율을 살펴보면, 불교부단체는 국비 미지원,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의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지방비부담율은 불교부단체는 자율이고, 나머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일률적으로 5%로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음.

(단위:백만원, %)

구분	유 형	발행규모[1)]	국비보조율 (국비부담액) (A)	지방비부담율 (지방비부담액) (B)	할인율 (A+B)
2026년도 예산안	불교부단체	자율(미지원)	-	자율	**자율**
	수도권	-	3%	5%	**8%**
	비수도권	-	5%	5%	**10%**
	인구감소지역	-	7%	5%	**12%**
	합 계	24,000,000	4.8% (1,149,400)	5% (1,200,000)	**9.8%**

주1) 발행규모 합계는 실제 지자체별 발행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 5%가량의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높은 구매할인율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유인을 높여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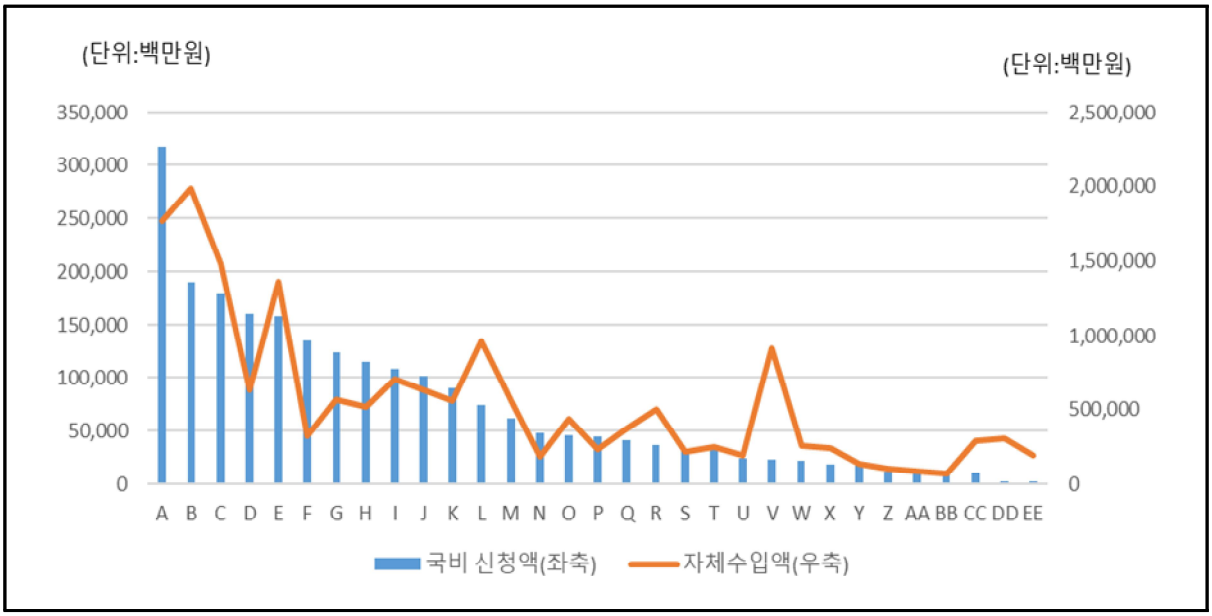
□ 다만, 불교부단체 및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간의 재정여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각각 발행규모의 5%정도의 지방비를 부담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재정여력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신청규모와의 관계는 지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비지원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상품권 발행지원 신청액의 현황을 참고할 수 있음[123].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29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액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신청액이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자체수입액이 많을수록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신청규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123)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규모가 1조원이고,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국비지원비율은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지방비 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로 고정하는 등 2026년 본예산안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었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집행시 경기도 29개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신청액과 자체수입액 비교]



주1) 경기도에 속한 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임
2) '국비 신청액'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집행시 각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에 따른 국비지원 신청액을 의미함
3) '자체수입액'은 2023년도 결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신청액이 자체수입액과 비례하여 나타나는 경향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비를 부담할 여력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많은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 각각의 재정여력과 상관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일률적으로 5%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면, 상품권의 국비지원이 재정여력이 양호한 자치단체에 몰

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124]에 규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지역보다 지방비 부담비율을 경감하는 등의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

20.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2231-301)

○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의 내역사업인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사전 절차인 실시설계가 예산안 제출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아 국회가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조성’ 사업은 계획된 세부 일정 간 시간적 간격이 빠듯하여 사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부청사 노후시설등정비’ 사업은 정부청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정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안전한 정부청사 조성을 위한 노후 시설물 등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9억 5,000만원이 증액된 20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부청사 노후시설등정비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16,051	16,227	20,177	3,950	24.3
시설점검 및 진단	1,619	2,018	1,818	△200	△9.9
노후시설정비	10,685	8,904	14,384	5,480	61.5
방호보안시설보강	2,389	4,361	2,608	△1,753	△40.2
편의시설정비	1,359	944	1,367	423	△44.8

※ 자료: 행정안전부

나.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필요

□ 내역사업인 ‘노후시설정비’의 내내역사업인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청사 건물을 재정비하여 정부청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4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1억 4,200만원을,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정부청사 노후시설등정비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16,051	16,227	20,177	3,950	24.3
노후시설정비	10,685	8,904	14,384	5,480	61.5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	140	4.318	4,178	298.4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	140	3,142	3,002	214.4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 조성	-	-	1,176	1,176	순증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의 두 내역사업은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필수적인 사전절차가 미이행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 첫째,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청사 어린이집 통·폐합에 따른 유휴 공간을 민원동, 회의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청사 공간의 효율성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6년 1월 공사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2026년 하반기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임.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개요]

□ **건립개요**
- ○ **(사업목적)** 청사 어린이집 통·폐합에 따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사 공간의 효율성 제고
- ○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규　　모)** 지상 3층, 연면적 1,768㎡
- ○ **(사업기간)** 2025년 ~ 2026년
- ○ **(총사업비)** 32억 8.200만원
- ○ **(구성안)** 옥상휴게공간(404㎡), 1층안내데스크, 대기공간 등(331㎡), 2층접견실, 편의시설 등(581㎡), 3층회의실(581㎡), 지하물품보관창고(275㎡) 등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2025년	2026년
실시설계비	140	140	0
공사비	2,900	0	2,900
감리비	22	0	22
시설부대비	10	0	10
자산취득비	210	0	210
합 계	**3,282**	**140**	**3,142**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025년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검토 사항 및 일부 과업이 추가됨에 따라 실시설계 절차가 지연되었고[125], 이로 인해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함) [126]은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를 반영하되,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125)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외부동선계획 검토 및 입수시설 확정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용역이 일시중지되었고, 민원동 창호 신설 및 창호교체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 과업이 추가되어 용역이 재개되었으며, 해당 용역은 2025년 11월 13일 완료될 계획이라는 입장임.

126) 「편성지침」p281

□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 반영

○ 토목공사의 경우 선보상 후착공의 원칙을 적용하되, 보상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보상 2차년도부터 공사비 반영

○ '2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경우 또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 반영

완료되고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높거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2026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대규모 건축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아 「편성지침」에 반하지는 않아 보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설계 이후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하는 「편성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면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실시설계를 2025년 11월까지 최대한 완료한 뒤 2026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당해연도 4월부터 공사를 시공하겠다는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4~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임.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계획]

구분	계획
실시설계 용역	2025.2. ~ 2025.11. (9개월)
건축협의 및 공사계약 체결	2026.1. ~ 2026.4. (3개월)
건축공사	2026.4. ~ 2026.9. (최대 5개월)
준공	2026.9.

※ 자료: 행정안전부

□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협의 절차가 소요되어 공사가 지연되거나 집행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차년도 예산액 규모를 확정하고 연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조성'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정부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의 회전반경(5.45m)이 현행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회전반경(6m)[127]를 미충족하여 차량 진출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상 일부 구역에 진출입 경사로를 신규 설치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실시설계비에 1억 5,300만원, 공사비에 10억원, 감리비 및 부대비에 각각 1,700만원과 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127)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조성 사업 개요]

□ 건립개요
○ (사업목적) 지하주차장 진출입로(2차선, 2개소)를 신규 조성함으로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 기준을 충족 및 이용여건 개선
○ (위　　치) 대전광역시
○ (사업기간) 2026년
○ (총사업비) 11억 7,600만원
○ (산출내역) 공사비1,000백만원, 실시설계비153 백만원, 감리비17백만원, 부대비6백만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조기 발주하여 각각 2026년 5월 해당 절차를 마무리한 뒤, 7월까지 건축협의 및 공사계약 체결 절차를 완수하여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임.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조성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계　　획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체결	2025.12.~2026.2. (2개월)
실시설계 용역	2026.2.~2026.5. (4개월)
교통영향평가	2026.2~2026.5. (4개월)
건축협의 및 공사계약 체결	2026.5.~2026.7. (2개월)
건축공사	2026.8.~2026.11. (4개월)
준공	2026.11.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경우 세부 절차 간 시간적 간격이 다소 촉박하게 설정되어 있어 특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구체적으로, 사전절차인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협의 과정에서 인허가기관이 보완의견을 제시할 경우 공사계획이 변경되고 계약 발주·체결 절차가 지연되어 건축공사가 연내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공사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128].

□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공사는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계약이 9월 이후 체결된다면 차년도에는 그 선급금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때,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사 계약의 선급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29].

□ 행정안전부는 사전절차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기관과 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12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6년 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비·공사비·감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인허가기관(대전시 서구청 건축과·교통과 등)과 소통을 통해 공사 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129)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실시설계비와 공사감리비의 동시계상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편성지침」[130]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6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130) 「편성지침」, p278
25. 설계비(420-01·420-02목)
2. 세부지침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2036-508)

○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예산편성을 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동 세부사업으로 일원화 또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방식의 타당성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은 전쟁·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시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요 전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6억 1,400만원 대비 27억 5,900만원이 증액된 4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18,982	1,614	4,373	2,759	170.9

나. 국가재해복구센터로서 기능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칭 변경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의 일원화 편성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이하 “공주센터”)는 전쟁·재난·재해 등 국가 비상사태 시 대전 및 광주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에도 국가 중요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 재해복구(이하 “DR”) 데이터센터로서, 2008년 7월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131]”상 세부과제 중 ‘통합전산센터 백업센터 구축’[132]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었음.

□ 공주센터 건축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총 1,545억원이 집행되어 2023년 완료되었고,[133] 동 사업은 공주센터에 전산환경을 구축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이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총 8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13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년까지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 정부,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2008.7.22.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옥션」의 해킹사건으로 1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유포 등으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7.22(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132) 「안전하고 신뢰받는 U-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 2008.7.22. p.22.
- (아젠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강화, (추진과제) ⑤통합전산센터 보호체계 강화, (세부과제) ㉑통합전산센터 백업센터 구축

133) 당초 통합전산센터 백업센터 추진 당시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타당성 재조사 2회, 사업자 선정 유찰 7회,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2019년 4월에서야 착공하였고, 착공 이후에도 기반환경 공사비 증액 및 정보화 사업비 등록과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을 거치면서 2023년 5월에 공주센터가 완공됨으로써 건축 단계에서 11년 정도 지연됨.

□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24.12월까지 재해복구시스템, 통신망, 통합보안시스템 및 운영통합시스템 등 공통인프라의 구축과 대전·광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급 기관 재해복구시스템과 소산용 내화금고를 공주센터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11억 2,800만원) 외에 전산장비 구축 및 재해시스템 이전을 위한 예산(4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 기간도 2024년 12월에서 2025년 9월까지로 변경하였음.

□ 이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에 대한 재해복구 대책[134]에 따라 수립된 ISMP 보완 및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음.

□ 동 사업의 2025년 10월 23일 현재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2억 700만원 중 15억 8,100만원이 집행(집행률 21.9%)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2월말까지 총 69억 4,300만원(예상집행률 96.3%) 집행 예정으로 밝히고 있는바, 공주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은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134) 2023년 11.1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와 광주센터를 연결하는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행정전산망 범정부 대책 TF를 구성하여 2024.1.31. 상시 장애 예방, 신속 대응 복구, 안정 기반 강화의 3대 분야에 12개 대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여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2025년 및 2026년도 공주센터 신축사업]

(2025.10.23. 기준,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집행현황						2026년 예산안
세부사업 (내역사업/내내역사업/비목)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집행액)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1,614	5,593	7,207	1,581 (95)	4,373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 * 10월말 잔금 4,429 집행예정		**486**	**5,593**	**6,079**	**1,571 (85)**	**-**
전산환경 구축	공사비 (420-03)	-	385	385	232 (-)	-
	자산취득비 (430-01)	401	5,082	5,483	1,254 (-)	-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일반용역비 (210-14)	-	16	16	- (-)	-
감리비	감리비 (420-04)	-	110	110	- (-)	-
조달수수료	시설부대비 (420-05)	85	-	85	85 (85)	-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11월 311, 12월 622 집행예정		**1,128**	**-**	**1,128**	**10 (10)**	**4,373**
전산장비 운영	관리용역비 (210-15)	1,128	-	1,128	10 (10)	3,794
전산장비유지관리	관리용역비 (210-15)	-	-	-	-	557
조달수수료	일반수용비 (210-01)	-	-	-	-	22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는 공주센터의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4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공주센터는 국가 재해센터로서 청사는 2023년에 완공되었고, 동 사업은 정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공주센터 신축사업이라는 명칭은 사업 내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2036-503) 사업에서 '통합스토리지 DR 구축' 예산(3억 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통합스토리지 DR 구축은 대전본원에 입주한 1·2등급 정보시스템 중 DR이 없는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시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135] 해당 예산을 동 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동 세부사업으로 일원화 또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방식의 타당성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35) 2025년도 예산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예산을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2036-503)과 '국정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2036-500)'에서 각각 분산·편성하고 있으나,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은 Active-Active 방식 DR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2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사업(2036-503)

○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사업을 비롯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구체적·체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연도별 상황에 맞춰 예산 수립 기준 변경 및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연속성이 미흡해 보이고, 정부 부처별 수요에 의존하는 등 총괄적·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바,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구축에 관한 중단기 계획을 조기에 확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 배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되어 운영 중인 52개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관리 지원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2,721억 4,900만원 대비 19억 900만원이 감액된 2,70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정보화)	224,103	272,149	270,240	△1,909	△0.01

□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사업은 2026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 예정인 각 부처 신규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술기반의 인프라 환경으로 일괄 통합구축하고, ‘20～’25년까지 각 부처 신규 전산장비 통합구축 시 임차사업으로 관리원에 도입된 전산장비의 잔여 임차료를 연차별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830억 9,900만원 대비 150억 9,800만원이 증액된 98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76,75	83,099	98,197	15,098	18.2

나. Active-Active 방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투입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추진 필요

□ ‘재해복구시스템(이하 “DR”)’이란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서비스 오류, 사이버 공격 등 시스템 재해 등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핵심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 수준에 따라 ⅰ)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고 그 외 서비스

를 위한 정보자원은 확보하지 않거나 장소만 확보하는 등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스토리지 DR’, ii)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원격지에 구축하여 스탠바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주기적(수 시간~1일)으로 백업하는 ‘서버 DR’, iii) 주센터와 동일한 시스템을 원격지와 떨어진 보조센터에 구축하여 Active-Active 방식으로 실시간 동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센터 가동 중단 시 보조센터에서 서비스를 연속성 있게 유지하는 ‘Active-Active DR(이하 “센터이중화”)’의 3가지 유형이 있음. DR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유형별 특성]

유형	특성
스토리지 DR	•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고, 이외 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은 확보하지 않거나 장소 등 최소한으로만 확보
서버 DR (Active-Standby)	•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원격지에 구축하여 Standby 상태로 유지 • 데이터는 주기적(약 수시간~1일)으로 백업
센터이중화 (Active-Active)	• 주센터와 동일한 시스템을 원격지에 떨어진 보조센터에 구축하고, Active-Active 상태로 실시간 동시 서비스 제공 • 주센터 장애·재해발생 시 보조센터에서 서비스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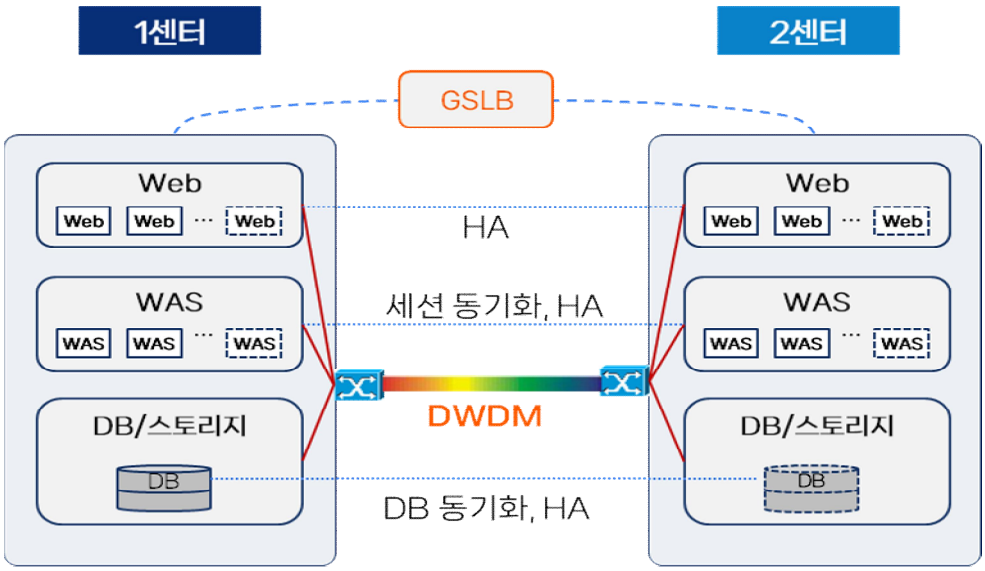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이 중 ‘센터이중화’란 하나의 서비스를 원거리의 여러 지역에서 동일하게 구축 및 동시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곳(대전·광주·

대구 센터)의 시스템이 사용자 요청을 분산처리함으로써 1개 센터의 과부하를 막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고, 한 곳의 시스템이 장애나 재해 등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다른 센터의 시스템이 서비스를 계속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스토리지 DR이나 서버 DR보다 재해복구에 더 유리함. 반면, 시스템 구축에 초고속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 등 인프라 요소와 업무서비스의 데이터 동기화기술 적용 필요 등으로 고비용 및 고난이도 기술력이 요구됨.

또한 주센터와 보조센터 간 작동 가능 거리 제한이 있어, 공주센터에 Active-Active 구축 가능한 주센터 정보시스템은 대전본원에 입주되어 있는 시스템이 해당함.

[센터이중화 시스템 구성도]



주: GSLB는 사용자의 요청을 적절한 서버·센터로 분산시키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기술로, 센터 간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 관리 기능을 제공함.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2025.10월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DR 구축현황을 보면, 대전본원은 47개 업무, 광주센터는 30개 업무 등 총 77개 업무에 대해 DR이 구축되어 평균 구축률은 전체 업무 수(1,271개) 대비 6.1%에 불과함. 구축방식은 주로 서버 DR(52개 업무, 67.5%)이고, 나머지는 스토리지 DR(25개 업무, 32.5%)임.

반면, '센터이중화' 방식은 전혀 없는 상태인바, 지진 등 대형재난·재해 및 사이버공격 등 유사시 국가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센터이중화 방식의 장점을 감안할 때, 관련 사업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음.

[2025년 10월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DR 현황]

구분	업무 수	DR 구축 업무 수			DR 구축율
		계	서버 DR (active-standby)	스토리지 DR	
대전본원	709개	47개	28개	19개	6.6%
광주센터	562개	30개	24개	6개	5.3%
계	1,271개	77개 (%)	52개 (67.5%)	25개 (32.5%)	6.1%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 후 '24.1월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행정전자서명(GPKI), (가칭)Any-ID, 모바일 신분증, 정부디렉터리(LDAP) 등 다수의

디지털행정서비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능에 대해서는 DR 구축방식을 '다중지역 동시 가동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136][137] 행정안전부가 DR 구축·기준 및 방안을 직접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함.

□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5년도에 다중지역 동시 가동(Active-Active) 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 구축사업(정보화)(2036-503)' 및 '국정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2036-500)'에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16억 7,500만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하 "nTOPS[138]") 센터이중화 구축'을 위한 7억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139]

---

136) **['24.1월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3-12-2-① 다중지역 동시 가동

【다중 지역 동시 가동】 공통기능서비스*에 대해 장애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 적용('25.上~) (17p)

* 행정전자서명(GPKI), (가칭)Any-ID, 모바일 신분증, 정부디렉터리(LDAP) 등 다수의 디지털행정서비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능

137) 행정안전부는 대전·광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급 기관 재해복구시스템을 공주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재해복구 정책에 맞춰 장애대응이 불가능하거나 등급기준 부적합으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함.

138) 'nTOPS'(National Total Operation Platform System)는 2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HW 9.2만식, SW 28만식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자원의 전 주기(입고-설치-사용-반납-처분)를 관리하고, IT 서비스 관리 분야 국제표준 기반 표준운영절차를 시스템화하여 장애, 변경, 자산관리 등 업무를 처리함.

[nTOPS 주요 기능 및 구성]

구 분	내 용
자산관리	자산 도입 확인 및 입고를 승인하고 입고된 자산과 이력을 관리
IT서비스 운영	관리원의 IT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절차와 정보를 제공
운영기준관리	운영, 유지관리, 정보화 등의 사업관련 정보 및 업무관련 정보 관리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39)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 국정자원관리원의 2025년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 2025년도 10월말 기준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의 과제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nTOPS 센터이중화 구축’은 7억 7,300만원 중 2억 3,500만원(집행률 30.4%)이 집행됨.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과제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과제명	예산액	집행액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2036-503)	부처 신규 전산장비 통합구축	‘25년 신규 전산장비 구축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1,675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2036-500)	공통인프라 운영강화		**nTOPS 센터이중화** 구축	773	235
합 계				**2,448**	**235**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두 사업과제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구축’은 부처 신규 전산장비통합구축 사업과 통합 발주 방식이 적용돼 해당 사업의 2회차[140] 시점인 7월 중순에 입찰공고를 거쳐 9월 하순에 이르러서야 계약체결이 되었고, ‘nTOPS 센터이중화 구축’은 5월 중순에 입찰공고 및 7월에 계약체결 등으로 두 과제의 사업자 선정은 2~3분기에 이루어졌음.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요구안은 9개 시스템이었으나 정부안은 2개 시스템으로 축소됨.

140)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1차 발주는 2025년 3월에 추진되었음.

과제별 계약기간은 각각 3개월 및 5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나, 완료는 모두 연도 말로 예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5년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141]인 기술적 검증 및 사업의 방향성 점검 등에 비추어 사업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142]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과제별 추진현황]

구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구축	nTOPS 센터이중화 구축
입찰공고일자	2025. 7.15.	2025. 5.19.
공고기간(긴급)	2025. 7.15. ~ 8.19.	2025. 5.19. ~ 6.18
재공고(단일응찰)	2025. 8.19. ~ 9.3.	2025. 6.20. ~ 6.30.
응찰자 수	단일응찰	2개 업체
낙찰자	세000000	오00000 주식회사, ㈜에0000
낙찰자 선정방법	일반경쟁 → 수의계약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제27조제1항(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3조의2(지식기반산업의 계약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금액	16억 7,500만원	7억 7,300만원
계약기간	2025. 9.24. ~ 12.12.	2025. 7.25. ~ 12.31.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41) 디지털 행정성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관련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수립 기준(안)에서는 2025년 우선적 투자가 필요한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Active-Active 방식의 DR은 2025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검증을 거쳐 방향성을 확정한 후 2026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DR 구축 투자를 금지하였다가 2026년도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예산수립 기준(안)에서는 시범사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부처별로 AP 개발 예산 수립, 스토리지 DR 구축을 하도록 변경함.

14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당초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일정은 계획수립(2월), 설계(6월), 기반환경 구축(9월) 완료임.

□ 2025년도 예산 수립 당시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은 Active-Active 방식 적용에 있어 기술적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검증하여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바, 시범사업의 검증 사항에는 ① 네트워크 측면에서 GSLB의 기존 네트워크 연계, 트래픽 분산 기능 등 검증, ② AP 측면에서 시스템 분산배치, Active-Active 환경설정, 서비스 정합성 등 검증, ③ 성능 측면에서 대전시스템의 사용자 응답속도, 공주시스템의 응답속도 비교 등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검증 내용]

분류	검증내용	설명
네트워크	GSLB 구축	GSLB 설치 및 DNS 시스템과의 연계
	네트워크 연계	네트워크 (국통망, 대전센터 백본, 백업센터 백본 등) 상의 시스템 연계, 기능 이상유무 확인
	트래픽 분산	nTOPS 사용자 요청의 대전↔공주 트래픽 분산기능 검증
AP	AP 분산배치	대전센터 AP 시스템의 백업센터 환경구성 및 설치 검증
	원거리 시스템 연계	대전센터 AP, 신규구축된 백업센터 AP간의 기능 검증 및 연계
	동기화 검증	대전센터 처리결과 및 백업센터 처리결과의 데이터 반영 여부 확인
	서비스 정합성 검증	대전·공주 동시 서비스 제공 시의 시스템, 서비스 이상유무 점검
성능	대전·공주 성능비교	- 대전센터 경유 사용자 응답 및 백업센터 경유 사용자 응답의 지연속도 비교검토 - 일반요청, 대용량요청 등 분류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하지만 9월 대전본원 화재로 nTOPS 주시스템이 소실됨으로써 nTOPS 센터이중화 구축 사업은 중단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시범사업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에 ‘2023년도 전산장애 대책 이행을 위한 2026년 예산투자 우선대상 기준’을 통해 Active-Active 방식 DR 예산안은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부처별로 편성하되, 2026년에는 구축 최적 유형, 업무영향분석, 타당성 등에 관한 ISP 수립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Active-Active 방식의 DR 구축 전이라도 스토리지 DR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함.

그런데 이는 2025년도 예산 수립 당시 Active-Active 방식의 DR은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범 구축 후 기술적 검증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구축기준에 맞지 않는 것임.

□ 한편, 2026년 예산투자 우선대상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스토리지 DR 구축 예산[143]만 편성되어 있고, 1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예산은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스토리지 DR은 센터이중화 사업 시 데이터 용량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합스토리지 DR 사업

143) 2026년도 통합스토리지 DR 구축 예산안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870TB 기준 총 임차비 60억원으로, 2026년도는 임차료 1회분(20회 분할납부)에 해당하는 3억 100만원이 반영됨.

예산안은 센터이중화 대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별 Active-Active 관련 AP 개발 예산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44]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에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스토리지 DR은 장애·재해 발생 시 시스템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145] 이를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사업과 직접적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2026년도 통합스토리지 DR 예산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대전본원에 있는 2등급 정보시스템 중 DR이 없는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부처별 Active-Active DR 구축을 위한 AP 개발과도 연계되지 않는 것임.

이에 더하여 부처별 Active-Active 관련 AP 개발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예산 수립 시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검증을 거쳐 방향성이 확정되면 편성하도록 한 당초 취지에 따라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완료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Active-Active 방식의 DR 예산안 편성 관련 기준은 '2024년도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144)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p.45

14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스토리지 구축'은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고, 이외 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은 확보하지 않거나 장소 등도 최소한으로만 확보하는 것으로, 장애 발생 시 대규모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대책’ 및 2025년도 DR 예산 수립 기준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없이 부처별 수요 여부[146]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센터이중화 DR 구축 관련해서도 2024년도[147]부터 매년 예산 수립 기준이 변경되는 등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총괄적·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의 경우 ‘공주센터 신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재해복구시스템 이전’을 통해 1~4등급 정보시스템 장비 941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1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중지역 동시 가동 정책’에 따라 1·2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주센터에 신규 구축하기로 하고 3·4등급 정보시스템 중 원격지 소산 방식에 해당하는 67대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후, 1·2등급 정보시스템 이전 관련 예산 13억 4,300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전산환경 구축 공사비 10억원, 자산취득비 1억 9,600만원 및 감리비 1억 4,700만원을 각각 전용 증액하여 인프라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146)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2026년도 통합스토리지 DR 구축 관련 정부 부처 수요조사 시 의견을 제출한 부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정부 부처별 DR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예산확보 및 우선순위 등에서 소홀히 다뤄질 우려도 지적될 수 있음.

147) 행정안전부는 2024.1월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발표 시 2025년 상반기부터 행정전자서명(GPKI), (가칭)Any-ID, 모바일 신분증, 정부디렉터리(LDAP) 등에 대해서는 다중 지역 동시 가동 방식의 DR을 적용하는 계획이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구축에 관한 중단기 계획을 조기에 확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 배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3.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 대전본원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물량은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행정안전부가 국가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행정정보체계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재난 대비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미래 위험에 대비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험 가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전산장비 파손 등 물리적 손해 외에도 대국민 공공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손실 등 비물리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전담보험을 운용·관리하는 방안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 대전본원,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는 화재보험 계약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이 개별발주 방식보다는 통합발주로 전환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재보험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일치시킴으로써 예산편성 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되어 운영 중인 52개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관리 지원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2,721억 4,900만원 대비 19억 900만원이 감액된 2,70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정보화)	224,103	272,149	270,240	△1,909	△0.01

나.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재난 대비 보험제도 개선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05년 정부통합전산센터 출범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이관(2008년) 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2016.3월)을 거쳐 2017.7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5년 10월 현재 대전본원·광주센터·대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별 현황]

구분	대전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공주센터
개소	2005.11월	2007.11월	2024.6월	2025.10월 (2023.5월 준공)
구축 형태	기존 건물 임차	건물 신축	건물 신축	건물 신축
정보 자원	서버 4,955대 등 27,965대	서버 4,073대 등 23,432대	서버 548대 등 2,821대	서버 111대 등 520대
입주 기관	27개 기관	25개 기관	35개 기관	-
특징	-	-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센터(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미입주 시스템 입주)	전쟁·대형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EMP대응·지하터널형 전산동)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한편, 2025년 9월 26일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를 정보시스템과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이전 작업 중에 배터리 1

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1명 1도 화상, 1개 전산실(7-1) 전소, 대전센터의 709개 시스템[148] 가동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1개 전산실 전소로 약 740대 전산장비와 384모듈 리튬이온배터리가 전소됨.

행정안전부는 장비 교체 등 시스템 복구를 위해 예비비(1,723억원)를 신청하고, 추가소요(503억원)는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사 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이번 화재사고로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전기·기계·보안 등) 등 물리적 손실 외에 공공행정서비스 중단이라는 국가적 피해도 초래되었는바, 행정안전부가 국가 핵심 정보인프라를 각종 위험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와 법령상 근거는 마련돼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대전본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물량은 24.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행정안전부가 국가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행정정보체계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재난대응 및 대비가 미흡하고 국가 자산을 소홀히 관리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임.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개 센터(공주센터 제외)에서는 서버·스토리지·전산장비 등에 대해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바, 보

148) (행안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 (권익위) 국민신문고, (과기정통부) 인터넷우체국, (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

험금액은 대전본원 4,557억원, 광주센터 5,080억원, 대구센터 2,194억원이고, 보험료(210-02목, 공공요금 제세)는 대전본원 2,284백만원, 광주센터 2,462만원, 대구센터 813만원임.

그런데 보험 가입물량에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는 입주한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대전본원은 총 10,082대 정보시스템 중 2,503대에 대해서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보험 가입현황]

구분	대전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보험기간	2025.7.26.~2026.7.26	2025.9.8.~2026.9.8.	2025.7.26.~2026.7.26
보험가입금액	4,557억원	5,080억원	2,194억원
보험료 (보험사)	22,839천원 (DB손해보험)	24,623천원 (DB손해보험)	8,131천원 (DB손해보험)
계약방식	일반경쟁	일반경쟁	수의계약
목적물 사항	1. 건물 2. 정보시스템 3. 기반시설(전기·기계·보안 등)		
정보시스템 수 (보험가입 물량)	**10,082개 (2,503개)**	**10,618개 (10,618개)**	**2,789개 (2,789개)**
센터별 UPS/ 리튬이온배터리 (보험가입 물량)	36대/2,156모듈 (36대/2,156모듈)	30대/2,520모듈 (30대/2,520모듈)	30대/1,440모듈 (30대/1,440모듈)

주: 대구센터 보험가입금액은 민간협력 클라우드(PPP) 시설을 포함하고, PPP에 대한 보험료는 CSP가 분담함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화재보험 가입물량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시스템의 보험가입 물량 산출 시 대전본원의 경우는 정보시스템의 도입금액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있고, 광주센터의 경우는 정보시스템의 도입금액에 감가를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어 물량 산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통상 화재보험은 가입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에 맞춰 보험가입 목적물(건물 및 기반시설과 정보시스템)의 가입물량이 결정되는바, 대전본원의 보험가입 물량이 적은 이유는 대전본원의 건물 및 기반시설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우선 차감하고 나머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험가입 물량이 산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미래 위험에 대비해 담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험 가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전산장비 전담보험인 전자기기 보험(EEI)을 활용하는 방안, 보험가입금액 산정 시 전산장비 도입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하는 방안 등이 있겠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보험 가입현황]

구분	화재보험	EEI(전자기기 보험)
보험 목적물	건물, 부속설비, 정보시스템	전자기기(컴퓨터, 의료장비, 통신설비 등), 부대설비, 자료(외적정보매체)
보상하는 손해	화재	화재, 전기적, 기계적 사고, 취급부주의 등
특약	도난, 전기, 지진, 풍수해 등	외적정보매체 손해비용, 대용기기 사용에 따른 제반 추가경비

주) 외적정보매체란 Magnetic Discs(DVD, CD 등), Magnetic Tapes, 필름류 등을 말함.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둘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전산장비 파손 등 물리적 손해만 보장되고, 행정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손실 등 비물리적 손실은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핵심기반인 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도입·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 한도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산장비 손상 외에 정보시스템 마비로 인한 업무중단 및 데이터 손실 등 비물리적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이 재난 및 사이버 공격 등으로

재해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고 국가적 차원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중기적으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위험 대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전산장비 파손 등 물리적 손해 외에도 대국민 공공서비스 중단[149] 및 데이터 손실 등 비물리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전담 보험을 운용·관리하는 방안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1항[150]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선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국가정보관리원 센터별 화재보험 증권에는 리튬이온배터리, UPS 등 화재위험 관련 전담계약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화재보험 계약체결 시 리튬이온배터리, UPS 등 관련 특약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개 센터의 화재보험은 화재보험보통약관, 테

149)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총 79억6,600만 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전체 피해 추산액의 84%를 차지한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000만 원의 피해를 예상했다.”(한국일보, 2025.10.26. “갈 길 먼 '국가전산망 정상화'...국정자원 화재 피해 추산액만 100억 원” 기사 중 발췌)

1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러행위면책추가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등 세 가지 항목을 계약적용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배터리 취급 시 면책 등 예상치 못한 미래 위험에 대비해 전산 장비·시설 관련 전담 특약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넷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개 센터는 화재보험 계약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발주로 전환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더하여 화재보험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151]

2025년 10월 기준 3개 센터는 같은 보험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도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 대전본원은 장비 도입단가를 적용한 반면, 광주센터는 장비 도입단가에서 감가상각(시가)을 반영하는 등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센터별로 추진하는 보험 계약을 통합발주로 전환하되, 보험 계약 시 센터별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사항을 특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해 보임.

이에 더하여 회계연도와 보험가입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예산편성 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4.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2036-508)

○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핵심기반 평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1년도 A등급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등급으로 하향 평가됐고, 2023년도에 완공된 공주센터는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등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보호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이는바, 국가안보상 주요 핵심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되어 운영 중인 52개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관리 지원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2,721억 4,900만원 대비 19억 900만원이 감액된 2,70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정보화)	224,103	272,149	270,240	△1,909	△0.01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사업은 전쟁·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시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요 전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6억 1,400만원 대비 27억 5,900만원이 증액된 4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18,982	1,614	4,373	2,759	170.9

나. 국가핵심기반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소속 국정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관리 미흡 문제 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152]'으로서, 대전본원은 2007.9월, 광주센터는 2011.1월, 대구센터는 2024.2월에 각각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핵심기반 지정일자]

구분	대전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전산망	2007.9.17.	2011.1.20.	2024.2.29.
통신망	2007.9.17.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기준 국가핵심기반 지정현황은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보건의료·원자력·환경 및 식용수·국가유산·공동구 분야 등 11개 분야 155개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11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1개, 지방자치단체 38개, 공공기관 41개, 민간사업자 43개)의 363개 시설임.

1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국가핵심기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관부처	관리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합계	155	11	11	11	38	41	43
에너지	16	1	-	-	-	9	6
정보통신	11	1	3	-	-	4	4
교통수송	49	2	1	11	-	10	28
금융	10	2	-	-	-	5	3
보건의료	12	1	-	-	-	10	1
원자력	2	1	-	-	-	1	-
환경	7	1	-	-	5	1	-
식용수	24	1	-	-	22	1	-
중요시설	7	1	6	-	-	-	-
공동구	13	2	-	-	11	-	-
국가유산	2	1	1	-	-	-	-

※ 자료: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법」 제26조의2[153],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154]에 따

1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1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

라 국가핵심기반을 담당하는 주관부처와 관리기관은 국가핵심기반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시설의 보호목표 및 보호대상 범위 설정, 위험식별 및 분석 등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전략 및 재난관리대책 등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기관으로서 대전본원·광주센터·대구센터 시설들에 대한 보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으며,[155]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통보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해서는 총 2회를 실시하였는바, 2023년도 대전본원, 2024년도 광주센터[156]에 대해 각각 실시한 것으로 파악됨.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155)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보호계획을 제출하는 국가핵심기반의 관리기관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외에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우정사업정보센터(우정사업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청사관리본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이 있음.

□ 2023년 대전본원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3개의 권고사항 및 1개의 보완사항이 지적된바, 구체적으로 배터리실에 대해서는 UPS와 배터리 사이 공간 분리 또는 내화구조 격벽 설치 사항이 권고되었고, 전기실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전기시설(변압기, 배전반 등)의 교체 필요 등이 지적됨.

[2023년 대전본원 국가핵심기반 점검결과]

구분	항목	지적사항(○) 및 이행조치(▸)
전기실	일반	○ 주요 분전반·배전반에 소공간 자동소화용구 설치권고 ▸전기실 내 청정소화가스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분전반 및 배전반 내 자동소화용구는 미설치 상태 ○ 사용기한 도과한 전기실 주요 시설(변압기, 배전반 등) 교체권고 ▸변압기 및 배전반 교체는 작업위험도, 정전 발생, 교체비용 등을 고려하여 주요부품 교체로 지속적인 관리점검 실시
배터리실	일반	○ UPS와 배터리 사이 공간분리 또는 내화구조 격벽 설치권고 ▸('24) 지하층 배터리실 공간 분리 및 내화 격벽 설치 완료 ▸('25) 전산실 내 배터리 지하층 이전 공사 중
비상발전기	배터리	○ 비상발전기용 배터리 외함 접지선 연결보완 ▸배터리 외함 접지선 연결 완료

※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또한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핵심기반 평가[157]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1년 A등급을 받았다가 2022년부터 2025

156) 2024년 광주센터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국가정보원의 합동으로 보안점검이 실시된바, 해당 점검결과는 미파악됨.

157)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반 평가는 A·B·C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를 받는 상대평가 구조임.

년도까지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점검결과 및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핵심기반 시설물들에 대해서 보호관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었던 모건 스탠리가 본사 붕괴 직후 24시간 만에 모든 업무를 정상화한 사례[158]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경쟁력은 데이터 처리 속도보다는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안보상 주요 핵심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 보호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3년도 완공 및 2026년도 본격 운영[159]되는 공주센터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158) “재난대응 정부조직체계 개편한다면 방향은?”, 물류신문, 2020.11.10., “인터넷 장애가 국가 대혼란을 야기하는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IT 동아, 2021.11.23.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159)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공통요구자료(Ⅱ-1)」, 행정안전부, p.3473

【안전예방정책실】

25.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2631-307)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은 일정 대수 이상의 재난안전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기초-광역지자체 상황실 연계, 광역 지자체-중앙재난안전상황실 연계를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드론 보유 대수 외에 드론 데이터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목적은 드론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의 영상을 각 상황실별로 연계 송출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조정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관련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는 재난 발생 시 실시간 현장 정보 파악을 위해 상황실에 드론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3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	-	3,390	순증	순증

나.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의 구체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은 재난 현장의 드론 데이터(영상·위치 등)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간에 다층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사업 내용 및 예산안 산출 내역]

구 분	예산안 산출 내역	수행 방법
기초-광역지자체 상황실 연계	기초 지자체(37개) x 25백만원 = 925백만원	지자체 자본보조 (보조율 50%)
광역지자체-중앙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광역 지자체(4개) x 140백만원 = 560백만원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1식) x 1,515백만원 = 1,515백만원	직접 수행
산림청-중앙재난안전상황실 연계	상황실(1개) x 390백만원 = 390백만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을 2년 간(2026～2027년) 추진하여, 2026년에는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3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데이터를 연계하고, 2027년에는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3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할 계획임.

[2026~2027년 연계 시스템 구축 대상 지방자치단체(안)]

연 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2026	[4개] 경북(138대), 경기(108대), 경남(78대), 제주(38대)	[37개] 경북(성주-25, 안동-20, 구미-12, 울진-10, 예천· 봉화-7, 영주·상주·경산-5, 김천-4, 의성-3), 경기(광주-12, 김포-8, 안양-5, 포천·수원·하남-3), 경남(진주-9, 통영-8, 의령·창녕·남해·하동-5, 창원·밀양·거제·함안·함양-4, 양산·산청-3), 제주(제주-10)
2027	[6개] 강원(117대), 충남(88대), 충북(69대), 전북(39대), 서울(30대), 울산(24대)	[31개] 강원(홍천-21, 인제-16, 원주-11, 영월-8, 동해·고성-7, 정선-6, 속초·철원-5, 태백-4), 충남(서산·청양-17, 예산-15, 서천-10, 당진-8, 계룡·금산-5), 충북(진천-20, 영동-17, 단양-10, 증평-4, 음성-3), 전북(익산-11, 전주-9, 완주-7, 무주-4, 남원-3), 서울(노원-15), 울산(북구-4, 중구-3, 동구-3)

※ 자료 : 행정안전부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명-재난안전 드론 수)

□ 행정안전부는 2025년 3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안전분야 드론 수를 조사하였고,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대 이상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였다고 설명함.

□ 드론 보유 대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활용도를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

치단체별 드론 조정 인력 수 및 숙련도 현황, 실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활용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할 때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활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신규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거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안전 드론 수 외에 별도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이전에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드론 보유 대수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업 관련 연구용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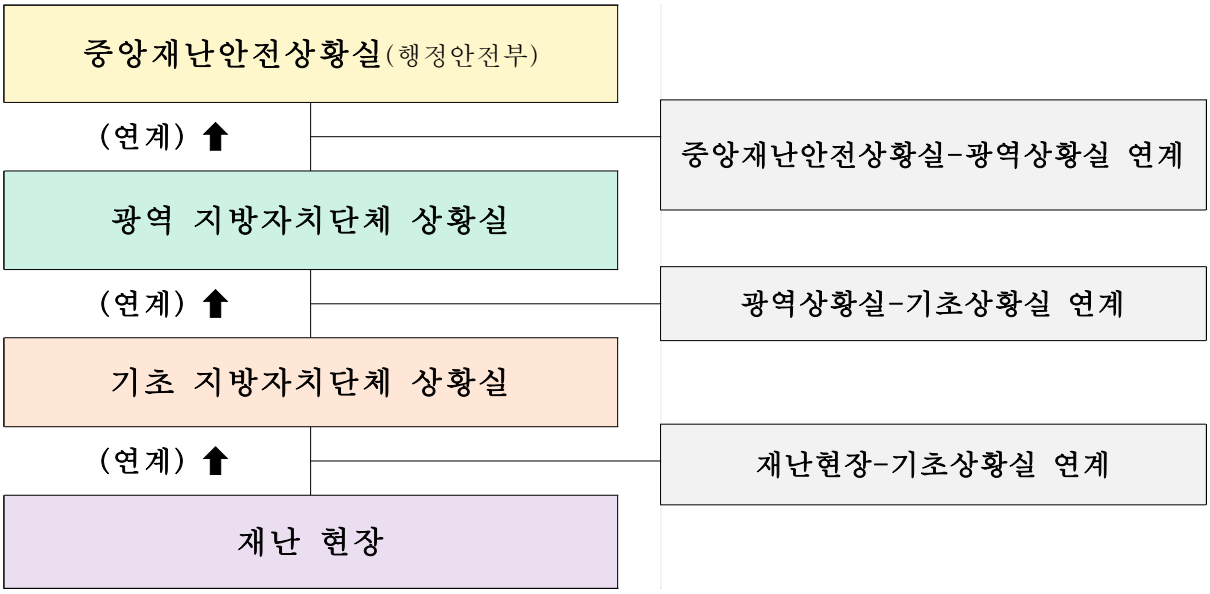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용역명	재난안전분야 드론 활용 방안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수행기관	명지대학교·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25년 4월~2025년 10월(6개월간)
계약금액	44,500,000원
주요내용	국내외 재난안전분야 드론 활용 현황 및 사례 조사 재난안전관리 드론 활용 방안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재난안전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 자료 : 행정안전부

다.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관련 예산 반영 필요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는 목적은 재난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연계 체계도]



※ 자료 : 행정안전부

□ 따라서, 드론 데이터 연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드론 조정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각 상황실별로 요청하는 영상·위치 데이터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 2025년 3월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도의 재난안전분야 드론은 813대이고, 조정인력은 1,143명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시·도별 재난안전 드론 조정인력은 드론 조정 관련 전문 인력이 아닌 순환보직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시·도별 재난안전 드론 수 및 조정인력]

(단위: 대, 명)

구분	경북	강원	경기	충남	경남	충북	전북	제주	서울
드론	138	117	108	88	78	69	39	38	30
조정인력	128	175	129	134	124	74	43	35	21
구분	**울산**	**대구**	**부산**	**전남**	**광주**	**대전**	**인천**	**세종**	**합 계**
드론	24	19	16	14	13	13	9	0	**813**
조정인력	68	25	83	5	50	30	19	0	**1,143**

※ 자료 : 행정안전부

□ 드론의 정밀한 조정을 통해 재난 현장의 영상·위치 데이터 등을 수집·전송하고 이를 신속하게 각 상황실별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드론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드론 조정인력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동 시스템 구축 이후 실제 원활한 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고, 전반적인 드론 데이터 연계 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담당 인력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2025년 3월 지방자치단체 드론 현황 조사 당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드론 자격증 교육 기회 확대,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관련 건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드론 교육·훈련 관련 건의사항]

지자체	건의 내용
부산	드론 관련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대구	드론자격증 교육지원 등 주기적인 드론 교육 지원 확대 필요
경기	재난안전분야 드론 전문가 양성 및 인력 지원 필요
충북	드론 자격증 교육, 해당분야 전문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
전북	드론 운용에 대한 분야별 대응 매뉴얼 등 운용 교육·훈련 필요
경남	드론 전담 인력 추가 배치 및 교육 및 장비구매 예산 지원 확대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연계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등을 통해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6.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2631-308)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은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전용 투자펀드를 결성하여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으로, 재난안전산업의 특수성과 투자 환경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한국중소기업모태펀드 내 다른 계정 투자대상, 국민안전산업펀드에 공동 출자하는 경찰청의 치안산업 분야의 투자대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복 투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사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기존 직·간접적 지원 수단과의 비교와 재난안전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펀드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가. 개 요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은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첨단 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전용 투자 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이 편성되었음.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	-	5,000	순증	순증

나. 정책펀드 사업 추진 이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은 한국중소기업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라 한다)에 가칭 ‘재난안전산업’ 계정을 신설하고, 정부 출자금 100억원을 출자하여(행정안전부 50억원, 경찰청 50억원) 자펀드 출자 공모를 통해 전문 운용사를 선정한 후 민간·지자체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추가 모집하여 펀드를 결성하려는 것임.

[국민안전산업펀드 개요]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결성 목표</td><td>총 200억원 (매년 추가 확대)</td></tr>
<tr><td>결성 방법</td><td>정부 출자 50% (행안부 50억+경찰청 50억)
민간 또는 지자체 등 추가 출자 50%</td></tr>
<tr><td>결성 조합</td><td>
<table>
<tr><th>계정</th><th>분야</th><th>출자예산</th><th>결성 목표</th><th>최대
출자비율</th><th>선정
조합 수</th></tr>
<tr><td rowspan="2">재난안전
산업</td><td>재난안전산업</td><td>50억원</td><td>100억원</td><td>50%</td><td>1</td></tr>
<tr><td>치안산업</td><td>50억원</td><td>100억원</td><td>50%</td><td>1</td></tr>
</table>
</td></tr>
<tr><td>주목적투자대상</td><td>업력 10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AI·로봇·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업으로서 기술 성숙도(TRL) 6~8단계[160] 수준의 기업</td></tr>
<tr><td>투자 방법</td><td>지분투자(신규 주식·지분 인수, 신규 전환사채 인수 등)</td></tr>
<tr><td>주목적투자비율</td><td>투자 대상에 60% 이상 투자</td></tr>
<tr><td>운용주체</td><td>한국벤처투자를 통한 모펀드-자펀드 구조</td></tr>
<tr><td>운용기간</td><td>8년(4년 투자, 4년 회수)</td></tr>
<tr><td>관리보수</td><td>협의 예정</td></tr>
<tr><td>기준수익률</td><td>0~3% 설정 예정</td></tr>
<tr><td>성과보수</td><td>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td></tr>
</table>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161]를 통해 2017년부터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은 매년 사업체 수, 사업 종사자 수, 매출액 규모에서 성장세를 보여 2023년에는 76,429개 기업, 476,255명의 종사자가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 매출액은 59조 397억원으로 나타남.

[2017~2023년 재난안전산업 관련 주요 통계 지표]

(단위: 개, 명, 억원)

구 분	사업체 수	산업 종사자 수	산업 매출액
2017년	59,251	374,166	418,537
2018년	67,161	388,515	438,336
2019년	71,038	410,319	473,493
2020년	64,141	393,010	437,140
2021년	73,897	440,746	523,912
2022년	77,810	463,734	589,028
2023년	76,429	476,255	590,397

※ 자료 : 행정안전부 연도별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 그러나 2023년 전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중 연 매출 20억원 미만의 사업체는 68,349개로 약 89%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중소·영세업체로 분류되고 있고, 해당 사업체들의 매출액이 전체 산업

160)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는 개발 중인 기술이 실제로 실용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는지 여부를 기초 연구(1단계)부터 사업화·양산(9단계)까지 구분해 평가하는 지표이며, TRL 6~8 단계는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제품 실증, 성능 검증 완료 제품, 상용화 제품 출시 직전 단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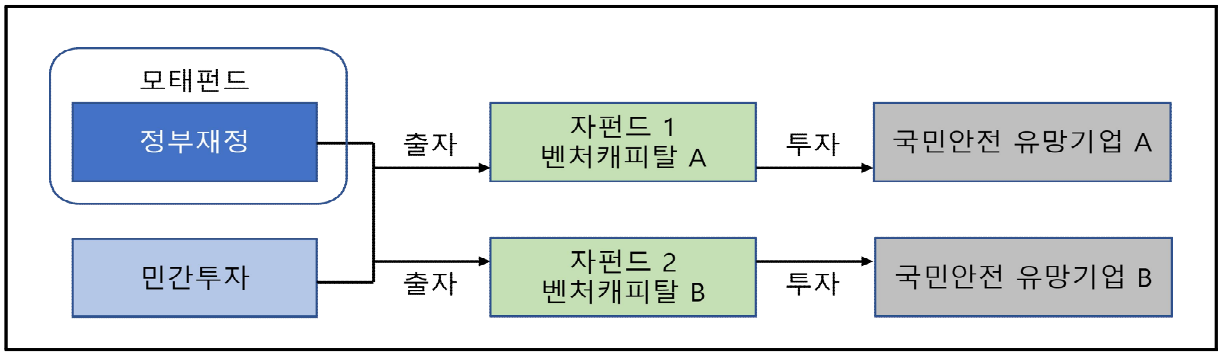
161)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는 t년에 대한 조사를 (t+1)년에 실시하여 (t+2)년 초에 공개하고 있음. 예시) 2023년에 대한 조사를 2024년에 실시하여 2025년 초에 공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2%에 불과하며, 전체 사업체 수의 0.9%에 해당하는 650개사만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여전히 산업 전반의 진흥·발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영세한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전용 투자펀드를 결성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동 사업 추진 이전에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본 투자 여건에 대한 분석과, 다른 정책펀드 사례나 기존 산업 지원 정책과의 비교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책펀드 사업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재난안전산업의 특징과 영세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민간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면서도 재난안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자하는 정부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국민안전산업펀드 구조]



※ 자료: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산업은 공공성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정부·공공기관 주도의 수요가 크며[162], 재난의 발생 규모 및 빈도에 따라 시장 수요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주목적 투자대상 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기업'의 수는 전체 재난안전기업 대비 약 89.4%에 해당하는 68,349개인데 반하여,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2%에 불과하고, 위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업력 10년 이내의 기업' 수는 27,527개로 더 감소하여 주목적 투자대상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업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시장 상황과 재난안전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특성,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환경 및 여건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성이 높지 않은 산업에 투자할 유인을 갖기 어려울 수 있음.

□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 정부출자(50%)와 민간투자(50%)를 매칭한 자펀드 결성과 실제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펀드 출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출자연도에 활용되지 못하는 예산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펀드 투자를 예상하는 재난안전기업

162) 2023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 전체 매출액(59조 397억원) 대비 공공기관 판매 비중은 약 18.8%로 나타남.

들의 생산·개발·연구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우선 손실 충당 기회 제공, 초과 수익 배분, 콜옵션 등 타 정책펀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부여 계획(안)]

구 분	내 용
우선 손실 충당	손실 발생 시 정부 출자금의 15~20% 범위에서 우선 손실 충당 기회를 제공
초과수익 배분	기준 수익률(0~3%)을 초과하는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30~50%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자에게 우선 배분
콜옵션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30~50%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권리를 부여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재난안전산업의 특성과 영세성, 낮은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0~3%)을 고려할 때, 자펀드 운용 수익이 부진한 경우, 펀드출자를 위해 투입된 정부재정이 당초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목적과 달리 민간투자자의 손실 보전에 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안전산업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 정부재정의 투입의 목적, 민간투자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로서 정부재정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출자가 이루어진 연도 내에 자펀드가 결성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의 조건으로 'AI·로봇·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AI 등 첨단기술 기반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모태펀드의 다른 계정이나 타 정책펀드, 공동으로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경찰청의 치안산업 분야 투자대상과의 중복 투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모태펀드에는 부처별 출자를 기반으로 투자 분야별로 계정이 형성되어 있는데, 2024년 8월 기준 전체 계정 합계 정부의 예산 출자액은 9조 8,417억원이고, 예산 출자액 중 회수되어 재투자된 금액 5조 3,242억원을 더한 누적 출자액 15조 1,659억원에 민간 출자액 28조 6,488억원이 매칭되어 43조 8,145억원의 자펀드가 결성되었으며, 이 중 34조 3,157억원이 실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모태펀드 계정별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계정명	정부출자액			민간출자액 (b)	자펀드 결성액 (a+b)	투자액
	예산 출자액	회수액	소계(a)			
중진	39,678	24,393	64,071	170,647	234,718	189,359
혁신모험	11,150	6,656	17,806	33,496	51,302	39,317
문화	15,262	4,959	20,221	19,914	40,135	33,922
청년	5,730	3,710	9,440	9,770	19,210	15,076
과기정통	3,350	1,511	4,861	5,144	10,004	6,112
엔젤	2,090	1,762	3,852	1,155	5,007	4,106
영화	2,270	608	2,878	2,190	5,068	5,363
소부장	2,140	160	2,300	2,799	5,099	2,863
관광	2,380	150	2,530	1,423	3,953	2,224
지방	2,678	3,461	6,139	6,930	13,068	10,965
환경	2,345	166	2,511	1,642	4,153	2,111
국토교통혁신	1,000	-	1,000	934	1,934	1,022
스포츠	1,540	164	1,704	972	2,676	1,562
교육	940	-	940	571	1,511	962
해양	1,000	-	1,000	522	1,522	695
중진(고용)	210	145	355	213	568	413
중진(복지)	150	-	150	65	215	52
도시재생	500	-	500	125	625	422
연구개발특구	190	-	190	190	380	228
보건	1,200	910	2,110	8,906	11,016	5,968
계	**98,417**	**53,242**	**151,659**	**286,488**	**438,145**	**343,157**

※ 자료: 한국벤처투자 /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2024년 11월)」)
* 2024년 8월 기준

□ 이 중 모태펀드 중진 계정은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출자하고 있고, 해당 펀드는 출자분야로 초격차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초격차·글로벌' 분야의 자펀드를 출자 대상으로 하여 해당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음.

[모태펀드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자 대상 자펀드]

출자분야	출자 대상 자펀드
초격차·글로벌	◆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는 초격차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에 투자 *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 **빅데이터·AI**,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세컨더리	◆ 구주 투자 목적 일반 세컨더리, 펀드 LP지분 유동화 및 M&A 목적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 벤처·스타트업과의 기술제휴, 공동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 오픈이노베이션 목적 투자

※ 자료: 한국벤처투자 2025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계획

□ 그런데 위 펀드의 초격차·글로벌 분야 출자 대상 자펀드를 살펴보면 로봇, 빅데이터·AI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별도의 산업 분야는 설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펀드를 통해서 로봇,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업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모태펀드 외 다른 정책펀드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인 혁신성장펀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펀드인 AI 혁신펀드 등에서도 로봇, AI 기술 관련 품목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술을 접목·활용하는 인공지능·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모태펀드 내에 재난안전산업 계정을 신설하여 경찰청과 함께 각 50억원 씩 출자하고, 출자분야를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자펀드 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펀드가 결성된 이후에는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민간운용사가 달라짐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치안산업 분야의 투자대상이 중복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사전 준비 과정에서 기존 정책펀드에서 재난안전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추후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와 협의하여 타 정책펀드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공동 출자자인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안전산업펀드 내에서 산업 분야별 중점 투자대상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셋째,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등에서 재난안전산업·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에 대한 제품·기술 상용화, 판로 개척 및 컨설팅 등 직·간접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간접적 지원의 확대를 통한 산업 진흥·발전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정책펀드와 비교하여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026년 예산안 기준 재난안전산업·치안산업 분야 주요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 업 명	내 용	예산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활성화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 운영,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해외 수출역량 강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 우수 안전기술 개발·발굴	3,004
	재난안전산업 우수 기술개발 지원(R&D)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	2,000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지원(R&D)	중소기업의 기개발된 기술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및 제품·기술 개발 출연금 교부, 재난안전기업의 사업화 지원 연구과제 발굴 및 제품·기술 개발 출연금 교부	7,465
경찰청	과학치안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시범사업(R&D)	원천기술 또는 치안분야 연구성과의 현실화 및 기술고도화 목표 출연금 교부	1,440
	치안신산업핵심기술사업화지원(R&D)	경찰청의 주요 임무와 R&D 성과분석에 기반한 중점분야별 사업화 지원	820
	미래치안기반조성	국제치안산업대전 등 판로개척 지원, 직무발명활성화 및 특허등록 지원,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지원, 산·학·연 및 부처 간담회 개최	1,497
소방청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소방장비 기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 첨단 소방장비 구매	866
	소방산업육성지원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614

□ 위와 같은 직·간접적 지원은 재난안전산업의 영세성과 기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가 설정하는 특정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재정을 운용할 수 있고, 정책 수혜자인 기업의 수요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펀드 보다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추진 이전에 재난안전산업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정책수단 대비 정책펀드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재난안전산업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7.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3032-509)

○ 내역사업 ‘재난안전 영상분석 인공지능 실증’은 2026년 산불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불 AI 학습데이터 제작 및 산불 탐지 AI 알고리즘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2026년 계획하고 있는 ‘AI 기반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 사업’과 AI 알고리즘 개발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의 세부 추진 과제 중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연계 및 품질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과제 내용이 세부사업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중 내역사업 ‘재난안전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사업의 세부 추진 과제 내용을 재검토하여 사업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영상분석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통해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50억 7,500만원 대비 72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정보화)	3,251	5,075	12,369	7,294	143.7
지능형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ISP	431	-	-	-	-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	820	-	-	-	-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2,000	1,760	1,554	△206	△11.7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	3,315	3,135	△180	△5.4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	-	7,680	순증	순증

나. 재난안전 영상분석 인공지능 실증 사업의 추진 계획 재정비 필요

□ 내역사업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은 민간영역에서 개발이 어려운 재난분야 학습데이터 구축 및 재난식별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고도화·실증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대비 2억 600만원이 감액된 1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1~2024년 지능형 선별관제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잦은 오탐으로 인해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2021~2024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대수]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통합관제센터 수	광역: 3개 기초: 221개	광역: 3개 기초: 218개	광역: 4개 기초: 212개	광역: 5개 기초: 212개
총 CCTV 대수	494,863대	541,018대	599,142대	650,423대
지능형 선별관제 적용 CCTV 대수	139,126대	173,452대	205,845대	244,065대

(자료 : 행정안전부)

□ 이에 동 사업은 지능형 선별관제 CCTV의 오탐률을 낮추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개발이 어려운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재난 식

별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거쳐 2025년에는 2024년의 집중호우 피해를 반영하여 '침수 탐지 AI 모델 구현 및 학습데이터 학습효과 실증 및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음.

□ 2026년에는 2025년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를 고려하여 산불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불 AI 학습데이터 제작 및 산불 탐지 AI 알고리즘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1,554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재난 분야 학습데이터 제작 x 1식 = 524백만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성 AI 개발 x 1식 = 450백만원 ◆ 산불탐지 AI 알고리즘 개발 x 1식 = 450백만원 ◆ 위탁사업 수행경비 x 1식 = 130백만원

□ 그런데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동 사업과 같이 산불 재난 상황에 대한 탐지를 목적으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목적의 세부사업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1544-327)' 중 내역사업 'AI 기반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에 114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AI 기반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 사업 개요]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AI기반 산불진화자원 통합배치 및 초기 긴급대응 체계 구축</td></tr>
<tr><td>세부 과제 내용</td><td>
<table>
<tr><th>과제명</th><th>기간</th><th>내용</th></tr>
<tr><td>❶딥러닝 기반 산불·연무 확산속도 예측 알고리즘 개발</td><td>2년</td><td>산불·연무 위치 및 확산 속도 등 예측 알고리즘 개발</td></tr>
<tr><td>❷대형산불 대응 최적 진화자원 진입로·대피로 분석과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공유 기술개발</td><td>2년</td><td>민간인, 진화대원 대상 상황별 맞춤형 정보 실시간 제공 기술개발</td></tr>
<tr><td>❸군집 드론을 활용한 대형산불 초기 긴급대응 기술개발</td><td>2년</td><td>군집 드론 활용 산불 발생 초기 긴급 대응 지원기술 개발</td></tr>
<tr><td>❹산불화선 자동탐지 연계 기술개발</td><td>5년</td><td>산불 화선 자동탐지 및 산림청 산불 시스템 실시간 연계 기술개발</td></tr>
<tr><td>❺AI 기반 공중·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 배치 및 의사결정 체계 개발</td><td>5년</td><td>산불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할 수 있는 AI 기반 통합 의사 결정 지원 체계 개발</td></tr>
</table>
</td></tr>
<tr><td>사업 기간</td><td>2025 ~ 2029년</td></tr>
<tr><td>2026년 예산안</td><td>11,447백만원</td></tr>
</table>

※ 자료: 산림청

□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 유형을 반영한 재난 식별 AI 알고리즘 개발과 AI 학습데이터 구축은 발생한 재난에 대한 사후적 분석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해당 재난 유형의 재발 가능성이나 AI 알고리즘 개발 및 학습데이터 구축 이후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부처의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사업의 경우 산림청과 협력을 모색하고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AI 알고리즘 개발 및 학습데이터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은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의 고품질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76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예산안	주요 내용
재난안전 데이터 품질관리	1,440백만원	◆ AI 알고리즘 편향성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 재난안전데이터 확보 관리체계 마련 ◆ 재난유형별 학습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가이드·매뉴얼 마련, 품질관리 진단·평가 및 오류개선 지원
AI 학습용 지능형 데이터 확보	6,240백만원	◆ 재난안전 문제해결형 지능형 데이터 구축 ◆ 정형-비정형 데이터가 결합된 멀티모달 데이터 수집·정제·가공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생성 ◆ 중앙·지역 현안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증강 ◆ 재난안전 AI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오픈 AI 서비스 개발

※ 자료: 행정안전부

□ 동 내역사업은 재난안전 분야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8개의 세부과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과업들은 특정 분야의 학습데이터의 제작, 가공,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의 세부 추진 과제]

(단위: 백만원)

연번	과업명	예산안
1	위치기반 재난상황 자동 요약 AI 학습데이터 구축	1,195
2	위성영상 활용 피해 평가 AI 학습데이터 구축	1,005
3	인공강우 실험 모형 및 침수 데이터 구축	800
4	재난 취약 지형 AI 학습데이터 구축	705
5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1,440
6	위성-드론-CCTV 교차정합 데이터셋 구축	1,005
7	중앙-지자체 AI 학습데이터 구축	1,410
8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및 해커톤 개최	120
합 계		**7,680**

※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중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과제는 2025년 1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이하 “공유플랫폼”이라 한다)’에 대해 600종의 데이터를 직접 연계하고, 연계 방식·주기·정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구축
경과</td><td>
<table>
<tr><th>구 분</th><th>‘22년</th><th>‘23년</th><th>‘24년</th></tr>
<tr><td>재난유형</td><td>지진 등 10종</td><td>가뭄 등 20종</td><td>황사 등 27종</td></tr>
<tr><td>연계 시스템(누적)</td><td>6개</td><td>27개</td><td>81개</td></tr>
<tr><td>연계 데이터(누적)</td><td>710개</td><td>1,295개</td><td>1,800개</td></tr>
<tr><td>기능 개발</td><td>웹사이트 개발</td><td>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td><td>표준API 등 공유
확산</td></tr>
</table>
</td></tr>
<tr><td rowspan="3">운영
내용</td><td>◆ 재난유형별 데이터 수집·연계
-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흩어진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합</td></tr>
<tr><td>◆ 재난안전데이터 개방
- 산사태·지진·가뭄·황사 등 57종 재난유형의 1,800여개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개</td></tr>
<tr><td>◆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 모든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개방, 개발자가 피해 예측 분석 등 재난안전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td></tr>
</table>

※ 자료: 행정안전부

□ 한편, 공유플랫폼의 구축·운영은 데이터 연계를 포함한 유지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세부사업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3032-501)’ 중 내역사업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데,

신규 내역사업인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의 세부 추진과제 중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과제는 현재 공유플랫폼에 연계되어 있는 1,800종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진단·평가를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600종의 재난안전데이터를 직접 연계하는 등 공유플랫폼의 운영에 포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동 내역사업에 해당 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수행하거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별도의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 사업과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과제 비교]

구 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세부사업명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3032-501)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3032-509)
내역사업명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과제 목적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시스템 유지관리	재난안전데이터 품질제고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연계방식, 표준 등) 마련
관련 정보시스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수행기관	민간위탁(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위탁(예정)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299백만원] · SW개발비 3,104백 × 8.1% + 상용SW 도입 589백 × 8.1% : 299백만원	[1,440백만원] ·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마련(연계방안 및 가이드 마련 등) : 450백만원 · 연계방식 변경에 따른 SW 개발 : 870백만원 · 데이터 비식별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SW 도입 : 120백만원

※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과제의 목표 및 내용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연재난실】

28.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2731-304)

○ 내역사업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은 자격시험 시행을 앞두고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자격시험 시행을 위탁 수행할 기관이 선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자격시험 시행을 위탁받아 수행할 시험 실시 기관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연계될 수 있을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험 실시 기관을 조속히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실제 시험 실시 업무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가. 개 요

□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은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종합적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21억 1,000만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2,384	2,110	2,310	200	9.5
재난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500	450	450	-	-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1,600	1,440	1,440	-	-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위탁	100	120	120	-	-
재난관리분야 표준교재 개발	94	100	100	-	-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	90	-	-	-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	-	200	순증	순증

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시험 실시 기관의 조속한 선정 및 연구용역 발주기관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은 2024년 3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63]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공인재난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제도의 원활한 정착·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기획 및 재난상황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해당 자격을 통해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격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시험횟수	매년 1회
시험과목	(1차시험) 객관식 / (2차시험) 주관식(논술형)
합격결정	(1차시험·2차시험)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 중 총점이 높은 사람
자격발급	2차시험 합격 후 연수과정 수료 시 자격증 발급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포함 9~13인

※ 자료: 행정안전부

1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202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27년까지 시험 실시를 위탁 수행할 기관의 선정,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등 자격시험 제반 마련을 통해 2028년부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2025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자격제도 정착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함.

[2025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관련 주요 업무추진 현황]

구 분	기 간	주요 내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5. 1~3월	■ 시험과목 및 방법 규정 ■ 합격자 결정 방식 규정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정착방안 연구용역	2025. 4~11월	■ 재난관리 분야 NCS 개발방안 마련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 공인재난관리 자격증 활성화 방안 마련

※ 자료: 행정안전부

□ 자격시험 제반 마련의 과정에서 2026년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문제 출제 및 모의평가를 위한 일반연구비(260-01)로 2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참조한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문제출제 또는 모의평가 관련 유사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주관 부처가 아닌 실제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문제출제 또는 모의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국가전문자격 시험 문제출제·모의평가 관련 유사 연구용역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소관부처	시험명	시험실시기관	연구용역 내용	용역 발주기관	용역 금액
2024년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제출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95
2024년	농식품부	스마트농업관리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모의평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00

※ 자료: 행정안전부

□ 소관부처가 아닌 실제 시험 실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서 문제출제 또는 모의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자격시험 실시의 범위 안에 문제출제 또는 모의평가 실시가 통상 포함되고, 연구용역의 결과를 실제 시험 문제출제에서의 시사점이나 보완점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까지 시험 실시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해 선행 단계로서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기관과 이어지는 실제 시험 문제출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달라지면서,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향후 정해질 실제 시험 문제출제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 2013년 시험 실시 기관(기업재해경감협회)을 먼저 선정하였고, 이후 시험 실시 기관에서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를 진행한 후 2014년 실제 시험을 실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시험 실시 기관을 조속히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실제 시험 실시 업무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164].

164)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정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시험 실시 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 마련 후 적합한 기관을 '시험 시행 준비 용역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29.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733-303)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을 통해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은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실시, 훈련 환류 단계로 추진체계가 설계되어 있는데, 훈련 환류 단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적용되는 평가지표가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훈련 결과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내실 있는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실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안전부·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훈련 환류 단계에도 포함시키고, 훈련 환류 단계의 평가에 가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지표의 개선과 실질적인 훈련 환류체계 강화가 필요함.

가. 개 요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은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20억 4,200만원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9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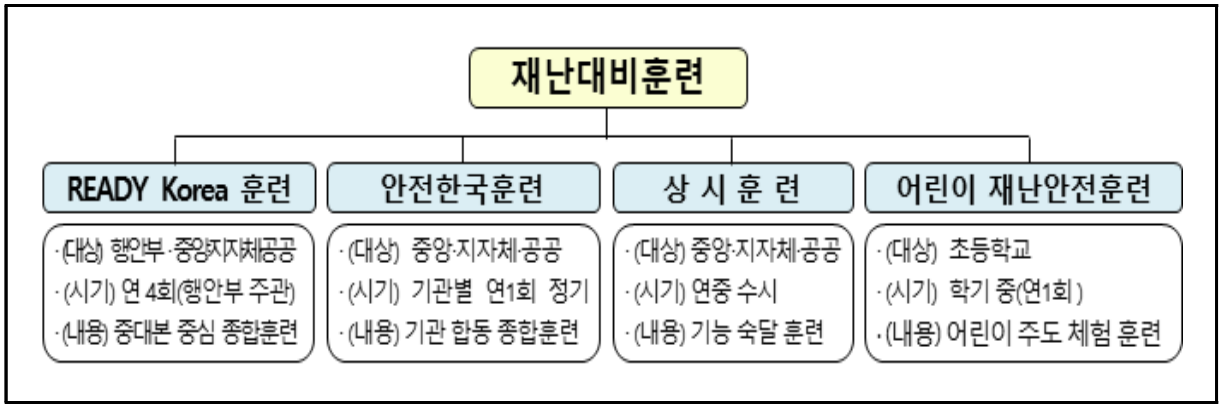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860	2,042	1,942	△100	△4.9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880	1,062	962	△100	△9.4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	980	980	980	-	-

나. 안전한국훈련 환류 단계의 평가지표 개선 및 실질적인 환류 체계 강화 필요

□ 세부사업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은 READY Korea훈련,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등 4가지 국가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

[국가재난대비훈련 체계]



※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관 분야의 재난 대응·수습체계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최초 실시되었고, 2024년부터는 반기별로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을 설정하여 연 2회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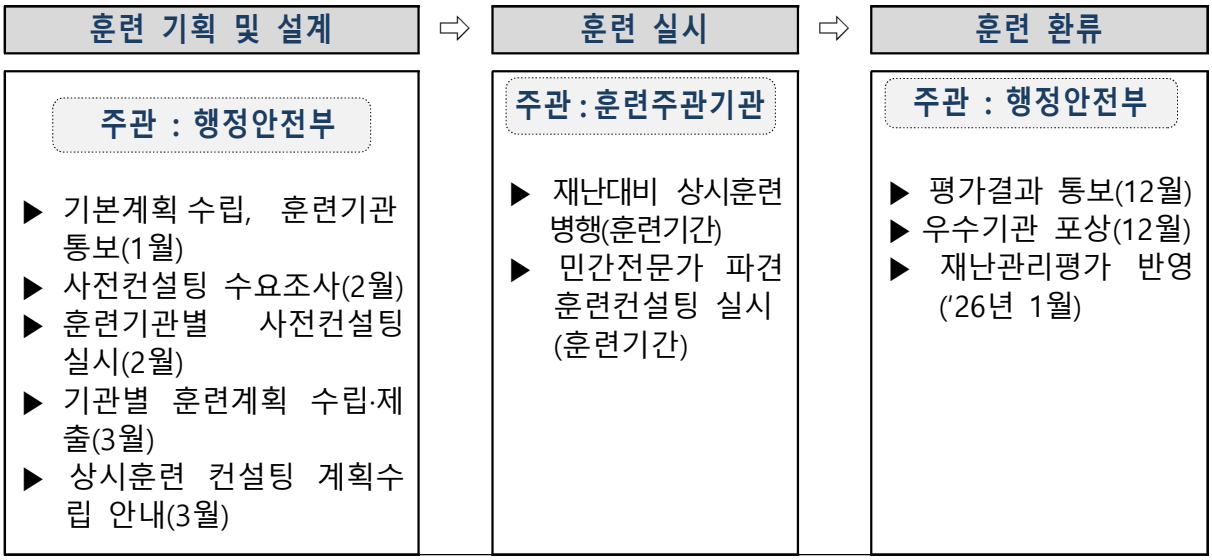
[2025년 안전한국훈련 추진 사항]

구 분	상반기(5.12.~23.)	하반기(10.20.~10.31.)
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 1개 (지방자치단체) 69개 (공공기관) 36개	(중앙행정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150개 (공공기관) 29개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	풍수해, 산사태, 지진, 도로 터널사고, 철도사고, 화학물질유출, 선박사고 등	다중밀집시설 화재, 산불, 경기장·공연장 인파사고, 감염병, 가축질병, 폭설·결빙 등

※ 자료: 행정안전부

□ 안전한국훈련의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계획 수립 단계, 훈련 실시 단계, 평가 및 환류 단계로 구분되는데 행정안전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훈련기관별 사전 컨설팅을 수행하고, 훈련 실시 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훈련 컨설팅을 실시하여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 안전한국훈련 추진체계]



(자료 : 행정안전부)

□ 안전한국훈련 실시 후 평가는 위 추진체계 상 훈련 단계별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일정한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평가 주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유형별 재난 상황 시 역할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별로 평가지표(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훈련 환류 단계의 평가영역은 '개선 및 환류의 적정성'으로, 평가지표는 '개선계획 수립의 적절성'으로 모든 기관유형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받고, 총 평가 배점(90점)의 10%에 불과한 9점의 배점이 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역시 훈련결과 점검·개선회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추진의 적절성' 기준과 훈련 실시 후 작성한 개선계획서에 일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작성의 충실성' 기준 등 형식적인 측면만을 평가하고 있음.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 - 훈련 환류 단계]

구 분	내 용	
평가분류	개선 및 환류의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계획 수립의 적절성	
평가기준	⑴ 추진의 적절성	① 훈련결과 점검·개선회의 실시 ② 개선계획 수립 ③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사항 포함 ④ 기관장 결재

구 분	내 용	
	⑵ 작성의 충실성	① 전년도 수립한 개선계획이 적절히 추진되었고 올해 훈련에 반영됨 ② 훈련 평가 중에 발견된 문제점, 현안사항 포함 ③ 개선 및 조치사항의 담당자(책임부서) 지정(배정) ④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조직, 예산, 일정 등) 포함 ⑤ 개선 및 조치사항의 추적관리를 위한 절차 마련
평가방법	⑴ 추진의 적절성	①~④별로 해당 시 각 1점, 미해당 시 각 0점
	⑵ 작성의 충실성	①~⑤에 대해 5개 해당(5점), 3~4개 해당(3.5점), 1~2개 해당(2점), 0개 해당(0점)
	종합	총점 9점 배점 (전체 평가 배점의 10%)

(자료 : 행정안전부)

□ 재난대비훈련에 있어서 훈련의 사전적인 기획 및 설계의 준비성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실시도 중요하나, 훈련 결과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내실 있는 환류가 이루어져야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재난 예방 및 대응 과정에 있어서 기관별로 보완이 필요한 취약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환류 단계의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평가 기준을 실질화하여 각 기관이 훈련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환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현행 안전한국훈련 추진체계 중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실시 단계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행정안전부 또는 민간전문

가의 컨설팅을 훈련 환류 단계에도 포함시키고, 행정안전부 또는 민간전문가의 훈련 결과 관련 컨설팅 수행 여부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평가지표의 평가기준 중 ‘작성의 충실성’과 관련하여 전년도 수립한 개선계획의 적절한 추진과 반영에 대해서는 훈련 환류 단계 평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각 기관이 자체적인 훈련 환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

○ 내역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의 내내역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는 2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904억 7,100만원 대비 16.7% 증액된 5,72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이 투입된 사업지구 중 실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지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행정안전부는 2026년 신규 사업 물량 55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 물량을 2025년보다 더 크게 계획하고 있으므로, 실집행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을 통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8,741억 5,400만원 대비 1,746억 5,600만원이 증액된 1조 48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69,666	874,154	1,048,810	174,656	20.0
재해위험지구정비	484,578	469,782	593,517	123,735	26.3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149,096	108,099	112,997	4,898	4.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17,813	285,773	341,929	56,156	19.7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5,400	7,700	-	순감	순감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관리	279	300	367	67	22.3
급경사지 실태조사	2,500	2,500	-	순감	순감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의 집행 부진 사업지구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내역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의 내내역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는 「자연재해대책법」[165]에 근거하여 7개 유형[166]의 피해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 추진 절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정비 중기계획(5년마다) 및 사업계획(매년) 수립	⇒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	⇒	정비사업 시행
법 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3조, 제14조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 자료: 행정안전부

16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6) ① 침수(시가지, 하천 등), ② 유실(교량, 암거 등), ③ 고립(교통두절 마을 등), ④ 취약방재(제방·배수문·유수지·저류지 등), ⑤ 해일(지진·폭풍해일·너울성 파도 등), ⑥ 붕괴(급경사지·산사태 등), ⑦ 상습가뭄(3년간 제한급수, 논 물마름 반복지역 등)

□ 동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21개소에 대한 국고보조를 목적으로 4,37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437개소(계속 382개소, 신규 55개소)에 대한 국고보조를 위해 5,72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74,154	944,332	1,048,810	174,656	20.0
재해위험지구정비	469,782	522,282	593,517	123,735	26.3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437,971	490,471	572,394	134,423	30.7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계속 사업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연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지구 8개소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지구 25개소를 선정하여 총 33개소에 대해 추가적인 국고보조를 목적으로 5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3개소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지역	사업지구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5년				
			추경 전	추경 후		본예산	추경(A)	집행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계	33개소				35,801	88,301	88,301	49,726	56.3%
1	대전 서구	정림	2021.1 ~2027.6	2021.1 ~2026.12	42,000	3,105	4,105	4,105	3,535	86.1%
2	대전 유성구	구암2	2024.1 ~2026.6	2024.1 ~2025.12	6,840	171	3,120	3,120	-	0%
3	경기 연천군	동막	2021.1 ~2026.6	2021.1 ~2025.12	30,533	3,594	4,448	4,448	3,020	67.9%
4	경기 포천시	포천	2022.1 ~2028.12	2022.1 ~2028.6	49,000	2,818	3,818	3,818	3,818	100%
5	강원 원주시	문막교	2022.1 ~2028.12	2022.1 ~2028.6	33,188	250	2,250	2,250	961	42.7%
6	강원 강릉시	우암	2022.1 ~2028.6	2022.1 ~2027.6	21,646	1,377	2,877	2,877	1,989	69.1%
7	충북 충주시	용원	2021.1 ~2026.12	2022.1 ~2026.6	7,988	449	1,449	1,449	449	31%
8	충북 진천군	용몽	2021.1 ~2027.6	2021.1 ~2026.12	31,500	1,783	4,783	4,783	1,481	31%
9	충북 충주시	상대촌	2022.1 ~2027.6	2022.1 ~2026.12	9,900	250	750	750	533	71.1%
10	충북 옥천군	적하	2021.1 ~2028.6	2021.1 ~2027.12	16,300	1,289	1,789	1,789	966	54%
11	충북 진천군	돌팩이	2023.1 ~2028.6	2021.1 ~2027.12	7,862	393	893	893	797	89.2%
12	전남 목포시	임성	2021.1 ~2028.6	2021.1 ~2027.12	38,560	600	2,600	2,600	600	23.1%
13	전남 장흥군	고읍	2023.1 ~2028.12	2023.1 ~2028.6	26,320	-	300	300	-	0%
14	전남 무안군	청수1	2025.1 ~2026.6	2025.1 ~2025.12	3,000	15	1,500	1,500	18	1%
15	전남 무안군	현경	2022.1 ~2026.6	2022.1 ~2025.12	12,000	373	1,401	1,401	1,034	73.8%
16	전남 구례군	선월	2021.1 ~2028.12	2021.1 ~2028.6	31,300	250	3,250	3,250	700	21.5%
17	경북 포항시	자호	2021.1 ~2028.12	2021.1 ~2028.6	44,900	1,596	2,046	2,046	632	30.9%
18	경북 포항시	가사	2022.1 ~2028.6	2022.1 ~2027.12	30,500	1,525	1,975	1,975	597	30.2%
19	경북 포항시	골안	2022.1 ~2026.12	2022.1 ~2026.6	6,470	250	750	750	204	27.2%
20	경북 포항시	자명	2022.1 ~2026.12	2022.1 ~2026.6	9,900	250	1,000	1,000	225	22.5%

(단위: 백만원)

연번	지역	사업지구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5년				
			추경 전	추경 후		본예산	추경 (A)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1	경북 안동시	오대1	2021.1 ~2027.6	2021.1 ~2026.12	14,308	429	2,429	2,429	429	17.7%
22	경북 상주시	강창교	2022.1 ~2028.6	2022.1 ~2027.12	53,662	2,414	5,414	5,414	4,566	84.3%
23	경북 상주시	함창 (구향)	2021.1 ~2027.12	2021.1 ~2027.6	32,996	990	3,490	3,490	990	28.4%
24	경북 영덕군	강구 (구)교	2018.1 ~2026.6	2018.1 ~2025.12	41,352	0	4,696	4,696	3,953	84.2%
25	경북 고령군	고방	2021.1 ~2027.6	2021.1 ~2026.12	22,500	1,675	2,675	2,675	2,675	100%
26	경북 고령군	치산	2022.1 ~2028.6	2022.1 ~2027.12	41,370	1,511	2,511	2,511	1,639	65.3%
27	경북 예천시	오류	2021.1 ~2028.6	2021.1 ~2027.12	45,180	1,829	4,829	4,829	4,829	100%
28	경북 예천군	느티 바우	2023.1 ~2027.6	2023.1 ~2026.12	8,082	200	1,200	1,200	-	0%
29	경북 울진군	읍남4-3	2022.1 ~2027.6	2022.1 ~2026.12	24,754	1,238	3,872	3,872	1,730	44.7%
30	경북 봉화군	운곡천	2024.1 ~2026.6	2024.1 ~2025.12	4,995	631	1,498	1,498	316	21.1%
31	경남 창녕군	용석2	2020.1 ~2026.6	2020.1 ~2025.10	23,322	1,166	2,821	2,821	2,821	100%
32	경남 창녕군	운봉	2021.1 ~2026.6	2021.1 ~2025.10	20,267	1,000	1,882	1,882	1,882	100%
33	경남 양산시	북부	2021.1 ~2027.12	2021.1 ~2027.6	41,286	2,380	5,880	5,880	2,340	39.8%

※ 자료: 행정안전부

* : 연내 조기에 준공가능한 사업지구(8개소)

** 2025년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은 9월 말 기준임.

□ 그런데 2025년 9월 기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국비 보조가 이루어진 33개소 전체의 실집행률은 56.3%에 불과하며, 연내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고보조를 추가 지원한 8개소 중 실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지구가 3개소가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중 대전 유성구 구암2지구와 전남 무안군 청수1지구는 각각 실집행률이 0%, 1%에 불과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연내 준공 가능 사업지구(8개소)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사업 지구	사업기간		총 사업비	2025년				
		추경 전	추경 후		본예산	추경 (A)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대전 유성구	**구암2**	**2024.1 ~2026.6**	**2024.1 ~2025.12**	**6,840**	**171**	**3,120**	**3,120**	**-**	**0%**
경기 연천군	동막	2021.1 ~2026.6	2021.1 ~2025.12	30,533	3,594	4,448	4,448	3,020	67.9%
전남 무안군	**청수1**	**2025.1 ~2026.6**	**2025.1 ~2025.12**	**3,000**	**15**	**1,500**	**1,500**	**18**	**1%**
전남 무안군	현경	2022.1 ~2026.6	2022.1 ~2025.12	12,000	373	1,401	1,401	1,034	73.8%
경북 영덕군	강구 (구)교	2018.1 ~2026.6	2018.1 ~2025.12	41,352	0	4,696	4,696	3,953	84.2%
경북 봉화군	**운곡천**	**2024.1 ~2026.6**	**2024.1 ~2025.12**	**4,995**	**631**	**1,498**	**1,498**	**316**	**21.1%**
경남 창녕군	용석2	2020.1 ~2026.6	2020.1 ~2025.10	23,322	1,166	2,821	2,821	2,821	100%
경남 창녕군	운봉	2021.1 ~2026.6	2021.1 ~2025.10	20,267	1,000	1,882	1,882	1,882	100%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은 9월 말 기준임.

□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추가 국고보조를 투입한 25개소의 경우에도 60%에 해당하는 15개소가 실집행률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상당한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단축 사업지구 중 실집행 부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지역	사업지구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5년				
			추경 전	추경 후		본예산	추경(A)	집행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1	강원 원주시	문막교	2022.1 ~2028.12	2022.1 ~2028.6	33,188	250	2,250	2,250	961	42.7%
2	충북 충주시	용원	2021.1 ~2026.12	2022.1 ~2026.6	7,988	449	1,449	1,449	449	31%
3	충북 진천군	용몽	2021.1 ~2027.6	2021.1 ~2026.12	31,500	1,783	4,783	4,783	1,481	31%
4	전남 목포시	임성	2021.1 ~2028.6	2021.1 ~2027.12	38,560	600	2,600	2,600	600	23.1%
5	전남 장흥군	고읍	2023.1 ~2028.12	2023.1 ~2028.6	26,320	-	300	300	-	0%
6	전남 구례군	선월	2021.1 ~2028.12	2021.1 ~2028.6	31,300	250	3,250	3,250	700	21.5%
7	경북 포항시	자호	2021.1 ~2028.12	2021.1 ~2028.6	44,900	1,596	2,046	2,046	632	30.9%
8	경북 포항시	가사	2022.1 ~2028.6	2022.1 ~2027.12	30,500	1,525	1,975	1,975	597	30.2%
9	경북 포항시	골안	2022.1 ~2026.12	2022.1 ~2026.6	6,470	250	750	750	204	27.2%
10	경북 포항시	자명	2022.1 ~2026.12	2022.1 ~2026.6	9,900	250	1,000	1,000	225	22.5%
11	경북 안동시	오대1	2021.1 ~2027.6	2021.1 ~2026.12	14,308	429	2,429	2,429	429	17.7%
12	경북 상주시	함창(구향)	2021.1 ~2027.12	2021.1 ~2027.6	32,996	990	3,490	3,490	990	28.4%
13	경북 예천군	느티바우	2023.1 ~2027.6	2023.1 ~2026.12	8,082	200	1,200	1,200	-	0%
14	경북 울진군	읍납4-3	2022.1 ~2027.6	2022.1 ~2026.12	24,754	1,238	3,872	3,872	1,730	44.7%
15	경남 양산시	북부	2021.1 ~2027.12	2021.1 ~2027.6	41,286	2,380	5,880	5,880	2,340	39.8%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은 9월 말 기준임.

□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 사업지구의 실집행 부진 현황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동 사업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0.7%,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7% 규모로 증액하여 편성되

었고, 신규 사업 물량 55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 물량도 2025년 대비 증가하였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실집행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 사업지구 개소별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회재난실】

31.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2735-309)

○ 내역사업 ‘피해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생활지원금 지원’은 신청인이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 인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구조인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이 2026년 5월 20일에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심사 현황을 보면,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이 보류되어 재심사된 건수를 제외한 심사건수는 261건으로, 452건의 피해자 인정 신청건수의 약 57.7%에 해당하는데, 신청기한 도래 이전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건수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5억 4,500만원 대비 2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3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160	545	2,089	3,393	2,848	522.6
지원단 운영	160	545	545	500	△45	△8.3
피해지원사업	-	-	1,244	974	순증	순증
추모사업	-	-	300	1,919	순증	순증

나. 피해자 인정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을 고려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필요

□ 내역사업 ‘피해지원사업’은 10·29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금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고용유지비용 지원,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 예산안에는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피해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피해지원사업	-	1,244	974	△270	△21.7
생활지원금 지원	-	888	462	△426	△48.0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지원	-	-	400	순증	순증
고용유지비용 지원	-	356	12	△344	△96.6
법률지원	-	-	100	순증	순증

□ 이 중 생활지원금 지원[167]은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16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1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정 신청 후 피해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피해자 인정 신청과 함께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생활지원금 지원 단계별 절차]

피해자 인정 신청 (생활지원금 동시 신청 가능)	⇒	피해자 인정 결정	⇒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종전 피해자 및 신규 피해자 신청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피해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결정된 지원액을 피해자에 지급

□ 동 내역사업은 262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6월 9일부터 각 시·군·구를 통해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아 2025년 10월 14일 기준 187가구에 대한 지급이 시작되어 5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음.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생활지원금 지원	-	888	526	59.2%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10.14. 기준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262가구에 대한 지급을 계획함.

□ 한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내역 산출일('25. 7.31.) 기준 피해자 인정을 신청자는 452명으로 이 중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은 자는 133명이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자는 627명,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은 자는 329명으로 각각 예산안 내역 산출일 대비 175명, 196명 증가하였음.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인정 결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피해자 인정 신청			피해자 인정 결정						
일자	계	종전 피해자	신규 신청자	종전 피해자			신규 신청자			
				소계	인정	불인정	소계	인정	불인정	검토중
예산안 내역 산출일 ('25.7.31)	452	101	351	101	101	0	351	32	18	301
'25.10.31	627	175	452	175	175	0	452	154	107	191

※ 자료: 행정안전부

* 종전 피해자 : 참사 이후 위원회 구성 전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았던 자. 종전 피해자는 피해자 인정 신청할 경우 별도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없이 피해자 인정 결정(피해자 인정 결정서 송부)하기로 결정(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차 회의 의결, '25. 3.21.)

** 검토중 : 심사를 하였으나 증빙자료 미흡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19건)와 신청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완 요구 중인 경우(41건) 및 신청서 검토 중인 경우(131건)

□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5년 10월 31일 기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심사 현황을 보면,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이 보류되어 재심사된 건수를 제외한 심사건수

는 261건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452건의 피해자 인정 신청 건수의 약 57.7%에 해당함.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고
소속	▸ **국무총리 소속**	구성일 '25.2.26
구성	▸ **9명** (진상규명·인권 등 분야별 전문가 6,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수행 업무	▸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

※ 자료: 행정안전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신규 신청자 심사 현황]

(단위: 건)

구분	개최일시	심사건수	인정건수	피해자 인용률
제3차	2025-04-22	2	1	50%
제4차	2025-05-19	1	1	100%
제5차	2025-05-27	3	3	100%
제6차	2025-06-24	10	7	70%
제7차	2025-07-22	34	20	59%
'25. 7.31. 기준		**50**	**32**	**64%**
제8차	2025-08-26	27	0	0%
제9차	2025-09-23	51	45	88%
제10차	2025-10-24	133	77	58%
'25. 10.31. 기준		**261**	**154**	**59%**

※ 자료: 행정안전부
*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별도의 피해자 심사 건수 없음.
** 심사건수는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이 보류되어 재심사된 건수를 제외한 수치임.

□ 생활지원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2024년 5월 21일 시행되었는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동 법률의 시행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168], 2026년 5월 20일에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이 도래함.

□ 피해자 인정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신청기한 도래 이전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을 신속히 수행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169].

---

16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69) 참고로, 피해자 인정 신청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16일 이후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2025년 10월 27일 기준)

연번	의안번호	제안자	내 용
1	2212185	이해식의원 등 13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현행법보다 연장
2	2212326	용혜인의원 등 14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로 현행법보다 연장
3	2212928	권칠승의원 등 14인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현행법보다 연장

【재난복구지원국】

32. 재난구호지원(2734-301)

○ 내역사업 ‘재해·재난긴급구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긴급구호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호법」의 근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부담한 구호비용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구호지원 수요, 과거 지원사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으나, 2022년부터 동 사업의 국고보조 신청 및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98건 중 교부 미결정이 이루어진 건은 4건에 불과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절차 상에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구호지원’은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 등에 대해 신속한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9억원 대비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구호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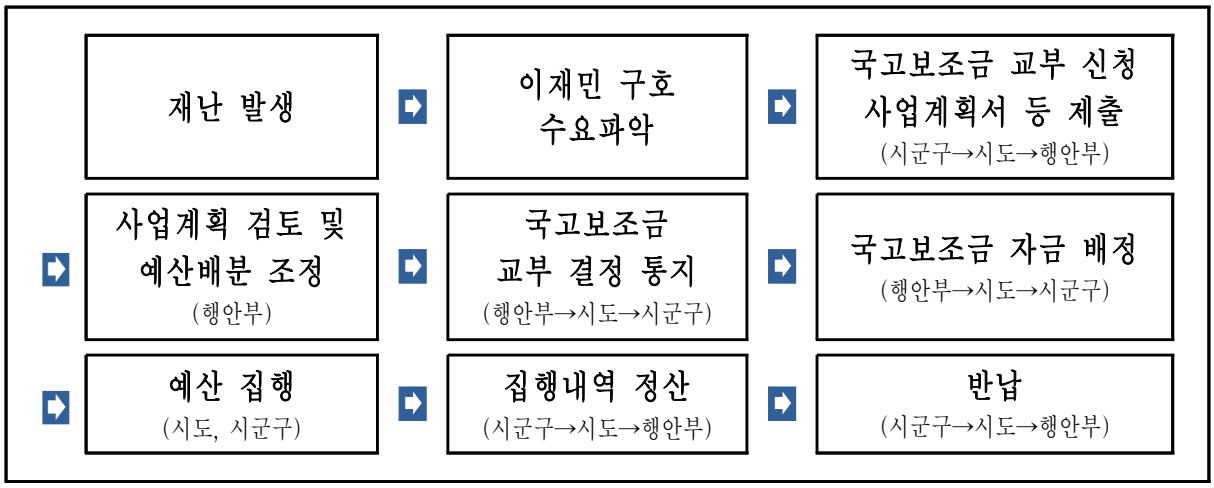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구호지원	1,000	900	1,221	321	35.7
재해·재난긴급구호	1,000	900	1,000	100	11.1
재난피해자통합지원	-	-	221	순증	순증

나. 법적 근거에 부합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 변경 필요

□ 내역사업 ‘재해·재난긴급구호’는 이재민의 조기 생활 안정과 대국민 구호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호 역량을 국가에서 보조(보조율 100%)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9억원 대비 1억원 증액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재난이 발생했을 시 이재민 구호 수요를 파악하여, 시·군·구에서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재해·재난긴급구호 사업 집행절차]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법적 근거인 「재해구호법」 제13조제2항에서 구호기관[170]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에

대해 국고를 보조할 수 있다는 취지와 다르게 구호기관이 아직 부담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신청을 받아 국가가 선(先)보조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재해구호법 제13조 내용]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③ (생략)

□ 위 「재해구호법」 규정은 동 법에 따른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주체를 이재민 등 구호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호에 필요한 비용도 구호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호기관에서 이미 지출하여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사후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취지라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부담한 구호비용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이를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170)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의 실질화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재해·재난긴급구호’는 앞서 살펴본 절차와 같이 구호 수요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검토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①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 수 등 구호지원 수요, ② 과거 지원사례, ③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함.

□ 그러나 2022~2024년 동 사업을 통한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신청건수 98건에 대해 교부 미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한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이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22~2024년 재해·재난긴급구호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신청건수	교부건수	미교부건수	집행액(교부액)
2022	23	22	1	1,000
2023	35	32	3	1,000
2024	40	40	0	1,000

※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신청일(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예산을 교부하는 것을 성과목표의 산출 근거로 하고 있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일 이내에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 신청에 대한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더 짧을 것으로 보임.

□ 이재민 등에 대한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동 사업은 구체적인 예산 지출 수요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측면이 있어 현행 사업 추진 절차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구호의 신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대한 별도의 심의 절차를 구성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상대비정책국】

33.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내역사업 ‘민방위시설장비확충’ 중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도 2025년 대비 동일한 사업 개소 수와 예산액을 계획·편성하였는데, 2026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에 있어 각 사업대상지가 연내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는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지원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보조율 : 70%)의 구조에 따라 피해 주민의 피해지원금 지원 관련 세부 절차가 다단계로 설정되어 있고, 각 시·군의 피해상황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조사 비용 부담 능력 등의 차이로 지역별로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지원 절차의 단계별 소요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대피시설 및 필요 장비 확충,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67억 3,600만원 대비 38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6,728	6,736	10,592	3,856	57.2
민방위교육훈련	2,183	2,050	2,048	△2	△0.1
민방위시설장비확충	2,614	3,834	3,856	22	0.6
민방위경보시설운영	1,931	852	852	-	-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	-	3,836	순증	순증

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확보 필요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국지도발 등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지하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주민대피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과 동일하게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년 간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의 대부분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음.

[2021～2025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구축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대상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실집행률
2021	5개소 (인천3, 경기2)	1,600	1,600	1,128	472	70.5%
2022	3개소 (인천3)	960	960	35	925	3.6%
2023	3개소 (인천1, 경기1, 강원1)	960	960	505	455	52.6%
2024	2개소 (인천1, 경기1)	640	640	19	621	3.1%
2025. 9.	4개소 (인천2, 경기1, 강원1)	1,860	1,860	94	1,766	5.0%

※ 자료: 행정안전부

* 2021～2024년 실집행액은 각 회계연도 결산 기준

□ 2024년의 경우 2개소(인천 1개소, 경기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각각 사유지 매입을 통한 확보의 지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3.1%에 불과하였으며, 2025년에도 9월까지 실집행률이 5.0%에 그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 사업이 단년도 건축사업임에도 주민 동의를 얻어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BF인증[171] 절차를 거쳐 실제 건축공사 시공 및 준공검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 2026년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9월 실시한 대피시설 선정절차를 살펴보면, 총 7개소의 마을이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희망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대피시설 설치 장소 선정의 타당성(40점), 지역 주민 사업 추진 의견 수렴(20점), 신청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40점)를 사업대상 적정성 심사 기준으로 고려하여 4개소를 사업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음.

171) BF(Barrier Free) 인증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2026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현황]

구 분	인천 강화 당산리	인천 강화 초지2리	인천 강화 상도2리	경기 가평 신하리	경기 김포 마곡1리	경기 김포 군하3리	강원 화천 파포리
대피 가능인원	90명	90명	90명	90명	66명	66명	90명
면적	160㎡	160㎡	160㎡	160㎡	118㎡	119㎡	160㎡
주민동의 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X	X	완료
마을 설명회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부지확보 여부	확보 (군유지)	X	확보 (소유자 동의)	확보 (군유지)	확보 (시유지)	확보 (시유지)	확보 (군유지)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지역 주민 사업 추진 의견 수렴(20점) 항목 중 ‘대피시설 설치 대상지 인근 주민의 동의’ 항목의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하였으나, 2025년과 동일한 규모의 사업개소 수를 계획하면서 예산액도 같은 액수로 편성하였으므로 사업 지연 및 실집행 부진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에 있어 주민 동의 여부, 실시 설계부터 준공검사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사업대상지가 연내에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사업의 지원 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한 보조사업 관리 필요

□ 내역사업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는 민방위사태(평시)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보조율 : 70%)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38억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개정 : 2024.12. 3.)[172]에 따라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약 8,700명(인천 강화군 약 2,900명, 경기 파주시·김포시 약 5,800명)의 주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과 지침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집행 계획을 구체화하였음.

---

172)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에 의한 위해 행위
2.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이하 “소음방송”이라 한다)에 의한 위해 행위**
3. 총격 또는 포격에 의한 위해 행위
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에 의한 위해 행위
5. 그 밖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유사한 위해 행위로서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피해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해 행위

□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4호)」(이하 “운영지침” 이라 한다)은 각 시·군에서 수행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소음영향도에 따라 주민에게 일당 2,000~4,000원의 피해지원금 액수를 책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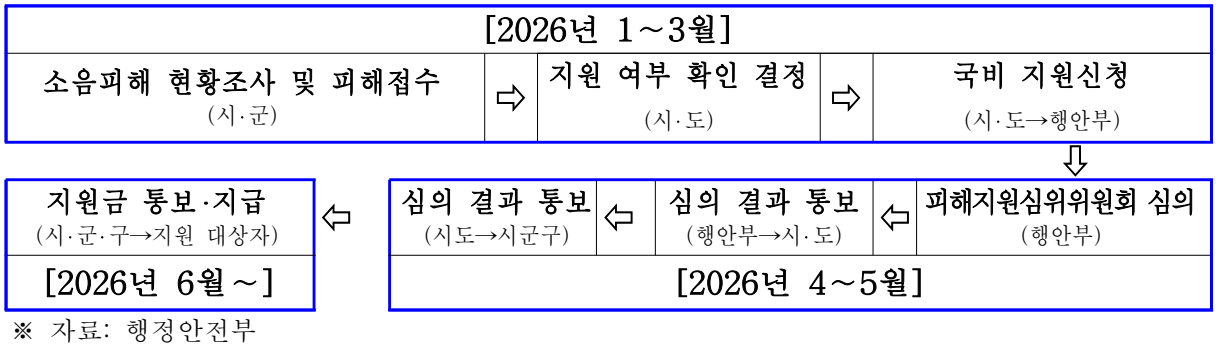
[소음영향도 평가 결과에 따른 피해지원금 단가]

구역	구역별 소음영향도	피해지원금 단가
제3종	60dB(A) 이상 70dB(A) 미만	2,000원/일
제2종	70dB(A) 이상 80dB(A) 미만	3,000원/일
제1종	80dB(A) 이상	4,000원/일

※자료:「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제13조
* 일별(00:00~24:00) 5분 등가소음도 중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영향도 산정

□ 행정안전부는 각 시·군별로 진행 중인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면 2026년 3월까지 주민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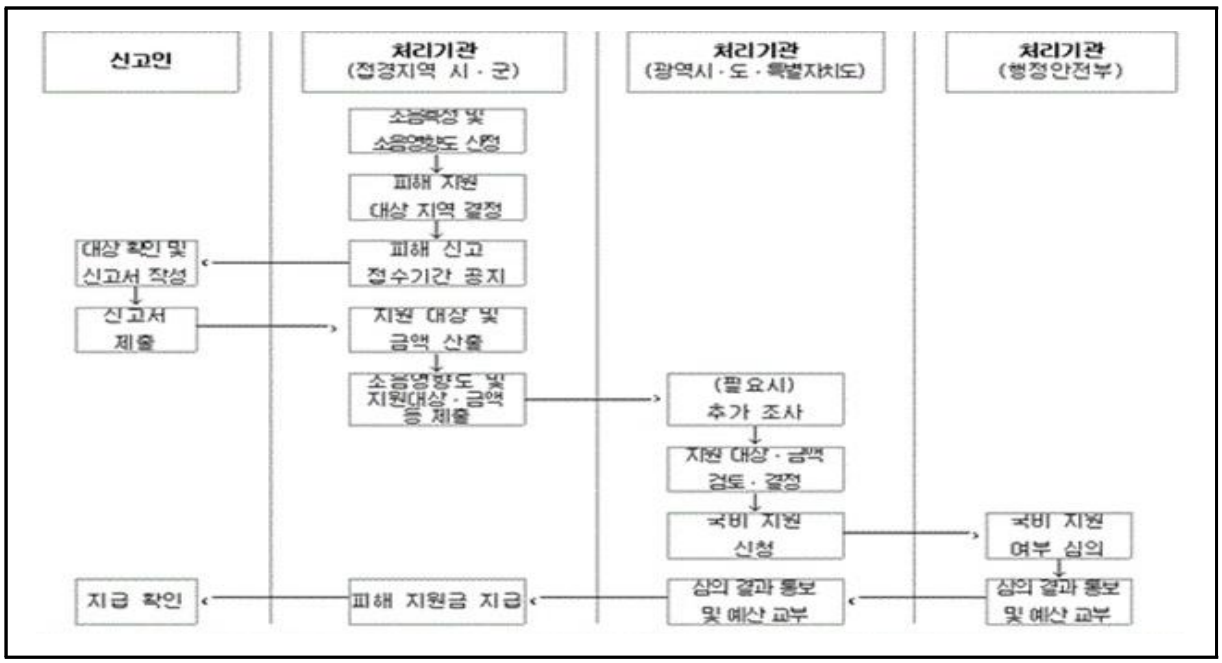
[2026년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사업 추진 계획]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운영지침에 따른 동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이 신고인으로서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하고[173], 신고를 접수한 시·군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등 피해지원금 신청부터 지급에 이르는 절차가 다단계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신고인에게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세부 지원 절차]



※ 자료:「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제14조제4항

173) **「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제14조(소음 피해 지원절차)** ③ 제1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시행규칙제65조의4에서 정한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2.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이러한 단계적인 세부 지원 절차의 설계는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인데, 보조사업자인 시·군별로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상황 조사에 걸리는 기간이나 조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능력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별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소음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지원 절차의 단계별 소요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보조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34.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내역사업인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2025년도 예산의 30%에 달하는 금액(2억 4,9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안전부는 이월예산 및 2026년도 편성예산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을 위한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유족 숙원사업 추진, 제주4·3전국민 바로알리기,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17억 9,200만원 대비 9억 7,900만원(8.3%) 감액된 10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16,009	11,792	10,813	△979	△8.3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1,839	1,530	1,135	△395	△25.8
4·3전국민 바로알리기 사업	70	70	70	-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0,000	5,980	5,608	△372	△6.2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4,100	4,212	3,800	△412	△9.8
제주4·3아카이브 구축	-	-	200	200	순증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편성예산의 차질없는 집행 노력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주요 암매장지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하여 희생자의 영면과 유족들의 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예산 7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예산 8억 3,000만원 등 총 1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5년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8억 3,000만원이 지자체 등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7,600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유적지 보존 관련 유족들의 의견수렴 기간 소요, 토지보상 협의 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 때문으로 보임.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8월말 기준)	9~12월 예상 집행액	예상 이월액	예상 불용액	실집행부진사유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830	76	473	249	32	
중문지구	360	14	162	184	-	전시물 리뉴얼에 따른 유적지 보존위원회 현장 자문 및 보완, 관계자(중문유족회 등) 의견수렴 기간소요
수악주둔소	250	8	177	65	-	토지보상 지연
종남마을	50	-	50	-	-	토지보상 지연으로 협의 중, 10~12월 토지보상비 집행 예정
진아영할머니삶터	170	54	84		32	10월 준공금 집행 예정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중문지구 선급금 1억 6,200만원, 수악주둔소 토지보상금 1억 200만원 등 연말까지 4억 7,300만원이 추가로 집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해당 금액이 차질없이 집행되더라도 2025년도 편성예산의 30%인 2억 4,9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4억 3,500만원의 57.2%에 달하는 것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통해 2025년도 이월예산과 2026년도 편성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2431-304)

○ 타당성재조사 수행으로 2023년~2025년 중단되었던 사업이 2026년도 예산반영으로 재시작될 예정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화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83억 6,500만원이 순증 편성되었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	-	18,365	18,365	순증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위령시설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노력 필요

□ 동 사업은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의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 정책권고에 따라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연구용역(2012.8.) 실시 및 위령시설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2016.4.)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 대전 동구 낭월동 일원 골령골이 대상부지로 선정되었고, 설계용역 착수 등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억 4,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2024년(타당성 재조사 이전) → 2018~2027년(타당성 재조사 이후) ○ 사업위치 : 대전시 동구 낭월동 일원 골령골(민간인 집단 희생지) ○ 사업내용 : 추모관, 전시관 등 역사공원 조성(부지 102,002㎡, 건축 3,913㎡) ○ 총사업비 : 479억원(타당성 재조사 이전) → 589억원(타당성 재조사 이후) ※ 전액 국비 / 공사비 318억원, 보상비 236억원, 시설부대경비 35억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그런데, 물가·지가 상승 및 시설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기존 479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에 2023년 3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되어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통과 의결되었음.

[타당성 재조사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B/C 2.60** (※ B/C≥1이상 경제성 ↑)

- 편익(B) : 사업 시행에 따른 총 편익은 1,595억 원
- 비용(C) :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총 비용은 613억 원

○ **(종합평가 결과) AHP 0.687** (※ AHP≥0.55이상 타당성 ↑)

구 분	종합평가	경 제 성	정 책 성	지역균형발전
획득점수 (비중)	0.687	0.277 (32.8%)	0.238 (35.6%)	0.172 (31.5%)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함께 2026년도 예산 183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 상반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나,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479억원에서 58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사업완료 시기도 2026년 이후로 연기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희생자 유해 합사 방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유해를 일괄 화장 후 합사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유족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이것이 추가적인 사업 지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174]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원확인이 완료된 유해부터 개별 화장하여 안장하는 방식을

174) "유족들 입장에서는 위령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전 회장은 "정부는 위령시설을 조성한 뒤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합사하려 하는데 이는 학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전자(DNA)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해를 온전히 보존해 추후에라도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대전 동구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 시설' 10년째 첫 삽도 못 떴다", 2025.6.29.

마련하였고, 유족들도 이에 동의하여 유해 합사 방식과 관련한 사업 지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175]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완료 시점까지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타당성 재조사 진행 등으로 인해 지연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75)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유족대표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총 3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발굴된 유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음.

3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2432-300)

○ 솔로몬제도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을 위한 예산이 신규편성되었는바,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외 추모조형물 건립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및 희생자 유해봉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76억 9,400만원 대비 9억 2,500만원(12.0%) 증액된 8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7,464	7,694	8,619	925	12.0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솔로몬제도 추모조형물 건립 관련 사업의 내실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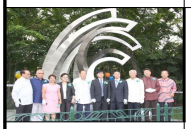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지원, 강제동원 피해 문화·학술·조사·연구, 희생자 추도 등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대비 3억 8,300만원 증액된 4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증액분은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인건비 4,300만원과 국외 추모조형물 신규건립을 위한 3억 4,000만원으로 구성됨.

□ 국외 추모조형물 신규건립사업은 솔로몬제도에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인바, 솔로몬제도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군사기지를 건설했던 주요 전장 중 하나였으며, 해당 지역의 비행장 건설 등을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어 노역을 당하고 희생된 장소로,

□ 행정안전부는 이곳에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함으로써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은 인도네시아 평화 기원의 탑, 파푸아뉴기니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모탑 등 총 6개 소에 설치되어 있음.

[국외 추모조형물 건립 사례]

지역	희생자수(명)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2,280	[인도네시아 동부 평화 기원의 탑] · 위 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Taman Iman Bonjol 공원 · 건 립 일: 2010. 5. · 건립비용: 240백(국고보조 200백, 한인회자부담 40백)
 필리핀	344	[필리핀 추도와 평화 기원의 탑] · 위 치: 필리핀 마닐라시 리잘공원 내 · 건 립 일: 2010. 9. · 건립비용: 180백(국고보조 160백, 한인회자부담 20백)
 파푸아뉴기니	1,076	[파푸아뉴기니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모탑] · 위 치: 뉴브리튼 주 코코포 독일장병 묘지 인근 · 건 립 일: 2014. 6. · 건립비용: 350백(국고보조)
 미얀마	453	[미얀마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조형물] · 위 치: 미얀마 양곤시 코리아센터 부지 내 · 건 립 일: 2017. 9. · 건립비용: 369백(제작 180백, 운송·설치 등 189백)
 홋카이도	2,608	[홋카이도 강제연행·강제노동 희생자 추도비] · 위 치: 홋카이도 슈마리나이(조릿대 묘표 전시관) · 건 립 일: 2017. 10. · 건립비용: 200백(정부지원 15백, 일본 시민단체 185백)
 호주	1,500*	[한호 평화증진 및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탑] · 위 치: 호주 NSW주 블랙타운시 호주왕립공군기념공원 · 건 립 일: 2018. 9. · 건립비용: 254백(제작 82백, 운송·설치 등 172백)

* 태평양전쟁 당시 카우라 포로수용소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25명을 포함하여 호주 인근 해역에서 1.500여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솔로몬제도 추모조형물 건립에는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후 유지·관리비용으로 매년 600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임.

[국외 추모조형물 건립 관련 연간 유지비용 지출현황]

지역	관리운영 주체	연간 유지비용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한인회	600만원 (50만원x12개월)
미얀마	미얀마 한인회	600만원 (50만원x12개월)
일본 홋카이도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600만원 (50만원x12개월)
솔로몬제도(예정)	솔로몬제도 한인회(예정)	600만원(예정) (50만원x12개월)

※ 재단-현지 한인회 등과 추모조형물 유지·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매년 유지·관리 비용 지원
※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행정안전부는 태평양전쟁 지역별 전몰자 기준으로 볼 때 솔로몬제도는 아직 추모조형물이 건립되지 않은 곳 중 전몰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현재 솔로몬제도 지역주민의 협조를 통해 추도비 건립부지 무상사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업을 즉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태평양전쟁 지역별 전몰자 및 추모조형물 건립 현황]

지 역	전몰자(한국인 포함, 명)*	추모조형물 현황(개)**
필리핀	518,000	1 (정부)
중부태평양(마리아나, 팔라우, 마셜 등)	247,000	6 (정부1·민간5)
미얀마	137,000	1 (정부)
파푸아뉴기니	127,600	1 (정부)
솔로몬제도, 비스마르크	**118,700**	-
서이리안	53,000	-
인도네시아	31,400	1 (정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1,000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12,400	-
북보르네오	12,000	-

* 출처: 2025년도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지역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현황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다만, 향후 추모조형물 미건립 지역의 건립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될 경우 국가 재정부담이 과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모조형물 건립의 우선순위 등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솔로몬제도의 추모조형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외 추모조형물 건립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2434-300)

○ 2026년도 예산안에 민주주의 연구 및 사료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 해당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필요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80억 3,300만원 대비 8억 300만원(△10.0%) 감액된 7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3,324	8,033	7,230	△803	△10.0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전액 삭감된 민주주의 연구, 사료관리 예산의 증액 검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 60억원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 민주주의 기반구축 등의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 12억 3,000만원으로 구성됨.

□ 그런데, 주요사업비 중 민주주의 연구 및 사료관리를 위한 예산이 2025년도에 각각 5억 1,700만원과 6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2025~2026년도 민주주의 연구 및 사료관리 예산편성 현황]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민주주의 연구	○ **민주주의 연구: 517** - 민주화운동사 연구 30 - 연구총서발간 150 -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및 DB구축 237 - **(2회추경안) 민주주의 콘텐츠 개발 100**	○ **민주주의 연구: 0**
사료관리	○ **사료관리: 665** - 사료수집사업 230 + **(2회추경안) 100** - 정리서비스사업 335백	○ **사료관리: 0**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해당 예산삭감은 동 세부사업에 대한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81.2점) 판정으로 예산 총액의 삭감이 불가피했고, 이에

세부사업 내 주요사업비 규모가 2025년 추경 기준 25억 6,400만원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12억 3,000만원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임.[176]

□ 그러나, 민주주의 연구 사업은 사업회 소장 민주화운동 사료 기반 연구 체계 구축, 민주화운동 사전 편찬을 통한 사회적 공유 시스템 구축 및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관련 연구성과 체계화를 위한 것이며, 사료관리 사업은 이용자를 위한 민주화운동 주요 사료 수집 및 확보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경우 민주화운동관련 대국민 공공정보 서비스 약화가 예상되어 최소한 전년 본예산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도 민주주의 연구 및 사료관리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민주주의 연구를 위한 4억 1,700만원과 사료관리를 위한 예산 5억 6,500만원 등 총 9억 8,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76) 기관운영비는 2025년도의 60억 6,900만원과 큰 차이 없는 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운영비의 특성상 삭감이 어렵고, 이에 주요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임.

[민주주의 연구 및 사료관리 사업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민주주의 연구	학술 연구	180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122
	연구개발 및 시스템 구축	115
	소계	**417**
사료관리	사료 수집 및 관리	230
	사료정리서비스	335
	소계	**565**
계		**982**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38.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관련 설계용역 지연 및 편성예산 전액 불용 등 사업관리 상의 제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은 2·28민주운동 및 부산민주항쟁 등의 기념사업회 지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관련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민주화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308억 6,400만원 대비 61억 600만원(△19.8%) 감액된 247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1,413	30,864	24,758	△6,106	△19.8

※ 자료: 행정안전부

나. 민주주의기념관 건립 사업의 2026년도 편성예산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내역사업 중 민주주의기념관 건립 사업은 가칭 YS민주역사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예산에는 17억 2,800만원, 2026년 예산안에는 41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조달청 적정성 검토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2025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도에 공사 착수금으로 편성된 17억 2,800만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될 전망임.

[민주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목	25년 예산	집행액(실집행액)	실집행부진 사유(상세)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1,728	-	■ 2025년도 예산은 공사 착수금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공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단계임. ■ 당초 계획과 달리 조달청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지연되어 설계용역 준공이 연말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도 내에는 공사 착수금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향후 계획> - 2025.9: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 2025.9.~12.: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설계용역 준공 - 2026.12~2.: 시공사 선정, 공사 착수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와 같은 설계용역 지연 및 2025년도 편성예산 불용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2024~2026년도 민주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예산	2026년 예산안
민주역사기념관 건립	o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50 - 설계비 465 - 조사측량비 85	o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728 - 공사비 1,428 - 감리비 300	o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121 - 공사비 3,334 - 감리비 209 - 예비비 578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설계용역 완료 시점이 2025년 12월로 미뤄짐에 따라 2025년도 공사착수금의 집행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2026년 예산은 공사 착수 시점을 2026년 2월로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이후 착공 일정에는 변동이 없어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2021~2025년도 민주주의기념관 건립사업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부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10.~'23.2.) - 대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9.~'22.11.) - 경남 창원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1.~'21.12.)
2022	- 경남 창원시 건축공사 착공(4월) - 부산·대전 건축공사 착공(12월)
2023	- 부산·대전·창원 건축 및 전시 공사 추진
2024	-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준공('24.11.) -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4.6.~'25.5.)
2025	-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예정('25.5.~'25.12.) -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25.10.~'27.12.)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다만, 2026년도 편성예산의 집행가능성과는 별개로 설계용역 지연 및 2025년 편성예산 전액 불용 등 사업관리 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2436-300)

○ 동 세부사업에 대한 국비편성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 및 상담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9억 5,400만원 대비 12억 3,400만원(63.2%) 증액된 3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6,355	1,954	3,188	1,234	63.2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치유센터 행정 및 상담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 검토 필요

□ 2025년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이하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비 출연금 예산은 19억 5,400만원으로,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소재지인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소요 출연금의 50%를 각각 지방비로 매칭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가가 설립주체가 되는 국립 시설이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7조는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에 대하여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국비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177]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178]

---

17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228호]」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한편, 2025년 8월 14일 일부개정으로 인해 동조 제2호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변경되었음(2026.1.1.시행예정).

178)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 이에,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8조[179]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출연금을 국비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이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행정안전위원회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예산을 사업비와 기관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되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 그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기관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국비 출연 비율이 81.4%로 상승하였음.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7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228호]」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025~2026년도 트라우마 치유센터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액 (50:50)		2026년 예산안 (기관운영비 국비 100%, 사업비 50:50)		비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계		1,954	1,137	3,188	726	
광주센터	합 계	1,101	284	1,741	475	
	기관운영비	626	284*	1,266 (국비 100%)	-	인건비 등
	사업비	475	-	475 (국비 50%)	475	프로그램
제주센터	합 계	853	853	1,447	251	
	기관운영비	602	602	1,196 (국비 100%)	-	인건비 등
	사업비	251	251	251 (국비 50%)	251	프로그램

* 25년도 광주시에서 지방비 매칭 필요금액 11억 100만원 중 2억 8,400만원만 매칭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다만, 국비편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먼저, 치유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 충원이 필요함.

□ 현재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행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이들의 파견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파견 지원이 어

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광주광역시 4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 등 파견된 행정공무원의 파견 종료일이 2026년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기간연장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행정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것임.

□ 또한 관외 거주 관리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 등을 위해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함.

□ 광주센터의 경우 광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통합관리 및 치유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치유팀이 구성되어 현재 4명의 상담인력이 활동중이나, 관리대상자의 수가 772명에 달하여 직원 1인당 193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음.[180]

[광주센터 관리대상자 지역별 등록현황]

(2025년 8월 기준, 단위: 명)

총 계	광주	전라	경기	서울	인천	대구
1,340(100%)	568(42.4%)	573(42.8%)	71(5.3%)	27(2.0%)	1(1.3%)	11(0.8%)
부산	**강원**	**충청**	**대전**	**경상**	**울산**	**미상 (공개거부)**
11(0.8%)	9(0.7%)	8(0.6%)	7(0.5%)	7(0.5%)	4(0.3%)	27(2.0%)

※ 전체 총계 1,340명에서 광주거주자 568명을 제외한 772명이 사회적치유팀의 관리대상자가 됨
※ 자료: 행정안전부

□ 제주센터의 경우에도 방문치유팀 5명이 서귀포시의 대상자 621명을 담당하고 있어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124명에 달함.[181]

180)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상담인력 1인당 적정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22명임.

[제주센터 관리대상자 지역별 등록현황]

(2025년 8월 기준, 단위: 명)

총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비 고
1,691(100%)	1,065(63%)	621(36.7%)	5(0.3%)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행정안전부는 광주센터 인력 10명(행정인력 4명, 전문상담인력 6명) 및 제주센터 인력 7명(행정인력 3명, 전문상담인력 4명) 등 총 17명의 증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건비 예산 12억 500만원(광주센터 7억 5,100만원, 제주센터 4억 5,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사업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인건비	광주센터	월급여 및 수당	626
		4대보험료, 적립퇴직금	125
	소계		751
	제주센터	월급여 및 수당	380
		4대보험료, 적립퇴직금	74
	소계		454
계			1,205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181) 광주광역시 및 제주시 등록인원은 치유재활팀에서 별도로 담당함.

40.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2437-300)

○ 여수순천위원회의 조사기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조사인력만으로 희생자 결정 및 진상규명조사사건의 처리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조사인력 증원을 위한 관련 예산 증액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48억 400만원 대비 10억 3,400만원(△21.5%) 감액된 3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4,901	4,804	3,770	△1,034	△21.5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위원회 접수 사건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조사인력충원 예산 증액 검토 필요

□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여수·순천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22년 1월 출범하였음.

□ 그런데, 당초 2024년 10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던 위원회의 처리율이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11.9%(신고건수 7,465건 중 886건 처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2024년 6월말 기준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신고>		<실무위원회>				<여순사건위원회>				
합계	→	희생자 신고		진상규명(조사중)	→	합계	희생자 결정			취하 등
		조사완료	조사중				소계	인용	기각	
7,465		2,741	4,533	191		886	708	696	12	178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희생자 결정 관련 처리율은 44.0%를 기록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 조사완료 건수(6,256건) 대

비 위원회 처리건수(3,642건)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인데, 이는 실무위원회의 승인 건에 대해 사실확인을 진행할 위원회 전문조사인력 부족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임.

[2025년 9월말 기준 희생자 결정 처리 현황]

(단위: 건)

<신고> <실무위원회> <여순사건위원회>

합계	→	희생자 신고		→	합계	희생자 결정		
		조사완료	조사중			인용	기각	취하 등
8,269		6,256	2,013		3,642	2,596	104	942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현재 위원회 전문조사인력 5인이 해당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1인당 월 30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음.[182]

□ 또한 위원회의 조사기한은 2026년 10월 5일까지이며,[183]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위해 최대 1년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므로, 2027년 10월 4일까지 접수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이 마무리되어야 하나, 위원회의 조사인력 5명이 남은 기간 동안 월 30건씩

182) 제주4·3위원회 조사관은 1인당 월 7건을 처리하고 있음.

18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을 처리하더라도 조사기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처리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임.[184]

[향후 희생자 결정사건 처리 예상]

미처리건수 (A)	조사인력 (B)	월별 처리건수 (C)	잔여기간 (D)	예상 처리건수 (E=B×C×D)	예상 잔여건수 (A-E)
4,627건	5인	30건	24개월 (2025.10.~2027.9.)	3,600건	1,027건

※ 자료: 여순사건위원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또한 접수사건 중 사실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처리속도는 현재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잔여 사건의 처리난이도 상승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사인력 1인이 1달에 2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가정할 때, 3인의 신규 조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84) 다만, 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위해 최대 1년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므로, 위원회의 접수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은 2027년 10월 4일까지 가능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인력 증원 시 희생자 결정사건 처리 예상]

(단위: 인, 건)

요청인원	조사인원 (A)	월평균 처리 (B=A×20건)	법정기한 (C)	기한내 처리 (D=B×C)	미결 (E)	기한내 처리불가 (E-D)
증원 3인	5 (현원)	100	2027.10.5. (24개월)	2,400	4,627	2,227
	8 (증원시)	160		3,840		787*

* 일괄심사 처리건수 상향 노력 등 자체개선방안을 통해 기한 내 처리 완료 추진

※ 자료: 여순사건위원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또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과 별도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도 2025년 9월말 기준 총 2,476건이 미처리된 상황으로, 현재 이를 전담하는 조사인력 3인이 배정되어 있으나, 2026년 10월 4일로 지정된 조사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185]

□ 여순사건위원회는 현재 인력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모든 사건 처리를 위해 총 30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담당 조사인력을 4인 증원할 경우 조사기한인 2026년 10월까지 진상규명 조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185) 희생자 결정의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시점까지 사건처리가 가능하나, 진상규명사건의 경우 조사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조사인력 증원 시 진상규명 조사사건 처리 예상]

(단위: 인)

요청인원	조사인원	진상규명조사		
		법정기한	소요기간	완료예상
증원 4인	3 (현원)	2026.10.5.	30개월	2028.4.
	7 (증원시)		12개월	2026.10.

※ 자료: 여순사건위원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결과적으로 조속한 사건처리 완료를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 조사인력 3인, 진상규명 조사인력 4인 등 총 7인의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사업 증액 요구 내역]

(단위: 천원)

세목별	내용	금액
기타직보수(110-02)	소계	66,758
	기본급	55,979
	가족수당	1,200
	초과근무수당	3,582
	정액급식비	1,680
	직급보조비	3,000
	연가보상비	1,316
복리후생비(210-12)	맞춤형복지제도	800
고용부담금(320-09)	기관부담금	1,200
소계		68,758
증원필요 인원 수		7
증액필요 예산		481,306

※ 자료: 여순사건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